KC대학교 요람

KC University

2022



Ⅰ. 총람

건학정신 007 비전 008 교가 009 대학연혁 011 학사일정 013

Ⅱ. 대학

인문사회계열 023 신학과 023 G2빅데이터경영학과 025 사회복지학과 029 상담심리학과 032 자연과학계열 035 간호학과 035 식품영양학과 039 예체능계열 042 음악콘텐츠학과 042 교양교육과정 045

Ⅲ. 학사

등록 053 신앙교육 054 휴학 055 복학 056 재입학 057 전부(과) 058 복수전공 059 부전공 060 졸업 및 졸업인증 061 졸업이수학점 063 조기졸업 064 편입생학점인정 065 재수강 066 유고결석 06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068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069

IV. 학생생활

학생지원, 장학, 상담업무 안내 073 장학금의 종류 안내 075 도서관 이용안내 079 전산실습실 안내 092 국제교류 안내 093 종합인력개발센터 안내 095 교수학습지원센터 안내 097 원격수업지원센터 안내 099 교육성과관리센터 안내 100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안내 101 학생상담센터 안내 102 인권상담실 안내 104 사회봉사센터 안내 105 KCU리더십센터 안내 108 남북통합지원센터 안내 109 창업지원센터 안내 110 생활관 안내 111

V. 기구표

VI. 대학본부

총장실 121 교목실 122 평가감사실 123 기획처 124 교무처 126 학생처 128 사무처 130 대학워교학과 134

VII. 부속기관 등

도서관 141 교양교육원 143 KCU교육혁신원 144 정보지원센터 145 KCU학술연구소 146 생활관 147 언론센터 148 남북통합지원센터 150 KCU리더십센터 151 장애학생지원센터 152 학생상담센터 153 창업지원센터 154 종합인력개발센터 **155**

Ⅷ. 부설기관 등

평생교육원 159 산학협력단 161 국제교육교류원 162

IX. 대학원

일반대학원 167 특수대학원 174 신학대학원 174 사회복지대학원 177 교육대학원 179 대학원 학사안내 181

X. 부록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정관 195 케이씨대학교학칙 236 케이씨대학교학칙시행세칙 275 케이씨대학교대학원학칙 294 케이씨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 306 교수인명사전 327 대학캠퍼스맵 330





총 람

건학정신 비전 교가 대학연혁

건학정신

교 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2:2)

교육이념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일치·자유·사랑

교육목적

기독교 진리를 세상에 구현하기 위하여 심오한 학술 이론을 연구개발하고, 건전한 신앙과 교양을 함양하고 진취적 능력을 증진하여 창조적 신앙 인 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교회와 사회 발전을 선도할 지도자 양성을 교 육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 ◎ 실천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
- ◎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인 양성
- ◎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인 양성

KCU Vision 2023 (2019~2023)

비 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	는 창의융합 혁신 대학	
목 표			육으로 CREST형 인재양성" 지역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거버넌스 학생만족이 중심이 되는 경영혁신 !	
1대 추진전략	C·E·O형 교육과정	학생중심 교육제도혁신	거버넌스형 산학협력	학생만족 경영혁신
	용합기반교육강화 (C형 교육)	학사제도 혁신	산학협력 대학체제구축	학생중심 조직문화구축
13대 역량기반교육강화 전략 과제 (F형 교육) 교육성과관리강화 (O형 교육)	역량기반교육강화	77(0)7(0) () 441 97	산학일착형 교육프로그램인프라구축	학생만족 캠퍼스구축
	(E형 교육)	교직원지원시스템 구축	CREST-preneruship 교육체계개발	의정한쪽 업피스구목
	학생보장시스템 구축	거버넌스형 지역일착 체계구축	학생지원 재정확보	
151,000				-
대표 성과지수	C·E·O형 교육혁신 지수	학생중심 교육제도혁신 지수	거버년스형 산학협력 지수	학생만족 경영혁신 지수

박 두 진 작사이 흥 렬 작곡















대학연혁

1958. 4.19	Lewis Haskell Chesshir(최수열)선교사가 교회지도자 양성
	을 목적으로 「한국기독교학원」을 설립, 초대 원장에 A. R.
	Holton 선교사 취임, 본 학원에 신학과, 기독교사회사업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로 개교. 학생 19명 선발
1966.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인가(초대 교장에 Daniel
	C. Hardin 선교사 박사/입학정원 신학과 20명)
1967. 6.	제2대 교장에 William A. Richardson 선교사 취임
1969. 8.	제3대 교장에 Daniel C. Hardin 선교사 취임
1973. 6.	성서교육관(지상2층 지하1층 1494. 56㎡) 준공
1973. 12.	「그리스도신학대학」인가(초대학장에 Daniel C. Hardin 박
	사/입학정원 신학과 30명)
1974. 1.	「학교법인 김포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
	의 교회학원」으로 변경
1974. 6.	제 2대 학장에 이지호 박사 취임 3대 연임
1985. 6.	제 4대 학장에 강기필씨 취임
1988. 5.	제 5대 학장에 기준서 박사 취임
1990. 10.	생활관(지하1층 지상 3층 1604.57㎡) 준공
1993. 2.	제 6대 학장에 김진건 박사 취임
1994. 9.	제 7대 학장에 이봉훈 박사 취임
1994. 9.	종교철학, 교회행정학, 사회복지학, 이동복지학, 선교언어학, 종
	교음악학과 도합 6개학과 입학정원 280명을 증과증원
1994. 10.	신학대학원(M. Div.)신설 인가(총 정원 40명)
1996. 10.	신학부, 기독교복지학부, 교회음악학부로 학제개편(입학 330명)
1996. 11.	신학대학원 입학정원제로 조정(입학정원 32명 총정원 96명)
1997. 2.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그리스도신학대학교"로 개칭
1997. 4.	본관(지하1층, 지상5층 5,872.12㎡) 준공
1998. 2.	초대 총장에 김진건 박사 취임
1998. 10.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음악학부, 경영정보학부 4개 학부 주
	간 190명, 야간 140명으로 학제 개편
2002. 2.	제2대 총장에 기준서 박사 취임
2002. 10.	일반대학원 신설인가. 박사과정(신학 5명), 석사과정(신학,

- 선학, 상담학 15명).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인가(입학정원 32명)
- 2002. 11. 교육대학원 신설인가(상담심리, 컴퓨터교육 입학정원 20명)
- 2003. 12.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신설인가(비학위과정 정 원 60명)
- 2004.11. "그리스도신학대학교"에서 "그리스도대학교"로 개칭
- 2006. 8. 제3대 총장에 고성주 박사 취임
- 2009. 4. 신학부, 경영학부, 사회복지학부, 음악학부, 외국어인문학부 5 개 학부 주간 270명 야간 60명으로 학제 개편
- 2010. 8. 제4대 총장에 임성택 박사 취임
- 2011. 3.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경영학부, 외국어학부, 음악학부, 교양실용학부 등 7개 학부 주간 330명으로 학제 개편
- 2012. 12.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경영학부, 외국어학부, 음악학부, 교양실용학부 7개 학부 입학정원 주간 270명. 야간 60명으로 학제 개편
- 2013. 12. 2013년 대학기관 평가인증결과 평가인증 획득
- 2014. 2. 제14대 이사장에 김진건 박사 취임
- 2014. 8. 제5대 총장에 박신배 박사 취임
- 2015. 5. 보건계열(간호학) 입학정원 40명 신설 배정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경영학부, 외 국어학부, 음악학부, 간호학부, 식품과학부, 교양실용학부 등 9개 학부, 입학정원 주간 310명으로 학제개편(2016학년도 입학생 적용)
- 2015. 9.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케이씨대학교"로 개칭
- 2016. 2. 자율전공학부 신설 신학과, 자율전공학부(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 학과, 상담심리학과, G2국제어학과), 음악콘텐츠학과, 간호학 과, 식품과학과 등 1개 학부, 9개 학과에 입학정원 주간 310 명으로 학제개편(2017학년도 입학생 적용)
- 2017. 1. 제15대 박재서 이사장 취임
- 2017. 2. 식품과학과를 식품영양학과로 변경
- 2018. 2. 신학과,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음악콘텐츠학과 등 7개 학과에 입학 정원 주간 277명으로 학제개편(2019학년도 입학생 적용)
- 2018. 10. 제6대 총장에 이길형 박사 취임
- 2020. 11. 제16대 고성주 이사장 취임
- 2021. 9. 제7대 총장에 김용재 박사 취임
- 2022. 2. 가호학과 입학정원 4명 증원(오반대) 타경영학과 시회복지학과 각 2명 김원)

2022학년도 학사일정

케이씨대학교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日月火水木金土			/	비에게네릭표
日 月 火 水 木 金 土 5일(수) 2021학년도 2학기 생작보고서 제출 마감 20일(목) 2021학년도 2학기 째학생 성적표 출력 30일(일)~2월 2일(수) 4일 2022학년도 1학기 중암생 졸업심사 20일(목) 2022학년도 1학기 중암사장기간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납 신청기간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12일(급)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2학년도 1학기 상대배인 2022학년도 1학기 가장대배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기간(용주차) 19일(화)개교기년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정	학 사 내 용	비고
3 MARCH 日月火水 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25 26 27 28 29	木金士 5일(수) 1 6일(목) 6 7 8 20일(목) 13 14 15 20일(목) 20 21 22 25일(화)~26일(수) 27 28 29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표 출력 2021학년도 전기 졸업생 졸업심사 2022학년도 1학기 장바구니 기간	30일(일)~2월
3 MARCH 日月火水 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RY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납 신청기간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 교직원 신앙수련회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2학년도 1학기 2차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신입생 동기유발학기 2022학년도 1학기 가강예배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신청기간	ł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8일(월)-23일(토)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기간(8주차) 19일(화)개교기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木金士 3 4 5 10 11 12 23일(수) 17 18 19 24 25 26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7 8 9 18일(철)-23일(도) 14 15 16 21 22 23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기간(8주차)	19일(화)개교기념일
5 MAY 日月火水木金土 9일(월)-11일(수) 신학과 신앙수련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일~ 6월10일(금) 2022학년도 연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22 23 24 25 26 27 28 25일(수) 2021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 논문 제출 마감	日月火水木金土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5 6 7 12 13 14 16일(월)-17일(화) 19 20 21 23일~ 6월10일(금)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5일(목) 어린이날
6 JUNE 日月火水木金土 7일(화)-18일(토)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및 결손과목보충기간 1 2 3 4 20일(월)-7월8일(금)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기간 1일(수) 지방선거 5 6 7 8 9 10 11 22일(수) 2022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미감 6일(월) 현충일 19 20 21 22 23 24 25 27일(월)-29일(수) 2022학년도 1학기 성적열람/이익신청/성적정정기간 26 27 28 29 30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 3 4 20일(월)-7월8일(금) 9 10 11 22일(수) 2 23 24 25 27일(월)-29일(수)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기간 2022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미감	
7 JULY 日月火水木金土 5일(화) 2022학년도 1학기 성적근거자료 제출 마감 1 2 7일(목)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성적표 출력 10 11 12 13 14 15 16 26일(화)~27일(수) 2022학년도 2학기 장바구니 기간 17 18 19 20 21 22 23 28일(목) 2021학년도 후기 졸업심사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2 7일(목) 7 8 9 7일(목) 14 15 16 26일(화)~27일(수)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성적표 출력 2022학년도 2학기 장바구니 기간	

	일 정	학사내용	비고
8 AUGUST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일(월)-5일(금) 15일(월)-17일(수) 18(목)-19일(금) 22일(월)-26일(금) 22일(월)~9월9일(금) 29일(월) 29일(월)-9월2일(금)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납 신청기간 교직원 신왕수련회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2022학년도 2학기 개당예배 2022학년도 2학기 사당시청괴목 확인 및 변경신청기간	12일(금) 후기졸업 15일(월) 광복절
9 SEPT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일(목) 22일(목)	2022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2023.2) 논문계획서 제출 일반학과 신앙수련회	9일(금)~12일(월) 추석
10 OCTOBER 日月火水木金土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24/25 26 27 28 29	17일(월)-22일(토)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간(8주차)	3일(월) 개천절 10일(월) 한글날 대 제공휴일
11 NOV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11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일(수)-4일(금) 14일(월)-15일(화) 21일(월)-12월 9일(금) 23일(수)	환원제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2022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 논문 제출 마감	
12 DEC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일(월)-17일(토) 19일(월)-23년1월 6일(금) 21일(수) 26일(월)-28일(수)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및 결손과목보충기간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기간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입력마감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열람/이의신청/성적정정기간	25일(일) 성탄절
(2023) 1 JAN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일(화) 5일(목) 19일(목) 31일(화)~2월 1일(수)	2022학년도 2학기 성적근거자료 제출 마감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표 출력 2022학년도 전기 졸업생 졸업심사 2023학년도 1학기 장바구니 기간	1일(일) 신정 21일(토)~24일(화) 설날
2 FEBR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6일(월)~10일(급) 139[월]~15일(수) 14년(일) (월) (4) 160[2] (월) (4) 160[2] (4) (16) 20[2] (-249[16] 20[2] (-38] (16) 20[2] (-249[16] 27[2] (24) 27[2] (24) 27[2] (26) 27[2] (26) 27[2] (26) 27[2] (26) 27[2] (26) 27[2] (26) 27[2] (26)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납 신청기간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 교직원 신앙수련회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 2023학년도 1학기 가강예배 2023학년도 1학기 구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신청기간	
3 MARCH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일(수)	2022학년도 후기졸업예정자(2023.08) 논문계획서 제출	1일(수) 삼일절

* 국공일·공강일에 휴강한 강의는 "결손과목 보충기간"에 보강하여야 함

2022학년도 학사일정

케이씨대학교 대학원

		케이까디	1악╨ 내악원
	일 정	학 사 내 용	비고
1 JAN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일(금) 10일(월) 20일(목)	2학기 성적보고서자료 제출 마감 2학기 재학생 성적표출력 2021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1일(토) 신정 30일(일)~2월2일 (수) 설날
2 FEBR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21 22 23 24 25 26 27 28	3일(목) - 10일(목) 15일(화) 17일(목) - 18일(금) 22일(월) - 26일(금)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교직원신앙수련회 2022-1학기 등록기간(1주일 전 등록금고지서 흥력 가능)	r.cdn
3 MARCH 日月火水木金土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일(수) - 8일(화) 2일(수) - 8일(화) 7일(월) - 11일(금) 15일(화) 22일(화)	2022학년도 입학식 및 1학기 개강예배 1학기 수강과목 확인 변경 기간 졸업종합시험신청(석사:3·4차(일),4·5차(특),박/ 5·6차) 1학기 외국어시험 논문계획서 제출(석사3차, 박사5차)	^사 1일(화) 삼일절 9일(수) 대통령선거
4 APRIL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일(월) - 30일(토)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기간	19일(화) 개교기념일
5 MAY 日月火水木金土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4/ 25 26 27 28 29	9일(월) - 11일(수) 12일(목) - 25일(수) 27일(금)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영성수련회 1학기 졸업종합시험 기간 2021학년도 후기 논문심사신청 마감(3부 제출)	5일(목) 어린이날
6 JUNE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일(월)- 25일(토) 30일(목)	1학기 기말고사 및 결손과목보충기간 2021학년도 1학기 성적입력마감	1일(수) 지방선거 6일(월) 현충일
7 JUL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일(월)-6일(수) 13일(수) 15일(금)	1학기 강의평가/성적열람/이의신청/성적정정기(2022학년도 1학기 성적근거자료 제출 마감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 성적표 출력	<u>"</u>

8 AUGUST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경 1일(월) - 5일(금) 10일(수) 18일(목) - 19일(금) 22일(월) - 26일(금) 29일(월) - 9월 1일(목) 29일(월) - 9월2일(금)		비 고 12일(금) 후기졸업 15일(월) 광복절
9 SEPTEMBER 日月火水水金土 1 2 3 4 5 6 7 8 9 10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일(목) - 7일(수) 14일(수) 16일(금)	졸업종합시험신청(석사:3·4차(일),4·5차(특),박시 5·6차) 2학기 외국어시험 논문계획서 제출(석사3차, 박사5차)	9일(금)-12일(월) 추석
10 OCTO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일(월) - 22일(토)	논문 초고 제출 마감(1부 제출)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2학기 졸업종합시험 기간	3일(월) 개천절 10일(월) 한글날 대 제공휴일
11 NOV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일(월) - 18일(금) 7일(월) - 8일(화) 11일(금) 14일(월) - 18일(금) 22일(화)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모집기간 대학원 학술포럼 / 일대원 외국인영성수련회주간 2022학년도 전기 논문심사신청 마감(3부 제출) 2023-1학기 외국어시험/장학금/등록금분납 신청기 간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파송예배	
12 DECEMBER 日月火水水魚土 1 2 3 4 5 6 7 8 9 1011 12 13 14 15 16 17 18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일(월) - 17일(토) 21일(수) 26일(월) - 28일(수)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및 결손과목보충기간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입력마감 2학기 강의평가/성적열람/이의신청/성적정정 기간	25일(일) 성탄절
(2022) 1 JANUARY 日月火水木金土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24/25 26 27 28 29	3일(화) 5일(목) 19일(목)	2022학년도 2학기 성적근거자료 제출 마감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성적표출력 2022학년도 전기 졸업생 졸업심사	1일(일) 신정 21일(토)-24일(화) 설날
2 FEBR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6일(월) - 10일(목) 14일(화) 16일(목) - 17일(금) 20일(월)-24일(금) 27일(월)-3월 2일(목) 27일(월)-3월 3일(금)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22학년도 학위수여식 교직원 신앙수련회 2022-1학기 등록기간 2023학년도 입학식 및 1학기 개강예배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신청 기간	
3 MARCH 日月火水水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일(월) - 10일(금) 14일(화) 21일(화)	졸업종합시험신청(석사:3·4차(일),4·5차(특),박시 5·6차) 1학기 외국어시험 논문계획서 제출(석사3차, 박사5차)	1일(수) 삼일절

Academic Calendar for 2022

KCU Graduate School

	일 정	학 사 내 용	비고
1 JANUARY 日月火水木金土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25 26 27 28 29	7(Fri) 20(Thu)	Check Grade&Print out report cards 2학기 성적표출력 Examination of candidates for graduation 2021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30 - 2 Lunar
2 FEBR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Thu)-10(Thu) 15(Tue) 22(Mon)-26(Fri) 17(Thu)-18(Fri)	Course Registration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기간 Graduation Ceremony 2021학년도00 학위 수여식 Registration for Spring 2022-1학기 등록기 간 Retreat 교직원 신앙수련회	
3 MARCH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Wed)- 8(Thu) 2(Wed)- 8(Thu) 7(Mon)- 11(Fri) 15(Thu) 22(Thu)	Classes Begin & Orientation 입학식 및 1학기 개강예배 Apply for Change of Course 1학기 수강과 독학인 변경 기간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s 졸 업종합시험신청 English Test 1학기 외국어시험 Deadline: Thesis plan application 논문계획 서 제출	lIndependence Movement Day
4 APRIL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Mon)-30(Sat)	Mid Term Test (7~8 week) 2022학년도 1학 기 중간고사기간	19University anniversary
5 MA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Mon)-11(Wed) 12(Thu)-25(Wed) 27(Fri)	Spiritual Retreat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영 성수련회 Comprehensive Exams 1학기 졸업종합시험 기간 Deadline: Apply for Examination of Doctor 's(Master 's) thesis 2021학년도 후 기 논문심사신청 마감(3부 제출)	5 Children's day
6 JUNE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Mon)-25(Sat) 30(Thu)	Final Exams 1학기 기말고사 및 결손과목보 충기간 Deadline for reporting grades 1학기 성적 입력 마감	6 Memorial Day
7 JUL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25 26 27 28 29 30	15(Fri)	Print out their report cards 1학기 성적표 출력	

	را ما	શ્રી મો મો ઇ	บโ
	월 성	학 사 내 용 Course Registration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미끄
8 AUGUST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Mon)-5(Fri) 10(Wed) 18(Thu)-19(Fri) 22(Mon)-26(Fri) 29(Mon) 9/1(Thu) 29(Mon)-9/2(Fri)	신청 Examination of candidates for graduation 졸업심사 Spiritual Retreat for faculty 교직원 신앙수 런회 Registration for Fall 2022 2학기 등록기간 Class Beginning service 2학기 개강예배 Apply for Change of Course 2학기 수강과목 확인 변경기간	12일(금) 후기졸 업 15 National Liberation Day
9 SEPT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Thu)-7(Wed) 14(Wed) 16(Fri)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s 졸업 중합시험신청 English Test 2학기 외국어시험 Deadline: Thesis plan application 논문계획 서 제출	9-12 Chuseok
10 OCTOBER 日月火水木金土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24/25 26 27 28 29	14(Fri) 17(Mon)-22(Sat) 24(Mon)-11/11(Fri)	Deadline: Thesis Draft 논문 초고 제출 마감 (1부 제출) Mid Term Test 중간고사 Comprehensive Exams 2학기 졸업종합시험 기간	3 National foundation Day 10 Hangul Proclamation Day
11 NOV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Mon)-18(Fri) 7(Mon)-8(Tue) 11(Fri) 14(Mon)-18(Fri) 22(Tue)	Recruiting Period of new graduate students 202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모집기간 piritual Retreat for International Student 외국인 영성수련회 Deadline: Apply for Examination of Doctor 's(Master 's) thesis 2022학년도 전기 논문심사신청 마감(3부 제출) Applying for registration payments in installments 2022-1학기 외국어시험장학급등록급분납 신청기간 Dispatch Worstip 신학대학원 외송에배	
12 DECEMBER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Mon)-17(Sat) 21(Wed) 25(Mon)-28(Wed)	Final Exams 2학기 기말고사 및 결손과목 보 충수업기간 Deadline for reporting grades 2학기 성적입 력 마감 Check Grade 2학기 성적확인	25 Christmas
(2023) 1 JANUARY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Thu) 20(Thu)	Print out their report cards 2학기 성적표출 력 Examination of candidates for graduation 2022학년도 전기 졸업심사	21 - 24 Lunar
2 FEBRUARY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5(Mon)-10(Thu) 14(Tue) 20(Mon)-24(Sat)	Course Registration 2023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기간 Graduation Ceremony 2022학년도 학위수여 식 Registration for Spring 2022-1학기 등록기 간	
3 MARCH 日月火水木金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Mon)-10(Fri) 14(Tue) 21(Tue)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s 졸업 종합시험신청 English Test 1학기 외국어시험 Deadline: Thesis plan application 논문계획 서 제출	1 Independence Movement Day

[※] 국공일·공강일에 휴강한 강의는 "결손과목 보충기간"에 보강하여야 함





대 학

인문사회계열 신학과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교양교육과정

인문사회 계열

신학과

교육목표

-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 에 앞장선다.
- 지역사회의 다문화인과 소외계층을 섬기는 기독교적 인성을 기른다.
-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글로 벌 능력을 함양하다.
- 한국사회와 교회의 제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융복합능력을 기른다.
- 교회사역에 필요한 성경, 실무능력, 상담 능력 을 함양한다.
- 환원운동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교회에 구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활동 및 진로

- 신학사(Th.B) 학위취득
- 외국의 자매대학 등으로 유학
- 목회자, 기독교 관련 기관의 전문가로 활동
- 교계 신문이나 방송국, 출판사 등에 기자, 언론인으로 진출
- 해외선교사, 교도소, 빈민 등 국내 특수 선교 사로 파송될 수 있음

특성화

- 다문화 사회 지도자와 다문화 지역선교사 양성
- 전문적인 성서지식을 위한 BIBLE STUDY 그룹
-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 기도회 모임
- 전문적인 목회양성을 위한 동아리
- 자비량 선교사 양성, 아웃리치 팀 구성 (각 나라 별 선교)

교육과정

학기	']	1학기		2학기		취계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નો <u>છો</u>			신약개론	3	
	전필	소계		소계	3	3
1학년	-1 1J	성서배경사	3			
	전선	소계	3	소계		3
		계	3	계	3	6
		구약개론	3	실천신학개론	3	
	전필	환원운동사	3			
		소계	6	소계	3	9
		복음서연구	3	오경연구	3	
ا در ا		설교학	3	초대교회사	3	
2학년	-1 1J	희랍어	3	사도행전	3	
	전선	히브리어	3	NST English Bible	3	
		소계	12	소계	12	24
		계	18	계	15	33
	ઝો જો	조직신학 I	3			
	전필	소계	3	소계		3
		선교역사와 신학	3	한국교회사	3	
		개신교신학	3	조직신학 II	3	
3학년	-1 1J	기독교상담이론및실제	3			
	전선	바울서신(홀)/ 일반서신(짝)	3			
		소계	12	소계	6	18
		계	15	계	6	21
	નો <u>જો</u>			신약교회론	3	
	전필	소계		소계	3	3
		예언서연구	3	요한문헌	3	
		신약신학	3	구약신학	3	
4학년		목회와 미디어 활용	3	현대신학	3	
4억년	전선	기독교청소년교육(신설)	3	스포츠선교이론과실제(신설)	3	
				기독교 윤리	3	
				기독교청소년상담	3	
		소계	12	소계	18	30
		계	12	계	21	33
		전공필수합계	9		9	18
		전공선택합계	39		36	75
		전공과목합계	48		45	93

인문사회 계열

(2) 빅데이터경영학과

교육목적

21세기 국제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G2(영어·중국어)언어를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와 융합능력, 미래기술, 봉사정신을 함양한 글로벌 창의 실무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교육목표

-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능력을 겸비한 글 로벌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선도할 실무 인재 양성
-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

졸업후 진로

- 일반 기업, 공기업, 비영리 기관
- 무역회사 및 항공사, 외국계 기업
- 국제기구 및 외교관련 기관
- 정보기술/시스템 관련 전문업체
- 언어, 빅데이터, 경영 등 관련 분야의 대학원 진학 및 유학
- 구글, 네이버, IBM, SAP, Oracle 등 글로벌 기업

관련 자격증 및 시험

- TOEIC, TEPS, TOEFL, TEFL, IELTS, TESOL, OPIc 등
- HSK, HSKK, BCT, CPT, FLEX, TCT, TSC 등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빅데이터분석사 등
- 컴활1,2급, 코딩지도사, 정보처리기사, OCJP, DBA 등
-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특성화 프로그램

- G2문화페스티벌: 영어연극, 중국어연극, 중국 전통춤 공연을 통해 영 어권과 중화권 국가의 문화체험 및 실무 언어능력 배양
-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해외 자매 대학(Abilene Christian University,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남경대학, 남경사범대학, 길림 사범대학, 심양사범대학, 은천대학, 산동이공대학, 연변과학기술대 학 등)에서 6개월 혹은 1년 간 수학
- 해외자매대학 (ACU, OC, 남경대학, 남경사범대학) 과 2 + 2 복수학위제를 실시하여 KC대학교 졸업장과 해외자매대학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 가능
- 학습소그룹 및 자격증 중심 교육: 1인 1자격증 이상 취득을 목표로 영어 및 중국어, 다양한 자격증을 위한 학습소그룹을 지원
- 실무중심형 교육 강화로 학습 효율성 증진: 산업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는 복합적 프로젝트 실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내용의 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론 및 실무분야의 전문성 배양
-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취업증진을 위해 다수의 기관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실습 과목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심화. 특히, 4학년 2학기에는 현장실습(15학점)을 통해 현장 경력을 취업 전에 취득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마친 후에는 바로 취업과 연계

융합교육과정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G2(영어·중국어)·빅데이터·경영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경영(마케팅), 빅데이터, SW, 회계 등 각 분야가 융복합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음

- 국제적 통용 언어인 G2(영어 · 중국어) 어학 능력
-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능력
- 융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경영) 능력

영역별 이수학점

- G2빅데이터경영학과를 단일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48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27학점을 이수해야 함

전공트랙제

- G2빅데이터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은 4개 트랙으로 구분하며, 전공트랙제를 선택적으로 운영
- 아래와 같이 4가지 트랙을 구분하고 일정한 전공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 전공트랙인증서 발부
- * 전공트랙제란, 학과 내 커리큘럼을 세부 트랙으로 나누고 학생들이 이를 이수할 경우, 학과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보증'해 주는 제도

영역	트랙	분야	
G2	영어(30학점)	영어	
G2	중국어(30학점)	중국어	
	비리하다(20호텔)	빅데이터	
건성	빅데이터(30학점)	IT	
경영 	건 어/20출1건\	회계/세무	
	경영(30학점)	마케팅/유통	

교육과정

힉	-7]	1학기		2학기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G2영어실습	3	G2중국어실습	3		
	전필	경영학원론	3				
1		소 계	6	소 계	3	9	
1 학 년				회계학원론	3		
년	전 선			빅데이터경영론	3		
		소 계		소 계	6	6	
		계	6	계	9	15	
	그 기	경영통계학	3				
	전 필	소 계	3	소 계			
		영어독해입문	3	영문법	3		
		영어어휘구조	3	영어발음	3		
		기초중국어발음연습	3	중국어문장연습	3		
		초급중국어1	3	초급중국어2	3		
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R프로그래밍	3		
2 학 년	전 선	중급회계1	3	데이터베이스개론	3		
_		마케팅원론	3	중급회계2	3		
		유통관리	3	소비자행동	3		
				전자상거래	3		
				융합교과1	3		
		소 계	24	소 계	30	54	
		계	27	계	30	57	
		영어문장연습	3	영어작문(홀)/	_		
		영어스피킹	3	영어분장구조(짝)	3		
		초급HSK실습1 (홀)/	2	초급HSK실습2	3		
		초급HSK실습1 (홀)/ HSK독해실습1 (짝)	3	HSK독해실습2	3		
		데이터마이닝	3	기계학습	3		
		컴퓨터구조	3	운영체제	3		
3 학 년	전 선	관리회계(홀)/ 원가회계(짝)	3	고급회계(홀) 회계감사(짝)	3		
27		마케팅조사	3	서비스경영	3		
		소매경영	3	유통시스템	3		
		비영리회계	3				
		린스타트업과 BM	3	융합교과2	3		
		소계	30	소 계	27	57	
		계	30	<u></u> д	27	57	
		영어텍스트리딩	3	비즈니스영어(짝)/		-	
	전 선	고급영어실습	3	영어드라마실습(홀)	3		
		중국어드라마실습(짝)/ 비즈니스중국어실습(홀)	3	중국지역문화와 비즈니스	3		
4				중국어인터뷰실습	3		
4 학 년		빅데이터 캡스톤디자인	3	정보시스템 캡스톤디자인	3		
년		프로젝트관리	3	마케팅세미나	3		
		세무회계	3	유통세미나	3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3				
		소 계	21	소 계	18	39	
		계	21	계	18	39	
전공필수 합계			9		3	12	
전공선택 합계			75		81	156	
		전공과목 합계	84		84	168	

인문사회 계열

사회복지학과

교육목표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감협력 인재 양성
-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적 인재 양성

활동 및 진로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 관련기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의료사회복지 관련 기관, 학교사회복지 관련기관, 교정복지기관, 하나센터, 북한 및 통일 관련기관,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 소년관련기관, 아동돌봄센터 및 아동관련기관, 육 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 직 공무원, 사회복지관련 공기업 등

취득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보건복지부)

취득 가능 자격증

- 사회복지사 1급
- 학교사회복지사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 통일사회복지사 이수증

특성화

- 동문선배들과 함께하는 전공멘토링 활동
- 밀착형 현장중심 실습 및 인턴십 운영
- 서울시립 강서노인복지관 위탁운영
- 강서·양천·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다수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 남북통합 지원센터 운영
- 자매대학교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힉	 기	1학기 2학기				
학년	구분	과목명	학 점	과 목명	학점	합계
		사회복지학개론**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합계
1 학	전선	사회문제론	3	사회복지역사	3	
약 년		소계	6	소계	6	12
L.		계	6	계	6	12
		사회복지실천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조사론**	3	정신건강론	3	
		사회복지와통일	3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2	전선	사회복지와인권	3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3	
학	선건	빈곤론	3	가족복지론	3	
년		가족과젠더	3	자원봉사론	3	
		소계	18	소계	18	36
		계	18	계	18	36
		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행정론**	3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현장실습1**	3	
	전선	사례관리론	3	사회보장론	3	
		아동복지론	3	사회복지마케팅	3	
3 학		노인복지론	3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년		학교사회복지론	3	청소년복지론	3	
		의료사회복지론	3	집단상담 및 지도	3	
		사회복지현장이해 및 분석	3	장애인복지론	3	
		소계	24	소계	24	48
		계	24	계	24	48
	전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3	
		사회복지현장실습2**	3	여성복지론	3	
4		국제사회복지론	3	북한지역사회 개발과 NGOs	3	
학 년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가족상담및치료	3	
건		사회복지진로설계	3	사회복지와4차산업혁명	3	
		소계	15	소계	15	30
		계	15	계	15	30
		전공필수합계	0		0	0
전공선택 합계		63		63	126	
		전공과목 합계	63		63	126

^{**}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 필수 10과목이며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현장실습 2** 중에서 한 과목 수강

보육교사자격과정 교육과정

학	-フ]	1학기		2학기		합계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자격 과정 필수	보육학개론	3	영유아발달	3	
1학년 2학년 3학년		소 계	3	소 계	3	6
	자격 과정 선택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소 계	0	소 계	0	0
		계	3	계	3	6
	자격	보육과정	3	아동과학지도	3	
	사건 과정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놀이지도	3	
	担十	소 계	6	소 계	6	12
2학년	자격			(정신건강론)*	(3)	
	과정 선택			(가족복지론)*	(3)	
	선택	소 계	0	소 계	0	0
		계	6	계	6	12
	자격 과정 필수	영유아교수방법론	3	아동동작	3	
		언어지도	3	보육교사론	3	
		소 계	6	소 계	6	12
3학년	자격 과정 선택	(지역사회복지론)*	(3)			
		소 계	0	소 계	0	0
2학년		계	6	계	6	12
	자격 과정 필수	보육실습	3	아동안전관리	3	
				아동권리와 복지	3	
4 첫1.1 년		소 계	3	소 계	6	9
4약년	자격 과정 선택	특수아동의 이해	3	부모교육	3	
		소 계	3	소 계	3	6
		계	6	계	9	15
자격과정필수 합계		18		21	42	
	자격과정선택 합계		3		3	6
자격과정과목 합계		21		24	45	

^{()*}과목은 사회복지학과 내 개설 교과목임

인문사회 계열

상담심리학과

교육목적

"근거-기반으로 현장중심 심리지원을 구현하는 상담전문가"

교육목표

- 전문성: 모든 심리지원 활동에 근거-기반 전 문가 모델을 구현하는 상담전문가 양성
- 실용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실무에 탁월한 역량 발휘할 수 있 는 준비된 상담전문가 양성
- 창의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상 담문화 확산에 창의적으로 기여하는 상담 전 문가 양성

취득자격증

- 상담심리사2급(한국심성교육개발원)
 - 상담 및 임상실습I, II 과목 이수자
- 독서심리상담사2급(한국심성교육개발원)
 - 독서치료 과목 이수 후 자격시험 응시부여
- 또래상담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또래상담교육 이수자
- 중독심리사(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학회)
 - 중독상담 관련 과목 이수 후 응시자격
- 코칭 자격증 KAC(한국코치협회 KCA)
 - 코칭심리학 과목 이수 후 응시자격

취득가능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3급(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직업상담사2급(고용노동부)
- 상담심리사2급(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2급(보건복지부)
- 기타 심리치료 관련 자격증(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활동 및 진로

- 전문상담기관, 심리치료센터, 정신의료기관
- 학교상담실, 상담교육기관 및 교육 공공기관
-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및 보호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재활시설
- 기업 및 산업체 인사파트 및 부설 상담소
- 코칭전문 기업체, 학습코칭 및 진로코칭 컨설팅 분야
- 경찰청 심리분석 전문가 및 피해자 심리지원 분야
- 법무부 교정분야 및 소년원 상담지원 분야
- 중독 및 인터넷 예방상담 기관
- 국방부 병영생활상담관 및 군상담 기관
- •노동부 지방 관서 및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기관

특성화

-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실습 및 슈퍼비전을 통한 현장 교육 강화
-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별 교육 실시
- 전공관련 소그룹 활동 및 연구모임 활성화
- 전공생 주도 또래 상담사 및 코칭 멘토단 활성화
- 지역사회 심리학 기반 연계사업 활성화
- 치유(healing) 및 성장(Growth)지향 확장형 심리 전문가 양성
- 4차 산업시대 융합형 실천중심 심리 전문가 양성
- 전공분야 직무개발 및 취업 자기주도적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취계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전선	상담심리학	3	학습이론	3	
1학년		발달심리학	3	성격심리학	3	
140		소 계	6	소 계	6	12
		계	6	계	6	12
		상담이론과 실제	3	직업상담심리학	3	
		코칭심리학	3	이상심리학	3	
		심리통계	3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3	
2학년	전선	심리측정과 평가I	3	심리측정과 평가II	3	
2억년		청소년의 이해	3	사회심리학	3	
		소 계	15	소 계	15	27
		계	15	계	15	27
		임상심리학	3	위기상담	3	
		중독상담	3	인지행동치료	3	
		독서치료	3	놀이치료	3	
	전선	상담연구방법론	3	상담현장실무	3	
3학년	선언	산업 및 조직심리학	3	초[Hyper]시대상담	3	
		소 계	15		15	30
		계	15		15	30
		상담실습	3	아들러의심리학	3	
		대상관계이론	3	여성주의상담	3	
		가족상담	3	집단상담	3	
4학년	전선	범죄심리학	3	재활심리 및 상담	3	
. –						
		소 계	12	소 계	12	27
		계	12	계	12	27
	 전	· 건공선택 합계	48		48	96
	전공과목 합계		48		48	96

상담심리전공 수업 수강 시 선수과목

심리측정과 평가I: 발달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측정과 평가II: 발달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측정과평가I, 이상심리학

상담 및 임상실습I: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이상심리학,

심리측정과 평가I/II,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또는 놀이치료

상담 및 임상실습II :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이상심리학, 심리측정과 평가I/II,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또는 놀이치료, 상담 및 임상실습I

자연과힉 계열

간호학과

교육목표

- 비판적 사고를 통해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술기를 통합 적용한다.
- 과학적 탐색을 통해 간호연구문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한다.
- 간호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다.
- 간호전문직의 윤리적, 법적 기준을 이해한다.
- 국내외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글로벌능력을 함양한다.
- 기독교적 인성을 바탕으로 인간 사랑을 실천한다.

프로그램학습성과

-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무에 적용한다.
-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 과정을 적용한다.
-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 간호대상자에게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 보건의료팀 내 업무조정과 협력을 통해 간호 리더십을 발휘한다.
- 간호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 윤리적 기준을 이해한다.
-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한다.

활동 및 진로

- 종합병원 간호사
- 간호직 공무원
- 산업간호사
- 제약회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회사
- 법률 사무소
- 연구소, 교수
- 전문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아동, 종양, 임상의 13개 분야)
- 노인간호센터 창업
- 해외 취업

특성화

- 선진화사업: 글로벌 간호보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전문직 역량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독교적 인성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간 사랑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학기		1학기		2학기		-> ->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인간과 건강	2	의사소통론	2	
	전공	기초간호과학1	3	인간심리의 이해	2	
	기초	인간성장과 발달	2	기초간호과학2	3	
1학년		소계	7	소계	7	14
	전공			간호학개론	2	
	필수	소계	0	소계	2	2
		계	7	계	9	16
	전공		0	약리학	2	
	기초	소계	0	소계	2	2
		기본간호학1	2	기본간호학2	2	
		기본간호학실습1	1	기본간호학실습2	2	
	2) 27	건강사정	1	성인간호학1	1	
o. #1, 1	전공 필수	건강사정실습	1	성인간호학2	2	
	智丁	간호과정과비판적 사고	2	노인간호학	1	
2학년		간호윤리	1			
		소계	8	소계	8	16
		의학용어	1	건강증진과 교육	2	
	전공	국제간호의 이해	2	임상간호입문실습	1	
	선택	호스피스와 영적간호	1			
		소계	4	소계	3	7
		계	12	계	13	25
		성인간호학실습1	2	성인간호학4	2	
		여성건강간호학1	3	성인간호학실습2	2	
		아동간호학1	3	간호연구캡스톤디자인	3	
	2) 2	아동간호학실습1	2	여성건강간호학2	2	
റട്ടിപ	전공 필수	여성건강간호학실습1	2	아동간호학2	2	
3학년	일구	성인간호학3	2	아동간호학실습2	2	
		정신간호학1	3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2	
				정신간호학실습1	2	
		소계	17	소계	17	34
		계	17	계	17	34

학	7]	1학기		2학기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성인간호학5	2	성인간호학6	2		
4학년		성인간호학실습3	2	지역사회간호학2	2		
		정신간호학2	2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2		
		정신간호학실습2	2	간호관리학2	2		
	전공	지역사회간호학1	3	간호관리학실습1	2		
	필수	지역사회간호학실습1	2	보건의료법규	2		
		간호관리학1	3	통합역할실습2	2		
4약년		통합역할실습1	1				
		소계	17	소계	14	31	
		감염관리	2	스트레스와 건강	2		
	전공 선택	진로설계세미나2	1	다문화 이해	2		
		소계	3	소계	4	7	
		계	20	계	18	38	
	전-	공기초합계		16		_	
전공필수합계			83				
	전공선택	합계(이수/편성)	6/14				
	전-	공과목합계		105			

자연과학 계열

식품영양학과

교육목적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의 실천, 건강한 신체유지, 식량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등에 관련된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학문에 대해 탐구하여 건강한식생활 환경을 선도할 첨단지식과 연구 능력을 갖춘 식품·영양·위생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목표

-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한 식품영양 전문인 양성
- 국민건강 증진과 식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식품영양 전문인 양성
- 국가의 식품영양정책 수립과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영양학 분야 학문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전공관련 자격증

- 영양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 위생사
- 조리산업기사
-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 제과·제빵기능사
- 보건교육사

활동 및 진로

- · 영양관련 분야 취업 : 보건소 영양사, 단체급식 영양사, 학교 급식 영양사, 산업체 영양사, 병원 영양사, 다이어트 및 영양 컨설턴트, 상담영양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 · 식품관련 분야 취업: 농·수 축산관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산, 가공 및 품 질관리, 기술직 및 식품 위생직 공무원, 식품업체
- · 외식관련 분야 취업: 외식업계 매니저, 외식산업체, 외식관련 컨설팅 업체
- · 조리관련 분야 취업: 단체급식업체, 호텔의 식품관련 부서, 제과제빵업
- · 연구관련 분야 취업: 식품회사 연구개발부서, 국공립 식품개발 연구소 및 위생연구소
- · 유통관련 분야 취업 : 식품유통업체, 식품유통 컨설팅업체

특성화

- 최첨단 실습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완비
- 교수와 학생간의 밀착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지도
-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현장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에 유리한 다양한 전문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교육과정

	학:	7]	1학기		2학기		중) -))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일반화학	3	기초영양학	3	
	전필	전공능력1 (식품영양)	식품학	3			
		(12 0 0 /	소계	6	소계	3	9
1학년		전공능력1 (식품영양)			조리원리	3	
1 1 6	전선	전공능력2 (조리식품 심화)			한국조리실습	2	
			소계	0	소계	5	5
			계	6	계	8	14
			공중보건학	3	식생활관리	3	
		전공능력1 (식품영양)	고급영양학	3	영양생화학 및 실험	3	
		(식품영양)	식품가공학 및 실험	3	식품위생학	3	
ا الح	전선				식품화학	3	
2학년		전공능력2 (조리식품심 화)	서양조리실습	2			
			소계	11	소계	12	23
			계	11	계	12	23
			영양교육 및 상담	3	식품분석 및 실험	3	
		전공능력1 (식품영양)	단체급식관리	3	생활주기 영양학	3	
		[(식품영앙)]	인체생리학	3	영양판정 및 실습	3	
3학년	전선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3			
076	전공능력	전공능력2	-1 -1 -1 11 &		영양사현장실습	2	
		(조리식품 심화)	다량조리실습	2	식품과학연구	2	
			소계	14	소계	13	27
			계	14	계	13	27
			임상영양학	3	발효식품학	3	
		저곳누려1	지역사회영양학	3	식품위생법규	2	
		전공능력1 (식품영양)	급식경영학	2	식사요법 및 실습	3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3			
4학년	전선				제과코디네이션	2	
+기간		전공능력2	J 455 9-0		식품영양캡스톤	3	
		(조리식품 심화)	신제품개발	3	식품영양연구	2	
					প্রতিক্র		
			소계	14	소계	15	29
			계	14	계	15	29
		전공필수	합계	6		3	9
		전공선택	합계	39		45	84
		전공과목	합계	45		48	93

예체능 계열

음악콘텐츠학과

교육목표

- 연주, 작/편곡, 컴퓨터음악 프로그래밍, 레코딩, 믹싱&마스터링, 유통의 통합적 교육
 - 디지털싱글발매 및 영화/드라마/온라인게임
 음악 등의 포트폴리오 제작중심 교육
 - 스타일과 장르에 구분 없이 전문적인 연주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과목 운영
- 개인 PC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블로그 및 유튜 브 등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파 급되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 문화 파급 을 주도하도록 함
- 교회와 사회에서 요구되는 나눔의 인재를 양성함

활동 및 진로

- 가요, 영화, 드라마음악, 뮤지컬 작/편곡가
- 프로듀서, 엔지니어, 사운드 디자이너, A&R, 디렉터
- 지상파 및 CATV 방송기술직
- 뮤직프로덕션 운영 및 공연기획자
- 음악학원 운영자 및 음악교사
- 가수, 트레이너, 공연세션, 전문 연주자 및 싱어 송라이터

취득가능자격증

- AVID Pro Tools 국제공인자격증
- Apple Logic 국제공인자격증
- 음향엔지니어 자격검정위원회 음향전문사 1급/2급/3급
- (사)한국음향예술인협회 Steinberg Cubase 공인자격증

교육과정

<u>ਰ</u> ੋ	 	1학기		2학기		취제
학년	구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합계
	,	전공실기	1	전공실기	1	
	전 필	연주실기	1	연주실기	1	
1	근	소 계	2	소 계	2	4
1 학 년		기초실용화성학1	2	기초실용화성학2	2	
년	정	디지털음악입문1	2	디지털음악입문2	2	
	전 선	보컬테크닉1	2	보컬테크닉2	2	
		소 계	6	소 계	6	12
		전공실기	1	전공실기	1	
	전 필	연주실기	1	연주실기	1	
	ㄹ	소 계	2	소 계	2	4
		클래스피아노1	2	클래스피아노2	2	
2		송라이팅기법1	2	송라이팅기법2	2	
2 학 년		앙상블인트로덕션	2	앙상블인트로덕션	2	
	전 선	보컬테크닉3	2	보컬테크닉4	2	
	- 12	미디시퀀싱마스터	2	고급가상악기연구	2	
		이어트레이닝1	2	이어트레이닝2	2	
		소 계	12	소 계	12	
	,	전공실기	1	전공실기	1	
3	전 필	연주실기	1	연주실기	1	
		소 계	2	소 계	2	4
		앙상블3	2	앙상블4	2	
		스튜디오테크닉1	2	스튜디오테크닉2	2	
3		보컬티칭실습1	2	보컬티칭실습2	2	
3 학 년		뮤직테라피1	2	뮤직테라피2	2	
	전 선	뮤지컬노래감상 및 이해	2	미디오케스트레이션	2	
	ᄔ	팝음악편곡법	2	모던음악사및감상(격년개설)	2	
				리듬과장르연구	2	
		소 계	12	소 계	14	
		전공실기	1	전공실기	1	
	전 필	연주실기	1	연주실기	1	
	핕	소 계	2	소 계	2	4
4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1	2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2	2	
4 학 년		믹싱&마스터링1	2	믹싱&마스터링2	2	
년	저	현대팝음악의경향1	2	현대팝음악의경향2	2	
	전 선	뮤직프로덕션실습	2	뮤직퍼포먼스실습	2	
		필름스코어링	2			
		 소 계	10	 소 계	8	
		전공필수 합계	8	- 11	8	16
		전공선택 합계	42		40	82
		전공과목 합계	50		48	98

2022학년도 입학자 교양 교육과정

우리 대학 특화·교양교육과정의 특징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학문분야 분류체계로 교과목을 분석하여 교양토대와 핵심교양을 체계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대학의 설립이념과 가치철학을 내포한 소양교과인 '특화' 영역은 공동체 가치와 봉사실천 관련 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대' 영역은 기초교육, '핵심' 영역은 교양의 주요 학문 분야 5개 영역의 포괄적 범주교과들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자유이수' 분야는 학생들의 자기관리 및실천지식 등 일반선택 교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교과는 대학의 6대핵심역량과 매칭하여 영역별 보완을 통한 역량 균형교육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교양교육 목적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CREST인재 양성									
교양교육 목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교양인		공동체 가치 교역		섬김의 리더십을 함양한 교양인					
핵심역량	문제해결(T)	창의융합(C)	대인관계(R)	의사소통(CO)	공감협력(E)	자기관리(S)				
교양 역량 정의	문제를 논리적 으로 분석하여 정확하게 인식 하고 비판적으 로 검토하여 해 결하는 능력	창의적사고를 기반으로 다양 한 지식과 정보 를 융합하여 활 용함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창 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 여 갈등을 관리 하고 원만한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역사회에 서 타인과 원활 한 의사소통을	에 기초한 공동 체 의식을 바탕 으로 나눔을 실 천하며, 타인과 서로 협력하여	하여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목 표를 계획 및 실행하며 졸업 후 진로를 설계				

I. 특화·교양. 자유이수 학점 체계

			∳·교양		
	필	수	선택	특화·교양	자유이수
학과	특화	교양 토대	교양핵심 학문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이수학점 계	(일반선택)
신학	3	8	27		
G2빅데이터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38	
상담심리학과	5	8	25	30	-
음악콘텐츠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5	8	12	25	

Ⅱ. 교양필수(특화·토대)

1. 특화

우리대학 교양교육의 목적인 "기독교정신을 실천하는 CREST 인재 양성"에 관련된 교과들로 구성된다.

1학기 교과목		2학기 교과목		핵심	H) T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역량	비고
예배(신학과 7회, 일반학과 6회)				R	필수
대학생활설계	_		-	R	필수
기독교의 이해/성서의	의 이	해 (신학부는 제외)	2	С	택1
대학의 정체성과 학문	2		1	R	필수
사회봉사1					필수

● 예배과목은 신학과는 7회. 그 이외 학과는 6학기 이수를 의무로 한다.

2. 교양토대

우리 대학 교양교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지식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1학기교과목	2학기교과목		핵심		
분야	과목명	학 점	과목명	학 점	역량	비고
의사소통	대학영어1		대학영어2	2	СО	필수
비판적사고	기초	2	СО	설포		
정보문해	컴퓨터의이해 / 컴퓨팅사고와SW코딩(T)				Т	택1

● 교양 기초영역의 필수과정은 교양과목 이수를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Ⅲ. 교양선택

1. 교양핵심

대학의 설립정신을 실천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지식의 기본 원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의 핵심적인 5개 학문분야를 근거로 개설한 교과목들을 6대 핵심역량과 매칭 하였다. 졸업 전에 학문 영역별 각 1개 이상의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

अप	1학기 교과목			2학기 교과목			
학문 분야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비고
	중국문화와 언어 1	CO	3	중국문화와 언어 2	СО	3	
	영어문법 1	CO	2	영어문법 2	СО	2	
	General English 1	СО	3	General English 2	CO	3	
	수화 1	Е	2	수화 2	Е	2	
	예술의 역사적 탐구	С	3	현대예술론	С	3	
문학 예술 23	동서시의 이해(짝) 문학의 이해(홀)	C	3	소설과 영화예술의 통합적 이해(짝)(융) 동서양고전(홀)	C C	3	
23 과목	음악의 시공간과 미디어음악(홀)(융) 음악만들기의 이론과 실제(짝)(융)	C	3	천재들의 삶이 들려주는 서양음악(홀) 대중음악의 흐름(짝)	C C	3	
	한문	СО	3	인문학과 문화콘텐츠(홀)(융)	С	3	
	프랑스문화와 언어 1	СО	2	성서와 음식문화	С	2	
				논리와 시각	Т	3	
	비판적 사고와 논리	Т	3	정의는 무엇인가	Е	3	57H
	철학의 이해	Е	3	대중예술과 철학(융)	С	3	학문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융)	С	3	기독교 세계관과 인성	Е	2	분야
역사	종교와 사회	Е	2	종교와 영성	Е	2	영역별
철학 중교	세계역사(짝) 역사비평(홀)	E E	3	한국 역사와 문화(짝) 한국사(홀)	T T	3	ਰਜ਼ਬ 1
	논리적 글쓰기	CO	2	논리적 글쓰기	CO	2	과목
19 과목	동양철학입문	Е	3	독서와 토론	СО	2	이수
777				중국 역사탐구	CO	2	加入
-				현대사회와 윤리	E	3	필수
				이미지와 기호	С	3	
	교양수학	Т	3	중세철학 확률과 통계(짝) 문명발전과 수학(홀)(융)	T	3	
	자연과학의 이해(짝) 자연계의 숨은 법칙(홀)	T T	3	우주와 지구(짝) 에너지와 환경(홀)	C C	3	
자연 과학	생명과학입문(짝) 생명과학의 미래(홀)	E E	3	일반생물학(짝) 미생물에대한이해(홀)	T T	3	
74	기초통계학	Т	3	식생활과 과학	S	2	
23 과목	의학과 생활(짝) 약과 건강(홀)	E E	3	에이징의 과학(짝) 전염병과 인간(홀)	T T	3	
	빅데이터사회와 정보기술	R	3	빅데이터 분석(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홀)	T T	3	
	식품과 영양과학	Т	3	메타버스시대의리터러시	СО	3	
	기초지리학	С	3				

₹).□	1학기 교과목			2학기 교과목			
학문 분야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비고
	국제사회의 이해	R	3	국가행정의 이해	Т	3	
	지식구조와 정치 1	S	2	지식구조와 정치 2	S	2	
정치	미래사회와 국가	R	3	국제정치와 세계화	СО	3	
'8시 경제	공공생활과 법(홀) 법의 이해(짝)	S S	3	미디어와 법(짝) 경제와 법(홀)	C C	3	
17	소비자와 시장	R	3	사회와 경제	R	3	
과목	정치의 이해	Т	3	문화예술과 정치(융)	С	3	57H
	통일과 평화	Е	3	북한사회개발과 시민사회	СО	3	학문
	금융과 경제	Т	2	금융과 경제	Т	2	분야
	삶과 교육	Т	3	이상사회와 교육	Т	3	영역별
	지역문화의 이해와 탐구원리(융)	S	3	창의적 발상	С	3	1
	배움과 지식의 원리 1	S	2	배움과 지식의 원리 2	S	2	과목
사회	심리의 이해	S	2	심리와 정신건강	S	3	이수
문화 심리	가족과 사회	Е	2	청년과 사회환경탐구(홀) 사랑이란 무엇인가(짝)	R R	2	필수
21	사회과학입문	R	3	여성의 사회학적 탐구	R	3	
21 과목	사회현상의 이해	R	3	현대사회의 이해	S	3	
	사회와 인간	R	2	현대중국사회이해	R	2	
	인간의 가치탐색(짝) 동서문명의창조와전달(홀)	E C	3	인류와 문화(짝)	R	3	
	인간사회환경탐사	S	3				

2. 유복합 교과

시대변화에 따른 융복합 인재의 기본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개설된 융복합 교과 는 교과명에 (융)이라고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과들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과 소양 등의 기본 능력들을 결합하여 기초지식 원리를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능력을 증진한다. 대학이 추진하는 '창의융합' 교과 개발 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교양 교과들도 이에 해당된다.

3. 온라인강좌

학생들의 진입장벽 없는 학습을 독려하고 우리 대학에 개설하기 힘든 분야의 교과 이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대학 e-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움(SELC)에서 개설하는 온라인강좌를 한 학기당 6학점, 졸업까지 최대 2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강좌에 MOOC, K-MOOC 교과도 포함한다. 단, 온라인강좌는 교양교 육원에서 매 학기 교양 균형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교과에 한하여 인정한다.

IV. 일반선택

1. 자유이수

이 분야의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능동적 삶을 영위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도전 교과들로 구성된다. 시대변화와 산업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학문 분야의 실용적 추세와 생활응용 성향이 강한 실천지식과 학생 자기설계와 취·창업 준비단계에 이르는 교과들이 개설된다. 이 영역에서의 이수비율은 자유이다.

1학기 교과목			2학기 교과목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비고
내 안의 리더 찾기	S	2	리더의 세상 보기	R	2	
온라인토익 1	СО	1	온라인토익 2	СО	1	
4차산업과 진로	S	1	성공취업과 커리어디자인	S	1	
4차산업혁명과 창업	S	3	창업의 이해와 창업실무	S	1	
사회봉사 2	Е	1	기업가정신과 창업	R	3	
대학합창 1	Е	2	사회봉사 2	Е	1	자유
공감과 협력의 피아노 1	Е	2	대학합창 2	R	2	선택
재즈댄스(짝) 운동과 건강관리(홀)	S S	2	공감과 협력의 피아노 2	Е	2	
생활과 건강	S	2	취업준비실습	S	1	
			K-POP실습과이벤트	С	2	
			스포츠와 여가활동(짝) 실용무용(홀)	R S	2	

2. 역량강화

졸업자격에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학업적응 및 향상에 필요하거나 하여 해당되는 학생들에 반드시 이수토록 개설되는 교과목들로 구성된다.

1학기 교과목	2학기 교과목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과목명	핵심 역량	학점	비고
대학생활과 자기이해					
· 영	СО	2			

- <영어특강(토익)>은 졸업인증에 필요한 어학시험 점수를 미취득한 6학기 초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과목이다.
- <대학생활과 자기이해>는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학점 이상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P/F 과목이다.





학 사

등록 신앙교육 휴학 복학 재입학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 및 졸업인증 졸업이수학점 조기졸업 편입생학점인정 재수강 유고결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 보육교사 2급 자격취!

주무부서 총무과 (2600-2473) ○ 등록 안내문: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매 학기 등록기간에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인트라넷 을 통해 본인의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 기간: 매년 학사 일정에 따름 1학기- 2월 20일 전후 1주일/ 2학기- 8월 20일 전후 1주일. ○ 추가 등록: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가 등록 기간 (개강 초 지정 기간 - 홈페이지 공지)에 납부 ○ 등록금: 개인별 해당 등록 학기에 따라 금액이 부여됨 입학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 기준임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휴학전 3학기를 이수한 경우 4학기<2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함) ○ 등록금 분할 납부 : 등록기간 1주 전부터 학사 인트라넷에서 신청 가능 - 2차부터 4차까지 본인 선택 가능 - 균등 분할 납부 가능 - 8학기초과자 적용 제외 ○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자와 미등록자 명부를 관련 행정 부서에 통보 함(학생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음) ○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 할 경우에는 등록금의 인상된 차액을 납부하 지 않으나 일부 납부(장학금 취소자 포함)하고 휴학한 자일 경우에는 복학 당시 해당 등록 금액에 따른 인상 차액을 납부해야 함. ○ 9학기 이상 등록하는 경우의 등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최종 수강 과목 신청 후에 학사인트라넷에 고지서를 재발급 받음.

	항목	내 용
	주무부서	○ 교목실(2600-2426) 본관 1층
		○ 예배출석은 주 1회(신학과 주간 주3회)를 원칙으로 졸업이수학점 13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고, 패스학점(P)으로 처리함
		○ 졸업시까지 신학과 7학기, 그 외 학과는 6학기를 의무적으로 이수함 (6학기 채플의무참석, 1학기는 교목실에서 지정한 대체 채플 신청가능)
	채플	○ 매학기 전체예배의 70% 이상 참석시 P(합격)처리되며, F(불합격) 시 장학혜택에서 제외되고, 6학기 (신학과는 7학기) 미이수자는 졸업 보류됨
		○ 예배불참자는 합당한 시유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유고결석계 를 교무처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본인의 병무사항,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학교의 인정사유 등)
		○ 경건훈련을 위해 최소 년 1회 개최
신앙	신 앙 수련회	○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참석은 의무이고 불참시 해당학기의 예 배성적이 F로 처리
교육		○ 신앙수련회경비는 수혜자부담으로 학기 납입금에 포함징수
	선교사업	○ 비전트립: 방학중 단기선교를 위한 프로그램
		○ 청소년캠프 : KCU학생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역 교회 및 학교 학 생들의 영성 인성 교육 개발 프로그램
		○ 농어촌 지역 선교 봉사활동 : 방학 중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학과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필수과목임
	목회실습	○ 6학기동안 진행되며, 학점은 P와 F로 구분됨
		○ 미취득시 장학금 미혜택과 졸업보류

휴 학

1. 개요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 (학칙 제23조)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학칙시행세칙 제29조)

2. 휴학기간

- ①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 통산 3회까지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할 시는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 ②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일 경우나 군복무중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진단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신청방법

- ① 일반휴학은 개강 후 5주 이내에 휴학원서에 보호자의 확인 도장을 받아 담당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무과 에 제출 후 총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 ② 군 입대휴학은 휴학원서에 보호자의 확인 도장을 받아 입영통지서를 첨부 하여 담당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고,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 무과에 제출 후 총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 ③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복무확인서 미제출 시 휴학기간만료로 제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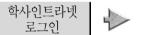
복 학

1. 개요

휴학기간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초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 청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군입대휴학자의 전역일이 개강일로부터 1 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학칙 제30조)

2. 신청방법

매학기 등록기간 전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복학신청을 완료한 후 교무처장 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복학신청



교무과승인

재입학

1. 개요

휴학기간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는 당해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매학기 등록기간 전 재입학지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해당 학과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이 허락되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자의 재학 당시 취 득학점은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전부(과)

1. 개요

전부(과)는 제1학년 이상을 수료한 자에게 학업의 성취도와 적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본 대학 재학생 중 1년이상 수료한 학생이 전부(과)를 원할 시는 수강신청 2주전부터 1주일간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전부(과) 신청을 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1년 이상 수료한 학생이 전부(과)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전출학부(과) 입학정원의 20%, 전입학부(과) 입학정원의 40% 범위 안에서 총장은 전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예능계열로의 전부(과)는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간호학부(과)로의 전부(과)는 허락하지 않는다.

3. 유의사항

- ①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논문(시험,자격증) 또는 졸업연주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수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신청 기간에 전입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1. 개요

복수전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타 전공의 학문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고, 재학 중 둘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본 대학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복수저공을 워할 시는 수강 신청 2주전부터 1주일간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복수전공신청을 하고, 총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간호학부(과)로의 복수전공은 허락하지 않는다.
- ③ 음악학부(음악콘텐츠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3. 유의사항

- ① 복수전공이수는 복수전공을 신청한 전공의 기본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음악학부(음악콘텐츠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 공실기 4학기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며, 전공실기 이수 동안에는 음악학부 (음악콘텐츠학과) 등록금을 납부한다.
- ② 복수전공이수자는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시험, 자격증) 또는 졸업연주, 어 학인증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복수전공을 취소한 후 같은 학과로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 ④ 기타 복수전공에 관한 주요사항은 "복수전공시행세칙"을 참고한다.

학사인트라넷



복수전공신청



부전공

1. 개요

부전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여러 전공의 학문을 연구하여 한 학위로서 복합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본 대학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은 본 대학에 설치된 전공 중 간호학부(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에 대하여 수강신청 2주전부터 1주일간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 다.
- ② 음악학부(음악콘텐츠학과)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 오디션을 거쳐야 한다.

3. 유의사항

- ① 부전공이수는 부전공을 신청한 전공의 전공과목 중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음악학부(음악콘텐츠학과)에서 부전 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실기 4학기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며, 전 공실기 이수 동안에는 음악학부 등록금을 납부한다.
- ② 부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시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기타과목으로 인정한다.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부전공 신청



심사 후 총장 허가

졸업 및 졸업인증

1. 개요

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하여 학칙 제47조 1항 각호에서 규정한 대로 학부별 교과과정에 따른 130학점 이수와 경건훈련(예배, 목회실습 등), 졸업논문 및 졸업인증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은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자격증 취득, 졸업연주 등에 합격하는 것을 말하고, 졸업인증은 어학능력인증 혹은 영어회화능력인증을 말한다.(졸업인증제 지침 참고) 복수 전공신청자는 각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졸업논문 등의 졸업요건을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어학능력인증
 - ·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불어 중에서 공인 외국어능력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자를 인증 하는 것으로 제3학년 수료 이전까지 제출 시점에서 유효기간 이내에 어학 능력인증신청서에 획득한 성적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 · 제3학년 2학기까지 어학능력인증을 받지 못한 자는 학교가 개설하는 영 어특강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논문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제출자에게 학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판정한다.

- ③ 졸업연주 음악학부 학생은 졸업학기에 졸업연주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④ 졸업시험, 자격증취득 등 졸업논문 대체
 ·졸업시험: 졸업시험 합격 기준은 학과별 기준에 따른다.
 ·자격증: 졸업논문을 대체하기 위한 자격증 종류는 학과별 졸업인증규정에 따른다.

3. 유의사항

- ① 졸업논문신청자와 졸업연주, 졸업시험, 졸업작품발표, 자격증취득 신청자도 당해학기 수강신청 시 "졸업논문(연주)"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수학연한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수료로 인정한다.
- ③ 위 2항에 따라 수료자로서 졸업을 위해 졸업논문(연주)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 수업료의 1/17의 수강료를 납입해야 한다.



졸업이수학점

1.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 ① 졸업예정자는 아래의 전공별 졸업이수학점표를 참고하여 졸업학점 이수를 확인 하여야 한다. 기본전공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자격과정 중 1개 이상의 전공(과 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않으면 심화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전체성적을 열람하고 졸업에 필요한 교양필수(특화, 토대), 교양선택(핵심),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을 확인한 후(특히 예배, 목회실습, 졸업논문 또는 Pass과목) 수강신청을 하여 졸업심사에 누락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 ③ 복수전공자는 당초 입학 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학점 이수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④ 예배는 졸업 시까지 신학과 7학기, 그 외 학과는 6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대체 채플은 1)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소견서 제출, 2)취업으로 인하여 학교 를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 소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교목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 전공별 졸업이수학점표 ▶

	무성		교양			전 공				족업	
소속		^{폐배} 목회 실습	필	수	선택	합계	기본	·전공	심화	합계*	졸업 이수
			특화	토대	핵심	집계 [필수	선택	전공	[업계*]	학점
신학과	7회	6회	3	8	27	38	18	21	21	60	130
G2빅데이터경영학과	6회		5	8	25	38	12	27	21	60	130
사회복지학과	6회		5	8	25	38	0	39	21	60	130
상담심리학과	6회		5	8	25	38	0	45	30	75	130
음악콘텐츠학과	6회		5	8	25	38	16	23	21	60	130
간호학과	6회		5	8	12	25	99	6	-	105	130
식품영양학과	6회		5	8	25	38	9	44	20	73	130

*심화전공은 소속학과 전공필수 괴목을 이수하고 학과별 지정학점(표 합계 참조) 이상 이수 *복수전공은 소속학과 기본전공을 이수하고 타전공의 기본전공을 추가로 이수(음악콘텐츠 학과는 전공필수 4학기 이상 이수학점을 포함한 전공39학점 이수)

*부전공은 소속학과 기본전공을 이수하고 타전공의 기본전공 팔수과목 포함 21학점 이수 *보육교사 자격과정은 소속학과 기본전공을 이수하고 보육교사 교육과정 과목으로 51학점 이수 필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사자격과정 교육과정(p.31) 참고

조기졸업

1. 개요

조기졸업은 추가학점 이수 등을 통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조기졸업신청

-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칙 시행세칙 제35조의 졸업조건(130학점 취득, 평균평점 4.20/4.5 이상 등)을 갖추고, 최종학기 수강과목확인 및 변경기간 중에「조기졸업신청서」를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기졸업을 위한 초과학점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가 해당학기 수강신청 가능 최대학점에서 3학점까지 추가 이수 가능하며,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졸업 신청서작성



본인도장 날 인



교무과제출 (성적증명서)

편입생학점인정

1. 개요

편입생 중에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괴목 중에서 편입전공의 교괴과정과 동일한 괴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타 괴목을 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전적대학 교과목과 본 대학의 교과목이 동일한 과목 중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 목에 대하여 기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편입인정학점 내에 포함한다.

> 편입생학점 인정서작성



학 부 장 지도확인



교무과제출

				키 고		조어		
학부	예배	목회	목회 전 공			졸업 이수	비고	
7 1	البال	실습	필수	선택	계	학점	71 -12	
신학과	3회	2회	18	22	39	65		
G2빅데이터 경영학과	2회		12	27	39	65	교양토대	
사회복지학과	2회		0	39	39	65	[기독교의이해]	
상담심리학과	2회		0	45	45	65	또는 [성서의이해]	
음악콘텐츠학과	2회		8	31	39	65] [8시피어에] 필수 이수	
간호학과	2회		92	3	95	97		
식품영양학과	2회		9	30	39	65		

※ 간호학과 4학년 편입생(전문학사 편입생)은 31학점이상 이수하야 함(예배)학기, 기독교 의 이해 또는 성서의 이해 중 택, 간호학과 4학년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 와 선택 포함)

재 수 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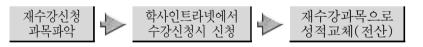
과락 또는 C+ 이하의 학점을 재수강하여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급 이하일 경우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사인트 라넷으로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1회에 한하나,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유의사항

- ① 재수강은 매 학기 최대신청학점에 포함되며, 학기당 6학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수강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 ③ 재수강시 성적은 A까지 취득할 수 있다.
- ④ 낙제(F)과목이 필수과목이면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유고결석

1. 개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 한 5일이내
- ② 병사관계(신체검사등)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 요되는 일 수
- ③ 정부기관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인정한 때
- ④ 본인의 질병사고난 상해로 입한 입원했을 때의 소요일수
- ⑤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하여 교무처장의 사전 심사 및 허가된 기간 동안
- ⑥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및 의심자로 자가 격리 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평 상시-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제출, 국가위기 상황-계산 서나 영수증으로 대체가능), 감염병 밀접 접촉자로서 공공 지자체의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학생이 이를 증빙하는 경우
- ⑦ 기타 총장이 허락할 때
- ⑧ 위 1항 내지 7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고결석계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1. 대상

아래 표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 조건

아래의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급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③항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야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 3.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다음의 기본6과목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 ①사회복지학개론, ②인간행동과 사회환경, ③지역사회복지론,
 - ④사회복지실천론 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중 택 1.
 - ⑤사회복지 정책분야 교과목 중 택1. ⑥사회복지 실천분야 교과목 중 택1

◀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

구분	과 목	학점	구분		과	목		학점
· P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3	27 과목中▲ 7 과목▼ 선택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 복지론 학교사회 복지론 정신건강론	프로그 및 평7 사회복	장론 제론 사론 강 지론 지지도 대분석론 램개발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인권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3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27과목 중)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교과목이수체계 안내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1	사회복지현장실습2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과목 안내 ▶

과 목	비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1. 대상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본 대학교에서 아래 표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 조건

아래 각 영역별 이수과목(17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은 필수로 6주 이상 2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영 역 교 3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교사인성	필수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교사론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동작,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9과목(27학점)
기술	선택	특수아동 이해, 부모교육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건강론, 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6주)	2과목(6학점)
전 체 17과목(51학점)이상			

- 3. 보육실습 예정자는 실습기관을 섭외하여야 하며, 실습기관이 없는 학생은 담당교수가 일괄 배정한다.
- 4. 보육교사 자격증은 졸업학점 취득 후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에 개인이 신청한다.





학생생활

학생지원, 장학, 상담업무안 장학금의 종류 안내 도서관 이용안내 전산실습실 안내 국제교류 안내 종합인력개발센터 안내 원격수업지원센터 안내 한생상담센터 안내 인권상담실 안내 교육성과관리센터 안내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안내 성폭력 상담실 안내 사회봉사센터 안내 KCU리더십센터 안내 남북통합지원센터 안내 창업지원센터 안내 생활관 안내

학생지원, 장학, 상담업무 안내

	항목	내 용
	주무부서	○ 학생처 (2600-2461-3) : 본관 1층
추 업무	학생지원	○ 학생증 발급 - 우리은행과 협약 하에 카드겸용의 학생증을 발급 - 학기시작 바로 전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 의무실 사용(학생처로 문의) 몸이 아픈 학생들을 위한 비상약 및 기본 의료용품 비치 - 주간 09:00~17:00 : 학생처로 문의 1. 장소: 본관1층 2. 운영시간: 09:00~17:00
		○ 학생병사안내(학생처로 문의) 입영연기 - 대학: 24세 - 대학원(4학기제): 26세 (5,6학기): 27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도 - 전문요원: 석사이상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종사자로 국가기술자격 또는 해기사면허소지자 병무행정 HOME 서비스 - 문의: 1588-9090(병무청) - 인터넷 서비스: www.mma.go.kr
	상담	○ 학생상담시스템 활용안내 한 학기에 두 번씩 지도교수와 반드시 학생의 상당라다음의 절차 를 따라 상담진행이 가능 ① CRESTAR포털시스템(https://portal.kcu.ac.kr/)에 접속 ②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위드는 환원마당과 동일) ③ 통합상담 메뉴의 상당신청(지도교수상당신청)에서 상당교수를 확 인하고 상담 내용 등을 입력하고 신청클릭 ④ 신청내용을 나의상담내역에서 확인 ⑤ 이후에 신청한 일정에 따라 교수와 상담진행

	항목	내 용
	장학	 ○ 장학규정 - 신청기간 및 장소: 매 학기 시작 후 및 학기말고사 2주일 전 공지사항에 공고 후 14일간 접수 / 학사인트라넷 신청(추가서류학생처 제출) - 장학금 수혜자격: 등록횟수 8학기이내인 자로 다음사항을 구비한경우 수혜자격 부여. 다만 외부 기탁장학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름1. 소정기일 내에 장학금 신청신청 및 추가서류를 제출한자2. 재학중 근신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3. 이전학기 평균성적이 2.0이상인 자4. 예배 및 목회실습이 P학점인 자5. 신청학점 및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이중지급금지: 학기별 1인당 장학금 지급총액은 등록금액을초과할수 없음. 단, 섬김장학금, 봉사장학금, 자기계발장학금, 국외교환학생장학금, CREST형인재장학금, 디딤돌장학금은 예외로할수 있음. - 지급중지 및 흰불: 해당학기에 휴학, 자퇴, 학칙에 의하여 각종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증지 또는 환수조치 ○ 장학금 종류, 대상, 지급액(표 3-1, 3-2 참조)
추진 업무	융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http://www.kosaf.go.kr) ① 대출중류: 취업후상환대출제(든든학자금),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제 ② 자격조건: 직전학기12학점 이상 이수(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함) 졸업학기와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도 가능 취업후상환대출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1.88) 이상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 ③ 대출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대출신청 및 증빙 서류제출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 내, 온라인 대출실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http://www.kosaf.go.kr) ① 장학종류: 국가장학금 I,Ⅱ유형,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푸른등대, 사랑드림, 국가근로장학금 등 ② 자격조건: 한국장학재단 각 장학종류별 자격요건 참조

장학금의 종류 안내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대상자	지급액
	정시모집 전체수석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체 최초 수석 합격자	등록금 전액
신(편)	정시 모집수석	정시모집 합격자 중 각 학부(과) 최초 수석 합격자	수업료 전액
입생 입학 우수	수시모집 전체수석	수시모집 합격자 중 전체 최초 수석 합격자	등록금 전액
	수시 모집수석	수시모집 합격자 중 각 학부(과) 최초 수석 합격자	수업료 전액
	편입생	편입 입학자 중 입학성적순	일정액
	학과수석	전체 재학생	수업료 전액
성적 우수	학년수석	전체 재학생	일정액
	일반성적	전체 재학생	일정액
CREST	`형인재장학금	전체 재학생	일정액
봉	사장학금	총학생회, 각 학부학생회와 각종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있는 자	일정액
섬김장학	학 교내근로	섬김장학금 신청자	일정액
금	홍보누리	홍보누리 신청자	일정액
보	훈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금전액
교직원장학금		교직원본인, 자녀, 배우자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교역자장학금		교역자 본인, 자녀, 배우자	등록금전액 (입학금제외)
총장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된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일정액
가족장학금		본교 재학중인 형제, 자매, 부부, 부자 학생	1인당 일정액

장학금명		대상자	지급액
		재학 중 5급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합격자	등록금전액
국가고시합격자장학금		재학 중 7급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합격자	등록금전액
		재학 중 9급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합격자	일정액
	장애인장 학금	장애우 본인	일정액
장애인 장학금	장애인부 모장학금	장애 부모를 둔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일정액
	장애인학 생도우미 장학금	장애인 학생의 학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	일정액
공로정	· 당학금	국가사회,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일정액
복지정	상학금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일정액
외국인유학	학생장학금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	일정액
나눔 >	장학금	전체 재학생	일정액
북한이탈주	^수 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등록금전액
성적향상	상장학금	직전학기 학시경고자 중 당해학기 학시경고를 벗어난 경우	일정액
국외교환학	각생장학금	국외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해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자	일정액
외국어능력최우수지장학금		외국어능력 인증제에 의해 최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자	일정액
SSNI	장학금	특성화 교과목을 이수하고 특성화사업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	일정액
KCU리더십장학금		리더십 교과목을 이수하고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자	일정액
자기계발장학금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추천받은 자	일정액
디딤돌장학금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 이 어려운 자에게 학업수행을 위한 생활비무상 보조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 1 차 면담을 대체하며, 가계곤란에 관한 서류입증)	일정액
특별장학금		가계곤란자 등 대상자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시적으로 지급	일정액

장학금명	대상자	지급액
장학금기금이자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된 자로서 가정형 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일정액
스포츠홍보장학금	축구단장과 축구감독이 추천한 축구단원(5인)	일정액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자중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장학금액 결정	차등지급
새도미장학금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재학생 도우미에게 활동 일지에 근거하여 지급	일정액
언론센터 장학금	언론센터(학보사, 방송국)에서 봉사하는 자	일정액

[※]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대상자는 반드시 매학기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장학금

장학금명	대상자	지급액
설립자장학금		일정액
교수협의회장학금		일정액
직원협의회장학금	 -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타의 모범이	일정액
해외동문장학금	성식이 누구하고 생활병원이 어려우며 타의 도립이 되는 자	일정액
일본해외동문장학금		일정액
대학교회장학금		일정액
동문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자긍심을 가지고 대내외적 활동을 통해 모교를 알리는데 공헌한 자	일정액
일산교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그리스도의교회 출석인자로 일산교회 추천을 우선으로 한다	일정액
부산중앙교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중인 신학부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할 뜻을 가진 자	일정액
아주교회장학금	사건지 O스타크 개최철편지 시코 O 기최표 최개	일정액
팔일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신학부 학생 그리스도의교회 출석자 우선 선발	일정액
목회자기도동지회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그리스도의 교회 출석자	
제자사랑장학금	각 학부별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된 학생	일정액
서대문선한사마리이인장 학금 (좋은동문장학금)	서대문그리스도의교회에서 지정한 자	일정액
비전장학금	신학부 학생	일정액
문명식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부천교회장학금	그리스도의교회 출석자	일정액
본솔장학금	음악학부 학생으로서 본솔장학재단에서 선발된 학생	등록금 전액
용산교회장학금	교회장학금 용산교회에서 지정한 자	
권진숙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학부 학생	일정액
운초장학금	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등록학생	일정액
혁신지원사업장학금	매학년도 매학기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중 사업 주관 부서가 추천한 학생(초과학기 제외)	일정액

[※]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대상자는 반드시 매학기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시설안내

1. 도서관 시설

위치	자료실	소장자료	
	사무실	대출·반납 및 이용안내, 도서 정리	
	국외자료실	국외 단행본·참고도서, 그리스도의 교회자료	
도서관	기증자료실	기증된 국내외 자료	
1층	참고자료실	국내 참고도서	
	정기간행물실	국내외 연속간행물, 학술지, 신문	
	보존서고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일반자료실 I	100~600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순수과학, 기술과학)	
	일반자료실 Ⅱ	700 (예술, 악보)	
	일반자료실 Ⅲ	800~900 (문학, 역사)	
도서관 2층	지정도서· 신간도서·만화	교과목 교재, 신간도서, 만화	
	이동서고	000 (총류) 석·박사 학위논문, 특성화자료(북한, 다문화관련)	
	전자정보실	비도서자료, 국회도서관 학위논문검색 및 출력 인터넷검색, 영화·음악 감상	
성서관 지하	보존서고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위치	시설명	비고	
본관B10호	도서관 제1열람실		
본관209호	도서관 제2열람실	개인별 집중학습 및 자기 주도형 학습공간	
생활관 1층	일반열람실		
본관 2~4층 로비	LIB Lounge 1~3	소그룹 세미나, 토론, 스터디 등의 협업 활동 및 휴식 할 수 있는 열린 학습 공간	
성서관 1층	북카페		

이용안내

1. 열람 및 대출시간

구분 이용시간		비고
일반열람실	월요일 - 토요일 06:00-24:00	시험기간 1주전부터 시험기간 24시간 개방
자료열람실	월요일 - 금요일 09:00-19:00	방학중 이용시간 변경

^{*}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시간을 변경 또는 휴관할 수 있다.

2. 대출 책수 및 기간

구 분	대 출 권 수	대 출 기 간
학부생, 교육원생	5권 이내	1 주 일
대 학 원 생	10 권 이 내	2 주 일
교 수	30 권 이 내	6 개 월
직원, 조교, 겸임·외래교수	10 권 이 내	1 개 월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10 권 이 내	2 주 일
휴학생, 졸업생	5권 이내	2 주 일
지역주민, 기타	3 권 이 내	2 주 일

^{*} 휴학생, 졸업생, 지역주민은 자료대출신청서와 소정의 가입비 및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아내

<대출>

-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시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대출상황을 확인하다.
- 대출 가능한 자료이면 직접 해당 서가에서 찾아 학생증과 함께 대출데스 크의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 참고도서(R), 지정도서, 악보(S), 비도서(AV), 연속간행물(P) 및 신문 등의 경우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
- 연체도서가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 온라인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후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반납>

-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하고자 하는 도서를 대출데스크의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 반납시 처리사항을 대출데스크의 모니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 이용자의 학적 및 신분변동 등의 경우 대출한 도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기가 연장>

-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예정일 이전에 도서관을 방문하여 연장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대출연 장을 한다.
- 연장은 1책당 1회만 가능하며, 반납예정일로부터 대출기간만큼 적용된다.
- 연체도서가 있거나 혹은 기타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연장하려는 자료가 예약도서일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대출연장은 자료 대출 후 3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연체도서>

- 대출기간이 경과된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 1책 1일당 100원의 연체료 지불 하여야 한다.
-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서의 반납시까지 다른 자료의 대출이 중지된다.

이용아내

<예약도서>

-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예약하여 자료 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
- 1인당 5책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순위는 5순위까지만 허용된다.
- 예약된 자료는 예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 예약 자료는 MY Library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 예약된 도서가 반납되면 대출데스크에서 3일간 보관하게 되며, E-mail 또는 SMS로 예약도서 도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 예약된 자료의 대출 처리기간은 예약자료 도착통보일로부터 3일간이다. 3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며 다음의 자료 예약에 제하을 받는다.
- 연체도서가 있으면 예약할 수 없다.

<분실도서>

- 자료를 대출하여 이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변상 하여야 한다.
 - 1. 파손자료는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 2. 분실자료는 동일한 자료나 상위 판차의 자료로 변상하는 것을 워칙으로 한다.
 - 3. 동일한 자료나 상위 판차의 자료로 변상하지 못할 경우
 - · 발행년도를 기준하여 5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1.2배
 - · 5년~10년 미만인 자료는 정가의 1.5배, 10년 이상인 자료는 정가의 2배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 4. 원부상 가격을 알 수 없는 도서의 경우는 면당 100원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 5. 자료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정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희망도서>

-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의 구입신청 서비스로 단행본과 멀티 미디어 자료에 한한다.
- 희망도서는 신청자 우선 대출된다.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Library에서 희망자료신청 및 신청자료 에 대한 진행과정확인과 취소가 가능하다.
- 희망도서의 대출 처리기간은 도착통보일로부터 3일간이다. 3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출대기가 취소된다.

이용아내

-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
- 소장자료검색을 통하여 도서관 소장여부를 먼저 확인 후 신청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세한 서지사항(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가격) 파악
- *구입이 제한되는 경우
- 이미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연속간행물(잡지류), 학위논문등을 신청한 경우
- 기타, 적절치 않은 도서(개인수험서, 외설물 등)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도서의 서지정보(서명, 저자, 출판사 등)가 부정확한 경우
- 절판도서
- 신청자1인 제한권수(한 학기에 20권)를 초과한 경우

<지정도서>

- 강의에 필요한 도서를 강의 진행에 따라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서로서, 일반도서와 분리하여 대출을 제한하며, 지정 도서서가에 비치하여 복사 및 도서관 내에서 열람 할 수 있다.
- 개설교과목의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교과과정에 필요한 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준수사항>

- 도서관에 출입 시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하거나 모바일 바코드를 생성한 후 출입게이트에 인식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도서관내에서는 정숙해야 한다.
- 도서관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도서 대출시 학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학생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자료가 본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는 열람의뢰서를 발급받아 타도서관 및 연구기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도서관 이용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재조치를 받는다.
- 도서관 건물 실내/외벽 등의 게시물 부착을 금지한다.
- 자료, 비품, 시설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毁損)하지 않는다

자료검색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자료 검색을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kcu.ac.kr)를 접속해 야한다. 검색을 통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 요시 출력 또는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자료검색>

검색어 및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제시된 항목을 체크한 다음 <검색>을 클 릭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통합검색 할 수 있고 단행 본, 연속간행물, 기사, 비도서를 각각 검색할 수 있다.

<검색 결과 확인>

검색한 후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명을 클릭하면 상세정보가 보 여진다.

<청구기호>

도서관 모든 자료의 하단에는 청구기호를 기입한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자료의 서가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기호로 도서관 자료 는 이 청구기호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별치기호 (참고도서: R/연속간행물: P/악보: S/비도서: AV) / 학위논문 : T. D)

203 → 분류기호 (DDC듀이십진분류표로 특정한 주제분야를 나타내는 기호)

한64기➡ 저자기호 (저자명과 도서명을 조합하여 만든 기호)

v.1 → 권차기호 (Volume)

c.2 ⇒ 복본기호 (Copv)

My Library

<개인정보관리>

도서관 홈페이지(My Library)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반납예정일, 연기, 희망도서 도착, 예약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ID: 학번, PW: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공지사항>

개인공지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예약희망도서 도착, 반납예정일, 연체도 서 독촉 등의 내용이 개인별로 통보된다.

<MY Collection>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정보를 바구니에 저장하고 본인이 정하는 항목별로 폴더를 만들어 관리가 가능한 개인의 지식정보관리 메뉴이다.

<희망도서 신청·조회>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미소장일 경우 홈페이지 My Library를 이용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수서계획에 반영된다. 희망도서 신청시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등 서지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1학기 1인당 20권 신청 가능)

<대출연장>

도서관에 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1권당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도서상태가 '연체', '예약중' 일 경우 연장할 수 없다. 본인 의 대출한 도서를 조회 한 후 연장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예약관리>

대출된 도서 중 빨리 보기를 원할 경우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개인공지 및 문자통보가 되며, 예약자 우선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과서비스

<온라인 도서관 이용 교육>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제작된 플래쉬 애니메이션 형태의 이용 안내로서 도서관 시설 안내, 전자정보검색, 전자저널, Web-DB, 학위논문 의 원문정보 이용, 대출연장, 예약,희망도서신청, 도서의 대출,반납, 상호대 차서비스, 학술DB 통합검색 및 도서관 정보활용교육(도서관을 활용한 리포 트 작성법)등의 이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문헌복사/상호대차>

우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이용을 워할 경우 해당 자 료 소장기관으로 원문을 복사 신청하는 서비스로 협력 대학 도서관이나 문 헌정보 기관을 통해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논문, 학술지 등을 제공한다. 도 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kr).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http://www.ndsl.kr)에 회원가입 후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타대학열람의뢰서>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대학도서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타대 학도서관 열람의뢰서'를 출력하여 해당 도서관에 학생증(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서에게 물어보기>

학술적인 질의로 사서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준다.

<SMS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 Mv Librarv의 개인정보 사항에 본인의 메일주소와 휴대 폰번호를 입력하면 반납예정일, 예약. 희망도서 도착 등 필요한 정보가 문자 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된다.

<도서요약서비스>

세계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및 국내 미출간 해외 베스트셀러, 국내 도서 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하고, 원하는 도서요약을 MP3 파일로 다운로드 및 전송 할 수 있다.

전자정보

전자저널

DB명	내용
Koreanatud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국내학회지 원문검색 시스템으로 1,200여 학회 및 연구소의 1,500여개 학술지와 약 90만 편 논문의 원문을 제공.
<i>DBPia</i>	국내의 우수 학회, 출판사 및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1,430여종의 학술 지와 120만 편의 논문을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원문형태로 구축한 국 내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콜라 SCHOLAR 학자사·교보문고	경제·경영, 공학, 사회·자연과학, 어문학, 의약학, 인문학, 예술체육, 법학 분야의 688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1,086종의 학술 논문, 간행물 제공.
DE GRUYTER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	독일의 아카데믹 출판사 De Gruyter에서 제공하는 인문, 사회 과학 분야 전자 저널 종(커버리지 1995년~현재, 엠바고 없음) / 경영, 경제, 언어학, 법학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emerald insight Discover Journals, Books & Case Studies Emerald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Collection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 컴퓨팅 및 기술 관련 주요 저널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결합시킨 필수 컬렉션. 2018년에 런칭한 ECT 컬렉션은 아카데믹 엔지니어링 및 컴퓨팅 부서/학과의 니즈와 연구 성과물로 구축된 콘텐츠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컬렉션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엔지니어링, 컴퓨팅 및 기술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
emerald insight Discover Journals, Books & Case Studies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	- 경영 분야에서 강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분야를 확대-보완하도록 설계된 주제별 전문가 컬렉션. - Accounting, Finance & Economics / Education / Health & Social Care / Library Studies을 묶어 제공함으로써 회계/금융 및 교육학, 보건사회복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
OXFORD	- 1478년 설립, 51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대학 출판부 "Oxford University Press"의 Journals Collection. - 제공 종수: 341종 - 주제분야: 전 주제 분야 - 제공기간: 1996년 ~ 2018년 발행된 모든 Content - 자료형태: Academic Online Journals / 초록, 원문

Wiley Online Library	 1,383종 전자저널을 (엠바고 2년), 24시간 RISS를 통한 인증으로 제공. 1600여종 저널과 함께 22,000 Online Books, Online Reference Works, Current Protocol, The Cochrane Library 등 다양한 전자 자원을 제공.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의학, 수학, 통계, 경영/경제, 교육, 인문사회, 심리학, 컴퓨터학 등 전 주제 분야 포괄.
BENTHAM SCIENCE	- STM 출판사로 학술 연구원 및 산업 전문가에게 다양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 - 현재 100종 이상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으며, 주요 분야는 제약 연구 및 개발, 의학, 공학 및 기술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저널을 제공. 또한 전 세계에서 특허권을 Review 하는 출판사는 Bentham Science 출판사가 유일 하며, 현재 10종 이상의 저널을 제공.
BRILL	인문사회과학, 국제법 및 생물학 등 분야의 저널 329종의 원문 및 초록 제공.
JSTOR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	전 세계 57개국 이상의 1,200여 출판사와 협력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및 과학분야에서 2,600여 종 이상의 학술저널을 제공.
ANNUAL REVIEWS	자연과학, 생물의학, 물리학, 사회과학, 그리고 경제학 등 전 분야에 대한 51종의 리뷰 저널 제공.
DE GRUYTER De Gruyter e-Journal STM Collection	독일의 아카데믹 출판사 De Gruyter에서 제공하는 과학 기술 의학 분야 전자 저널 266종(커버리지 2000년~현재, 엠바고 없음) / 수학, 화학, 생명과학, 공학, 의학, 물리학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
JSTOR JSTOR Arts & Sciences VI+XII Collection	- Arts & Sciences VI Collection :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요 경제 저널, 국제 관계를 강조하는 핵심적인 정치학 저널, 50년 전 창간된 8개의 타이틀로 이루어진 주요 교육학 저널 등을 제공 - Arts & Sciences XII Collection :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심리학, 아시아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주제분야를 다루며 법학, 정치학 및 교육학 분야에 특화된 컬렉션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a Wolters Kluwer business	세계적인 의학 전문 출판사 Lippincott Williams & Willkins(LWW)의 핵심저널 34종에 대해 창간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아카이브 제공

Е-ВООК

DB명	내용
BOOKCUBE"	- (주)북큐브네트웍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 분야의 eBook 이용가능. - 대출권수 5권. 대출기간 7일, 연장 1회(7일) 가능.
moou8]IU Sandony	- OPMS에서 제공하는 E-book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 ID로 Log-in후 사회과학, 인문, 소설, 경제비즈니스, IT, 자기계발, 외국어, 교육등 전 장르 약 1천여종의 eBook을 이용가능 대출권수 5권, 대출기간 7일, 연장 1회 가능 모바일 이용시 어플명 "웅진OPMS도서관" 전용 어플 설치, 단 모바일이용전 PC이용 OPMS전자책 플랫폼 로그인 1회 접속 인증 필요.
eBooks of the Colo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OCLC netLibrary eBook은 국가 전소시엄에 의해 지원되는 서비스로 netLibrary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도서 중 국내 대학에서 엄선한 각 주제별 전공도서 및 참고도서 (Reference) 7.584종과 netLibrary 무료 제공 도서 3.405여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문서비스를 제공
GVRL 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 Gale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다양한 학술 자료 중에서 가장 오 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 되고 이용되고 있는 전 주제 분야의 참고서적 e-Book. - 전 분야 GVRL 4,900종 이상 약 6,500볼륨 이상을 제공.
IG LIBRARY	- iG Publishing 해외 전자책. 신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eBook 851권 제공. - Columbia University Pr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ing 등 14개 출판사의 eBook Collection.
O'REILLY"	만 여권의 전자책 IT, Saftware, Computing 서적, 7,000여 종의 비디오, 자기 학습 및 자기평가 프로그램 제공(텍스트 교재와 동영상 제공), 코딩에 대한 실습위주의 튜토리얼, 다양한 멀티 미디어 수업 지정도서 및 텍스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
ProQuest Ebook Central™	- 연구, 수업, 학습을 위한 참고도서 870권 이상을 제공 Encyclopedias, Atlases, Handbooks, Manuals, Dictionaries, Guid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학습,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Wiley, Brill, Encyclopedia Britann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NYU Press, Springer 으로부터 출판된 참고도서 컬렉션.

학위논문

DB명	내용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서지데이터와 원문정보를 제공 받고 있고 제1전 자정보실에 국회도서관 자료 검색 전용PC 및 프런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각 학술지의 기재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고, 기사색인 서비스를 강 화하여 보다 높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DB로는 석박사 학위논문, 단 행본, 국내외 학술잡지 기사, 세미나 자료, 고서, 비도서 자료, 정부간행 물 등을 포함
C /Collection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위논문을 생산과 동시에 유통하는 지식정보디지털 유통 시스템(dColletion)"으로 국내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생성되는 학술연구정보를 연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원문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본교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와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제공

DD H	, N O
DB명	내용
CNC 학술정보	- 어학, 문학, 지리, 문화, 예술, 역사, 지질, 식물, 기술, 과학, 의학, 농업, 산림, 예체능, 전통예술, 악기 등 전 주제분야에 관한 전공서와 필수교제를 수록한 학술원문DB - 수록분야: 국어학, 문학, 지리, 문화, 예술, 역사, 지질, 식물, 기술, 과학, 농업, 산림, 문화예술, 예체능, 악기, 요리 등 전 주제분야 - 테블릿, 모바일 서비스 가능
воокир	국내 및 국외의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서비스로 오디오 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며 MP3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KOREAN DAYABASE 한국의 지식콘텐츠	1995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에서 출판한 미국 사회복지계의 분야별 거장들이 저술한 논문을 집대성한 사전으로 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등 사회복지 전 영역의 266편의 주제항목을 수록.
ACADEMIC VIDEO ONLINE: PREMIUM ALEXANDER STREET	Academic Video Online: Premium (AVON)은 경제경영, 교육, 식품, 상담, 심리, 종교, 사회, 음악, 간호, 언어 등 학술용으로 선별된 5만 편 이상의 전 주제 분야의 비디오 스트리밍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제공. 뉴스릴, 수상경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현장 녹화화면, 공연실황, 인터뷰, 강의, 트레이닝 비디오 등을 포함하여 독점으로 제공되는 자료화면으로 구성.
Education Source	세계 최고의 교육학 정보원으로서 1880년 이후부터의 깊이 있고 광범위한 색인을 바탕으로 2,000여 종의 저널 원문을 제공.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그리고 음악, 체육, 언어, 물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관련 분야 저널을 포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530여종 단행본, 2,500여 건의 회의록, 보고서 등 1,000여종의 추가 비저널 컨텐츠 원문을 수록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정보 서비스를 지원.
Music and Dance Online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콘텐츠 및 학술저널과 잡지를 제공하는 토탈 음악 패키지. 학술용으로 엄선된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예술/체육(음악) 분야의 패키지로 15.454,500곡 이상의 음원, 44,380 편 이상의 레퍼런스 및 문서, 646종의 정기간행물, 3,706편의 비디오 자료를 제공.
NAXOS MUSIC LIBRARY	클래식, 뮤지컬,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제공 30,900여장의 CD와 438,000여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매달 약 500여장의 CD 업데이트
PAO EERS Collection Periodicula Archive Orline	인문/예술/사회과학 분야에서 선호도가 높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저널에 대해 초판 (Volume 1, Issue 1) 부터의 원문을 제공하는 아카이브저널 데이터베이스.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연구에 도움이 되는 타이틀을 엄선하여 국내 학술연구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DB로서, 현재 770종의 타이틀이 제공

ProQuest Central	175개 이상의 학술주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학술 연구, 교수, 학습의 참고자료를 포괄하여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활용이 가능한 학술자료와 실용자료 제공하며, Springer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merald, Karger, Sage 등 주요 출판 사를 포함한 주요 학술콘텐츠 제공. 경영/경제, 심리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언어학, 군사학, 정치/국제관 계, 종교 외 주제별 서비스 지원
NAHS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물론 관련 연구자들에게 AANA Journal,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Practical Nursing 등 약 1,420여 종 이상의 간호학, 보건학 분야 원문(Full-Text)저널 자료와 해외 학위논문, 간호학거리큘럼에 맞춘 브라우징 툴을 함께 제공함.
VOGUE (DAGE NOR RESIDEN	미국판 Vogue의 창간호(1892년)부터 최신까지, 매월 새로운 이슈를 업데이트 하여 제공함. 원본 그대로(Cover to Cover) 고해상도 풀 컬 러이미지를 통해 19세기와 20세기의 디자이너, 사진가, 일러스트레이 터, 대중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Eighteenth Century Collections	18세기 원문자료로 전세계에서 출판된 영어자료,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된 비영어 자료 138,000 이상의 Title(155,000 Volumes), 3천 6백만 Page에 대한 원문 제공
Britannica Online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27권 전문 및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한글판을 모두 지원하며 100,000개가 넘는 항목, 10,000장 이상의 사진·일러스트·지도등 33,000개 이상의 관련 사이트등의 정보 제공
OED Oxford English Dictionary The softwine record of the English language	언어로써 영어의 진화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영어 대사전. 60만 이상의 단어의 의 미, 및 300만 이상의 인용문 수록. 천년 이상 소급하여 세 계 각지 영어의 사용례를 포함.
ProQuest Historical Periodicals	인문 사회 분야의 1, 2차 문헌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연속간행 물로 구성된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1681년-2015년 까지의 학술 저널, 전문 분야 저널(Trade Magazine), 일반 매거진 등을 제공.
Ehe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imes in Education	뉴욕타임스사가 학생 및 교수들을 위해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이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이 필요한 케이스 스터디, 학습 질문 등의 강의 자료를 제공하며 16개의 주제 분야로 구성
Web of Science	과학 및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Proceedings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는 전문 데이터베이스로 1950년부터 시작된 저널 색인의 노하우로 Proceedings 선정 수록된 Proceedings Paper 및 Meeting Abstract 등에 대해 Web of Science 핵심 컬렉션과 동일한 구성과 형태의 서지 정보를 제공

전산실습실 안내

1. 실습실 PC 현황

장소	대수	月亚
멀티미디어실	41 대	
제1실습실	57 대	
제2실습실	32 대	프린터 출력가능
모든 강의실	23 대	

2. 이용안내

구분	내 용	
주무부서	○ 정보지원센터 (2600-2437) : 창의관 3층	
이용규칙	○ 개방시간안내(09시 ~ 21시) - 단, 수업외의 시간임. 특히 제1전산실은 수업외의 시간에만 개방(방학중엔 개방하지 않음)	
	○ 컴퓨터문제 발생시 A/S신고대장에 적거나, 섬김장학생에게 문의바람. 또한 섬김장학생 부재시, 제2전산실습실(202호)의 전화로 연락(내선:437)	
	○ 전산실은 학생의 컴퓨터 학습 공간이므로, 임의적인 프로그램 삭제나 입력을 불허함 (데이터저장방법: USB, 웹드라이브, 메일 등) 모든 전산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개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책임	
	○ 인쇄비 장당 40원 (학생 본인의 실수로 나온 파지도 지불해야 함).	

국제교류 안내

1. 조직과 업무

구분	내 용	
주무부서	대외협력팀 (문의전화: 02-2600-2220)	
제반업무	 해외진학 진로 상담에 관한 업무 해외프로그램 설명회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국내·해외 대학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 국내·해외 산학 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관리 제반 업무 	

2. 글로벌 프로그램 안내

구분	내 용
신청시기	4월, 10월 (게시판 공지)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 자매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본교 학점으로 인정 ○ 자매대학교 학비는 전액 감면 또는 학생 부담(학교별 상이) ○ 지원자격 - 2학기이상 수료(취득)한 재학생 및 휴학생 - 재학기간중 총 평균평점이 2.7 이상인 자 -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어학조건을 갖춘자(해당대학) -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 중국, 필리핀, 미국 등 자매대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어학연수 실시 ○ 연수비의 일부 금액 지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 해외 협약 산학 기관에서 인턴십 실시 ○ 인턴십 비용 일부 금액 지원
복수학위제	○ 2년간 본교에서 2년간 해외 자매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양교 학위 취득

해외 자매결연대학

구분	국명	대 학 명	체결내용
		Oklahoma Christi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Harding University	학술
		Lubbock Christian University	학술
		Freed-Hardem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U.S.A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0.0.11	South Carolina University	학술
		Ohio Valley University	학술
		Harding University Graduate	학술
		School of Religion Nations University	학술
	Canada	Canada Christian College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Callada	Jilin Normal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국외		Technology	학술+학점교류
	a	Shandong University of	원사 : 원기 그 그
	China	Technology	학술+학점교류
		Nanjing Normal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Nanjing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복수학위
		Shenyang Normal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Japan	Ibaraki Christian University	학술+학점교류
	Indonesia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학술
	Mongolia	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	학술+학점교류
		Communication Technology	, , , , , , , , , , , , , , , , , , , ,
	필리핀	CEBU Doctor's University	학술+어학연수
		Berjaya University College of	학술+인턴십
	말레이시아	Hospitality Malaysia	72 22 1
		University of Malaya	학술+학점교류

종합인력개발센터 안내

1. 조직과 업무

구분	내용
조직	조직 : 센터장, 팀장, 직원 문의 : 02-2600-2467
업무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3STEP 체계도에 따라 6대 역량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진로 및 취업 상담에 관한 업무 -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졸업생 취업지원 및 취업률 관리 업무 - 입사지원서 및 면접 코칭 등 취업실전 지원 - 취업통계조사 및 대학정보공시 관리 업무 - 취업 교과목 지원 업무 - 취업 교과목 지원 업무 - 취업관련 대외협력 업무 -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2. 3STEP(Career Build Up) 체계도에 따른 프로그램

3STEP	프로그램	내용
	1대1 Build Up 코칭 및 검사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상담을 진행함 STRONG직업흥미검사, MBTI성격검사, Extended DISC 등 검사 실시 및 해석을 통하여 올비른 자기이해를 토대로 적합한 진로직업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함
Career	C.B.U. 페스티벌	자기이해 및 전공분석, 직업정보 탐색 등 필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업, 취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Planning	커리어디자인 페스티벌	커라어로드맵 작성을 통해 꿈을 구체화 하고,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할수 있게 함
	KCU Career Star	대외활동,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 참여 후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여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음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업 계획서 작성법	 연구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대학원 진학 준비 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함
	현직자 직무특강	현직자 특강을 통하여 해당 직무 및 직무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직무준비가 가능하도록 교육함
Job	직무특화 자격증	 전공별 필수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항상시키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Compe tency	OA 실무능력교육	- OA 실무능력교육을 통하여 비즈니스에서 활용도가 높은 OA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
	공무원 취업전략	 공무원 이슈작렬 및 채용호름을 파악하여 공무원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음

	NCS 고득점 전략	- NCS 기반 채용변화를 이해하고 NCS 영역별로 유형을 분석하여 NCS 고득점 전략을 세울 수 있음
	NCS 실전	- NCS 모의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기초능력 준비도를 객관적으로 점 검하고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음
	유통전문가 MD 전문교육지원	- 체계적인 MD 전문교육을 지원해줌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MD 분 야로의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함
	전문인재반	- 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취업준비생을 지원함
	입사지원서 페스티벌	 자신의 강점 역량 및 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입시지원서를 완성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함
	면접 페스티벌	- 면접특강, 모의면접, 심층 컨설팅 등을 통하여 면접역량을 강화함
	취업역량강화캠 프	 입사지원서 작성과 효과적인 면접전략 및 모의면접 등 구직 전반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 강화함
	캡플러스 (CAP+)	 이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준비를 가능하게 함
	비즈니스매너	- 전화업무, 응대업무, 이메일 업무 등 기본 비즈니스매너에 대해 교육함
Job	채용사이트 활용법과 잡서치	 구직정보 탐색능력을 향상시켜 구직역량을 구비함
Prepar ation	입사지원서 사진완성	 사진전문가 섭외 및 무료 의상 대여, 수정메이크업 등을 통해 완성도 있는 입사지원 사진을 준비함
	퍼스널브랜딩과 이미지메이킹	- 개인의 가치, 이미지, 태도 변화를 통해 자신을 브랜드화 하도록 함
	입사지원 실전	 분야별로 세분화된 입시지원서 작성교육을 제공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피드백을 제공함
	중견기업 취업전략	- 중간 업에 대한 올비른 정보제공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함
	기초노동법 특강	- 예비 단기간 근로자 및 직장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기를 받을 수 있게 함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교내 유치를 통해 참여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안정 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교수학습지원센터 안내

1. 조직과 업무

구분	내용
조직	센터장, 연구원, 직원
위치	교수학습지원센터: SG혁신관 문의전화 : (02)2600-2235~7, (02)2600-2247
문의전화: (02)2600-2235~7, (02)2600-2247 교수학습지원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및 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 - 교수역량강화: 교수법 특강 및 연수, 수업컨설팅 - 학습역랑강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대학 생활로 학습지원프로그램 진행	

2.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내용
교수 역량 강화	개별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강화 지원	교수법 워크숍	효과적인 수업전략을 소개하고 수업의 질적 개선 및 향 상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수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 램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 및 운영	창의융합 교수법 개발을 위한 교수법 개발 연구지원 프 로그램
		The Best Teaching-S kill Awards	우수 혁신 교수법 사례를 발굴하고 교수자의 강의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수자	수업 컨설팅	강의촬영 및 수업 컨설팅을 통해 강의를 점검하고 개선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역량강화 지원	교수법 연수	교수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외부 연수 지원 프로그램
	, _	강의자가진단	교수자의 수업성찰 및 개선을 위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내용
	기초학습 역량강화 지원	기초학습역량 향상글쓰기 Writing Up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이후 관리 차원에서 전문가의 첨삭을 통하여 자기 글쓰기 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 램
		CTL 공모전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자기표현 능력향상과 학교생활 및 학습법 노하우,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 그램
		학습전략 및 학습유형 검사	역량포털시스템을 통해 자기조절학습검사 및 학습유형검 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학습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 램
		자기주도학습법 워크숍 'Grow Up'	자기관리(노트필기, 시간관리, 동기부여) 특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맞춤형 학습지원	학습소수자 그룹코칭 Learning Up	학습소수자(복학생, 복수 전공생, 학사 경고생 등)의 학과 별 튜터가 함께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전공 교과목을 수 강하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학습역량 제고 및 대학생 활의 적응력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학습 역량		학습소수자를 위한 Learning tips	학습소수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자기효능감 향상 등을 위한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
강화		학습컨설팅 Re-Start Learning Clinic	학습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습유형 분석 후, 1:1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학습유형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습관과 학습유형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학습 공동체 지원	학업성취도 향상 Jump Up	스터디 그룹 및 튜터링을 구성하여 능동적인 학습문화 형성을 위한 학습공동체로 동일 학습목표(전공과목, 자격증등)를 향한 공동 학업의 학문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래기술 학습역량 강화 지원	동영상 제작기법교육을 통한 나를 표현하기	IT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편집 워크숍 프로그램
	우수 학습법 성과 발표회	Excellence Sharing Day	대학 소속감, 효능감을 고취 시키는 대표적인 학습성과 공유 페스티벌로서 대학 공동체 형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1학기 교내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2학기에 성과중심
	학습역량 진단도구 개발	학습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의 공모전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운영 학생들의 학습역량진단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연구

원격수업지원센터 안내

1. 조직과 업무

구분	내용
조직	센터장, 직원
위치	원격수업지원센터 : SG혁신관 문의 전화 : (02)2600-2238
업무	원격수업지원센터는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함 - 원격수업지원센터 운영 및 기획 - 원격수업 (교내·외 원격수업, 공개강좌 등)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 -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 그 외의 원격수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사업명	내용
학습자 중심 교수법	다양한 강의방법 및 교육 콘텐츠 생산을 위한 학습도구 지원
개발을 위한 매체 지원	스마트 매체지원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ZOOM, ScreenCast-O-Matic 사용방법 등)
e-러닝 콘텐츠 개발/운영	우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지원
원격강좌 개발 및 LMS 운영 매뉴얼 개발	교직원/학생 대상 LMS 사용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학습관리 시스템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및 개선

교육성과관리센터 안내

1. 교육성과관리센터 조직 및 담당 업무

구분	내용
센터 설립 목적 (2018.12.1. 설립)	본 센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구현하고, 교육의 성과분석과 개선안 도출을 통한 품질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센터 위치	SG혁신관
조직	센터장, 연구원, 직원 (문의전화 : 2600-2246)
담당 업무	 통합적 교육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진단, 분석 결과에 기초한 교육 환류에 관한 업무 교육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환류에 관한 업무 교육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대학의 교육 성과 관련 연구 사업

연구사업	업무내용
조사분석	교육수요자 만족도 및 요구조사,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요구조사, 비교과기관 고객 만족도 및 요구조사 시행 및 분석
교육 성과 개선 전략 수립	-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방안 전략 수립 - 교과(교양·전공)/비교과 만족도 결과 활용 및 개선안 도출
교육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추진	교육 성과 증진과 구성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환류체계 개발및 추진교과목 인증 및 교육과정 인증
대학 정책 연구	고등교육 변화추세, 교육혁신 정책, 교육인증제 연구
교육과정 연구 및 성과 관리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연구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안내

1.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조직 및 담당 업무

구분	내용
센터 설립 목적 (2020.09.1. 설립)	본 센터는 본교 CREST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 과프로그램의 통합관리 및 성과 분석, 비교과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개선 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센터 위치	SG혁신관
조직	센터장, 담당직원 (문의전화 : 02-2600-2246)
담당 업무	 비교과 프로그램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관리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업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 비교과 프로그램 진단 및 개발 업무 CRESTA 역량포털시스템 관리 업무

2. 비교과 통합관리 관련 업무

구분	업무내용
비교과 정책 및 종합 계획 수립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종합 계획 수립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비교과통합관리 실무위원 회의 운영
비교과 통합 관리	- 비교과 프로그램의 종합적 질 관리 및 홍보
비교과프로그램 개선 및 환류	- 비교과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지원	CRESTA 역량포털시스템 통합관리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SGP 장학금 지급

학생상담센터 안내

1. 조직과 업무

구분		내용
 소 7	7}	재학생들이 보다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심리상담기관
조 ?	직	센터장 1인, 전문상담사 2인, 객원상담사 1인
이용시간	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위 🦻	₹]	· 진리관 1층 학생상담센터 · 문의전화 : 2600-2297, 8
업 :	뉴	· 진로상담지원 -진로상담 및 진로검사 -진로집단프로그램(집단진로검사 및 집단상담) -진로특강 및 워크숍 -학년별 진로코칭
		· 심리상담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집단프로그램(집단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심리특강 및 워크숍 -학습소수자 심리지원 및 위기개입

2. 학생상담센터 진로 · 심리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개인 상담	· 전문상담사와 1:1 만남을 통해 성격, 가정, 대인관계, 학업 등의 일상의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심 리 지 원	심리 검사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 · MMPI—2다면적인성검사, TCI기질 및 성격검사, K—IIP대인관계문제검사, MLST학습전략검사, MBTI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K—WAIS, 그림검 사, SCT문장완성검사 등 지원
_	집단 상담	· 주제별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자기성장 집단상담 자신의 잠재력을 알고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강 및	수용과 개방을 통해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 스트레스 대처 집단상담 불안과 긴장이 높아 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 힘들 때 스트레스대처능력을 증진하도록 도움 - 자존감 향상 집단상담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게 만족되지 않을 때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움 -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대학생활의 적응이 어렵고 선후배와 동기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 자기 및 타인이해를 통한 공감능력형성의 도움 · 대학생활 적응력 증진을 돕기 위한 심리건강 증진 교육훈련 진행 · 정신건강특강, 건전음주교육, 연애코칭특강, 의사소통증진특강, 자존감향상
	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 운영
	심리 지원	· 지도교수 상담연계 · 학습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홍보	· 재학생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상담센터 이용인내 및 홍보활동 · 알리미 서포터즈 활동, 자기사랑캠페인, Cheer up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
	진로 상담	· 진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기술의 증진과 일의 의미 등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하여 진로선택에 도움
	심리 검사	·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선택 및 진로의사결정의 도움 · STRONG 진로탐색검사, 직업흥미검사, CTI진로사고검사 등
진 로 지 원	집단 상담	 대학생 발단단계에 따른 학년별 진로집단상담 지원 1학년 대상 진로정체성집단상담 2, 3학년 대상 진로로드맵집단상담 4학년 대상 진로준비동기강화집단상담
	특강 및 워 <u>크</u> 숍	·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의 체계적 교육 - KC진로멘토단 - KC진로코칭 - KC진로선배멘토링 - 진로 특강 및 워크숍
인권상담실 운영		 · 기본권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상담실 운영 · 인권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제공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실시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인권상담실 안내

1. 상담실 운영

구분	내용
주무부서	학생상담센터
운영목적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를 지항하기 위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 · 성폭력 피해상담 제공 안전한 캠퍼스 구축을 위해 인권의식 및 성인지감수성 함앙을 위한법정 의무교육 실시
이용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위 치	진리관 1층 인권상담실
상담 및 신고	- 전 화: (02) 02-2600-2297~8 - E-mail: kcucc2016@kcu.ac.kr

2. 상담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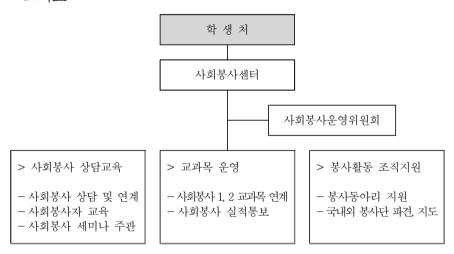
유형	내 용	비고
인권침해 및 고충상담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침해 등의 고충상담과 이에 관련된 고민 상담	상시
피해접수 및 사건처리지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접수 및 피해 사건 처리 협조	상시
법정의무교육 실시	인권 관련 교육 실시 ·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실시 ·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 폭력·가정폭력) 실시 · 자살예방교육 실시 · 미디어중독예방교육 실시	학기별 진행

사회봉사센터 안내

■ 설립목적

케이씨대학교는 2000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교양필수 화 함으로써 인간화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열린 대학으로 서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전개에 편승하여 본교에서는 보다 나은 사회봉사의 적극적인 전개를 위해 2001년부터 사회봉사 전담기구인 사회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조직표



■ 사회봉사과목소개

교과목	· 사회봉사 1, 2
과목구분 및 이수학점	· 사회봉사 1 : 교양필수, 1학점 · 사회봉사 2 : 교양선택, 1학점
대상학생	 사회봉사 1 주대상 : 1학년 사회봉사 2 주대상 : 2~4학년 학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시수	· 소양교육(2시간) 및 강의(중간, 기말 2시간), 총 4시간 · 사회봉사활동 최소 30시간 이상
개설	· 사회봉사 1 : 매학기 · 사회봉사 2 : 매학기
교과목 이수 절차	1. 수강신청 2. 사회봉사 기관 선정 (사회봉사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사회봉사 인증기관에서 선택) * 사회봉사 인정기관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인증관리센터 VMS, 1365자원봉사포털의 봉사활동처 - 안전행정부 산하 각 시,군,구 의 자원봉사센터 - 우리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와 협약이 체결된 공공기관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 3. 사회봉사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회봉사 협의 및 신청 4. 사회봉사기관 확정 후, 수업시에 담당교수에게 "사회봉사활동계획서" 제출 5. 소양교육 및 강의수강(1~2주차, 중간 및 기말고사 기간) 6. 사회봉사활동 진행 7. 사회봉사활동 완료 후, "사회봉사활동 완료 후, "사회봉사활동 완료 후, "사회봉사활동 완료 후, "사회봉사활동 환료 후,

- 사회봉사센터의 업무내용
- 1) 사회봉사프로그램 개발
 - 국내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지원연계사업
 - 국제 자원봉사지원 및 연계사업
 -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지원 연계 사업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대학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 연계 사업(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교내 자체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사업 개발 및 진행
- 2) 사회봉사활동 기관의 선정 및 협의
- 3) 사회봉사활동의 지도 및 교육
 -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회봉사활동동아리 지도 및 후원
 -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성실에 대한 불편사항이 들어온 학생의 경우 담당교 수님과의 면담 연결 후 기관과 학생의 입장 조정
- 4)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관의 관리
 -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사회봉사 학생들의 봉사태도 확인 및 불편사항 접수
- 5) 사회봉사활동지원
- 6) 해외자원봉사 지원
 - 한국대학생봉사단, 태평양아시아협회(동계/하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 회 등 해외봉사활동참가비의 대학 부담금 지원
- 7)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 지워
 -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강서구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쌀 배부 및 식사 대접
- 8) 학생자원봉사대회
 - 사회봉사활동 우수자들을 선발하여, 학생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및 사회봉
 사활동 발표자료집 발간
- 9) 자원봉사연계
 - 기관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의뢰가 들어온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사회봉사센터안내

전화: 02-2600-2461~3 / 팩스: 02-2600-2464 / E-mail: hakseang@kcu.ac.kr

KCU리더십센터 안내

1. 조직과 업무

	내용
조직	센터장, 직원
위치	본관 1층, 문의전화 : 2600-2266
업무	- 리더십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 - 리더십 특강 개최 - 리더십 관련 연구

2. KCU리더십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교과목 개발 및 운영	1학기 - 내 안의 리더 찾기 2학기 - 리더의 세상 보기
리더십 특강	매학기 유명인사 초청 강연
리더십 UCC제작 공모전	매학기 리더십 UCC제작 공모전 개최
리더십 관련 연구	리더십 관련 논문 및 저서 발표
리더십 장학생	매 년 리더십 프로그램 우수 장학생 선발

남북통합지원센터 안내

1. 조직과 업무

조직	센터장, 직원
위치	본관 1층
7//	문의전화 : 02-2600-2201(FAX : 02-2600-2202)

2. 남북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선택:3,필수 :실습)	교양과목: 통일과 평화, 북한사회개발과 시민사회 전공과목: 통일과 사회복지, 이주난민과 사회복지, 북한개발과 NGOs, 국제사회복지론, 남북통합실습
'통일사회복지사' 이수증 수여	남북통합 실습과 교과목(3개) 이수한 학생들에게 '통일사회복지사'이수증 수여 (총장명의)
통일봉사단 활동	관련 기관들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통일준비 및 북한 이탈주민 적응지원(하나센터, 북한 인도적 지원 및 개발 단체, 북한인권 단체 등)
월례회	전문가 초청 특강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시행	NGOs, 하나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통일부) 등과의 협력 및 공동 프로그램 시행
남북통합 장학금 지급	해당 과목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매 학기 남북통합 장학 금 지급
개발도상국 방문	연변,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NGOs와 정부 기관 방문

창업지원센터 안내

1. 창업지원센터 위치 및 담당 업무

	내용	비고
센터 위치	KC대학교 창의관 1층 105호	문의전화 : 2600-2243
담당 업무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공간지원 등) 창업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제반업무 대학생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실무 중심의 창업특강 실시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대학생 창업지원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현장!!!

2.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업무내용	일시
창업 특강	창업 관련 컨설팅, 특강 및 자격증 취득 준비에 관한 특강 진행	학기 중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체계화 지원	학기 중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 및 실행 지원	방학 중
전통시장창업경진 대회	관내 전통시장과 연계한 모의 청년 창업 프로그램	방학 중
창업 정보 지원	창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제도 실시간 제공	수시
창업 동이리 활동	창업 동이리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 상호간의 피드백과 정보 공유를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창업 실현을 지원	수시

3. 지원 자격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누구나 지원 가능
- 창업을 통한 경력개발에 관심있는 재학생

생활관 안내

1. 시설안내

위치	구분	인원 수	기타
지하 1층	체력 단련실, 학생 모임터		
 1층	열람실 및 나눔터		
2층	여자동 생활관	48명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3층	남자동 생활관, 사감실	48명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 여-3인실: 16개, 남-3인실: 16개

2. 목적

본 생활관은 케이씨대학교의 교육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동생활을 통한 학생들의 면학을 돕고 영성훈련과 자치활동의 함앙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소 및 자격

- ①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 말, 소정의 입소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 ② 생활관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입사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선발기준

- ① 지정된 기일 내에 입소원서를 제출한 자.
- ② 그리스도의 교회 농어촌 도시 영세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③ 장애자는 특별 선발한다.
- ④ 통학거리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지원 우선순위와 거리에 의해 선발한다.

⑤ 입소 선발기준은 학교정책상 예외를 둘 수 있다. 단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5. 자격제한

- ① 학칙에 의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생활관 퇴소 처분을 받은 자.
- ③ 등록미필자.
- ④ 전 학기 제 납입금 체납자.
- ⑤ 전 학기 생활관 회칙 위반 평점이 30점 이상자

6. 제 납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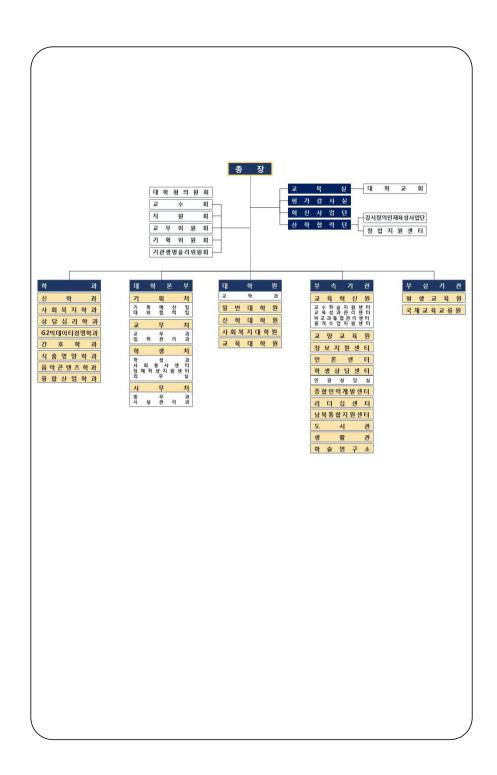
- ① 입소 대상자는 입소 전 입소비를 입금한다.
- ② 입소비는 무통장 입금을 한다. 단, 입금 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한다.

7. 관생수칙

- ① 입소일, 퇴소일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식사시간, 취침시간, 소등시간을 지켜야 한다.
- ③ 외출, 외박 시 사감 및 부사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④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 ⑤ 각종 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생활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투숙시키거나 무단 취식시킬 수 없다.
- ⑦ 음주, 흡연, 구타, 기합 등을 절대 금한다.
- ⑧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 ⑨ 각종 비품을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해야 한다.
- ⑩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대학본부

총장실

교목실

면기가기기

기획치

교무차

학생처

사무최

대한워교한괴

총장 김용재

주요업무

- * 주요 정책 추진 점검
- * 총장의 대내외 활동 보좌
- * 교내외 각종 현안 보고
- * 결재서류 심의
- * 의전

행정실

- * 본관 1층
- * 02-2600-2420 (FAX: 02-2600-2429)

종상실

교목실장 류장열

교목팀

주요업무

- * 교내 외 예배 및 종교행사 관할 업무
- * 학생 및 교직원 신앙지도와 신앙평가 업무
- * 제반 상담 업무
- * 학생 및 교직원의 교회생활 지도 업무
- * 신학과 학생 목회실습 지도 관리 업무
- * 재학생의 예배학점 관리 업무
- * 예배위원회의 운영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선교팀

주요업무

- * 대학교회의 운영 업무
- * 국내 선교 활동 및 교회 지원 업무
- * 해외 선교 활동 및 비전 트립 운영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426 (FAX: 02-2600-2424)

평가 감사실

평가감사실장 안영란

주요업무

* 평가업무

- 교내외 각종 인증평가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학교 평가지표 분석에 관한 업무
- 대학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교육부 구조개혁평가 지표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감사업무

- 연간 자체감사에 관한 업무
-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감사 업무
- 그 밖의 위 각호에 관련된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272 (FAX: 02-2600-2273)

기획처장 김강

주요업무

기획예산팀

* 전략기획업무

- 대학의 장, 단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협조에 관하 업무
- 연간 대학 운용계획 수립 및 공유에 관한 업무
- 대학특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 무
- 대학기구 및 직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업무
- 각 부서, 팀별 업무조정에 관한 업무
- 교원 보직이동, 발령 및 보직현황관리
- 대학(원) 편제 및 학생정원(대학원·학부·학과
 - 전공의 신설 및 폐지 포함) 조정에 관한 업무
- 제 규정(학칙포함)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요람 및 행정편람(업무메뉴얼)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업무
- 교육부시업(ACE, CK, LINK 등)관리에 관한 업무
- 교내외 정책연구 시행에 관한 업무
- 개교기념일 행사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업무
- 대외기관 요구자료 요청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법률검토 자문 및 소송에 관한 업무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예산업무

- 중장기 예산업무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연간 대학예산편성·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
- 팀·기관별 사업계획 예산 타당성 분석 및 조 정. 예산통제에 관한 업무
- 등록금 책정에 관한 업무
- 인건비(연봉) 책정에 관한 업무
-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기획처

- 기채승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예산관련 통계분석에 관한 업무
- 외부 회계감사관련 행정지원 총괄

* 비서업무

- 총장의 일상 업무 보좌 및 의전에 관한 업무
- 총장 주관회의 관련 업무
- 그 밖의 총장의 지시 및 업무보좌에 관한 업무

대외협력팀

* 홍보 업무 (추가)

- 대중매체 관련 대외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홍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정리에 관한 업무
- SNS 채널 운영 및 홍보 컨텐츠 기획 업무
- 언론홍보단 운영 관리 및 온라인, KC뉴스 등 홍보 채널 관리

* 국제교류협력 업무

- 해외대학과의 학술 교류 증진을 위한 협정체결과 교류 협력에 관련된 업무
- 교환학생 파견 및 유치에 관련된 업무
- 자매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등 해외 글로벌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무
- 교환교수 초청 및 국제 의전 업무

* 국내교류협력 업무

- 정부, 공공기관, 대학, 기업, 지역사회 등 국내 대외협력사업
- 국내 관련기관과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 체결, 관리
- 국내 관련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 위탁기관(어린이집 등) 관리 및 관련 업무

* 발전기금 업무

- 발전기금 모금 및 행사
- 동문관리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 * 본관 1층
- * 02-2600-2221 (FAX: 02-2600-2439)

교무처장 이오갑

교무과

주요업무

* 교무업무

- 교무처장 직인 관수 업무
- 학사운영, 계획, 조정 및 결정 업무
-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업무
-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
- 교직과정운영 및 학생 각종 자격증 관련 업무
- 학생 해외연수, 세미나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교원업무

- 교원인사기록카드 작성과 관리 및 교원 임면 보고 업무
- 교원인사 업무(임용, 정원, 상벌 등 포함)
- 교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
- 교원 휴·복직 및 해외연수, 여행, 출장, 퇴수회, 연구년에 관한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연구업무

- 교원 연구실적물 보존 및 연구활동지원 관리 업무
- 부설연구)란및연구시설의설치운영조정관리업무
- 국내・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수업업무

- 수강등록신청 및 수업의 진행 업무
- 시험 및 성적 관리 업무

교무처

- 강사의 위촉 관리 업무
- 교과과정의 설폐 및 강의의 개폐 업무
- 동, 하계 제 강좌 설폐 업무
- 교육 기자재 관리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학적업무

- 학적부 작성, 정리, 보관, 관리 업무
- 졸업(논문, 연주, 시험)에 관한 업무
- 졸업사정 및 학위 등록 발부 업무
-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전과, 휴학, 퇴학, 재적) 관리 업무
- 편입생 학적 인정 평가 업무
- 학부 입학생의 전공 배정 및 복수전공, 부전공 관리 업무
- 학적에 관한 제증명 발급 업무
- 학적 조회 및 회보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행정실

- * 본관 1층
- * 02-2600-2451 ~ 2454 (FAX: 02-2600-2459)

입학관리과

주요업무

- * 신입학 및 편입학 홍보 업무
- * 신입학 및 편입학 입시업무
- *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관리 업무
-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계획관리 업무
- * 신입생 및 편입생 등록관리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446 (FAX: 02-2600-2469)

학생처장 이현주

학생과

주요업무

* 학생지원업무

- 학생지도 계획 수립 업무
-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 동이리 활동지도 업무
- 학생회비 지출 관리 감독 및 행정지도 업무
- 학생지도위원회 운영 업무
- 학생 상벌에 관한 업무
- 학생간행물 발간지도 및 게시물 검열 관리 통제 업무
- 학생 각종 통계 업무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업무
- 학생의 교내 외 활동에 관한 업무
- 학생행사 동원 집회 및 특별활동지도 업무
- 학생병사 관련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장학복지업무

- 장학생 선정 및 장학위원회의 운영 업무
- 학생복지 및 보건후생에 관한 업무
- 각종 학생추천서 발급 업무
- 제증명 관련 업무
- 학자금 융자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상담업무

- 학사, 진로, 가정 등 학생개인상담 업무
- 교내·외 성폭력 상담 및 성희롱·성폭력운영 위원회 관련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학생상담센터로 이전)

행정실

- * 본관 1층
- * 02-2600-2462 (FAX: 02-2600-2464)

사회봉사센터

주요업무

- *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업무
- *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관의 선정 업무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의 접수 및 연결업무
- * 사회봉사활동의 지도 및 교육 업무
- * 사회봉사활동 참여기관의 관리 업무
- * 사회봉사활동 지원 업무
- *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462(FAX: 02-2600-2464)

사무처장 이상철

총무과

주요업무

* 총무업무

- 총장직인 및 이외 직인 관리
- 비밀문서관리 및 충무계획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리(정보지원센터와 협력)
- 문서 보존 및 폐기
- 대외문서 접수·발송에 따른 심사 및 통제
- 대학 공간 대여 및 승인
- 복지(임대)시설(식당, 카페, 편의점, 서점 등)의 운영
- 주차관리
- 업무용 차량관리
- 직장 민방위대 업무
- 기타서무(배지, 명함)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구매관재업무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비품 및 소모품 구매 등
-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시설공사 계약(공개 입찰 시)
- 복지(임대)시설(식당, 카페, 편의점, 서점 등)등의 용역계약
- 시설관리(경비, 환경미화, 주차) 등
- 소모품·비품·집기·기계·기구 등 용도확인 및 자산현황 조사관리
-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관리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사무처

* 재무회계업무

- 대학 재무회계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재무 운영현황 분석 및 통계관리
- 각종 회계 수입·지출·결산관리
- 학교 유가증권, 기금운용 리스크 관리 등의 재정·자금관리
- 각종 세무(부동산, 등기, 화재보험,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 등)관리
- 납입금 화급. 제 수수료 수납. 제반 현금 출납관리
- 제보수의 지급
- 수납(등록금 및 각종 수입금)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인사관리업무

- 직원(별정직, 계약직) 신규임용 및 승진·부서이동 발령
- 별정직, 계약직 재임용
- 행정조교 채용 및 재임용
- 직원 인사기록 관리·보관 등
- 직원(계약직, 조교 포함)에 관한 제 조회 및 회보, 증명발급
- 직원 보직발령
- 직원 등의 인사발령 통지
- 직원 근태 및 휴가 관리
- 직원의 국·내외 출장 승인 및 경비 지급 등
- 직원 근무성적평가 등
- 직원 교육·연수 및 훈련
- 직원 상벌, 휴직, 복직, 파견, 면직 등
-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 노사협의회 운영
- 교직원 후생복지(자녀학비 보조 등) 및 제 보험 등
-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4대 보험 등
- 직원 근속 및 퇴직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시설관리과

* 건설업무

-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장·단기 공사계획 수립)
- 캠퍼스 구내 기반시설(토목, 기계, 전기) 기획 및 구축
- 신·증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 신·증축공사 관련 각종 일반용역 발주 및 감독
- 신·증축공사 관련 각종 인·허가
- 신·증축공사 공사입찰(업체선정 제외) 및 계약
- 각종 공사의 시공감리 및 현장감독
- 신·증축공사 하자기간 내 하자처리
- 건축추진위원회 및 교내건축위원회 위원회 관련 업무
-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관리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시설업무

- 공간 배정(조정) 및 이전 지원
- 교내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관한 업무
- 대학 시설물의 유지관리
- 조경시설 유지·관리
- 시설현황 기록유지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전기 및 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 위생, 냉·난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 안전관리
- 폐기물 및 환경관리
-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 시설물관련 사용료 지출
- CCTV등 시설물 보안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관리업무



- 대학 경비 운영 및 환경미화
- 시설물안전진단 및 관리
- 행사 관련 각종 시설·설비 지원
- 학위복대여 및 관리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 총무과 본관 1층 02-2600-2474(FAX: 02-2698-8876)
- * 관리과 본관 지하 1층 02-2600-2484(FAX: 02-2600-2489)

대학원 교학과

대학원장 심상길

주요업무

* 교무업무

- 대학원장의 직인 관수 업무
- 학위 논문 관계 업무
- 대학원 논문집 편찬 발간 업무
- 각종 시험 관리 업무
- 집기 관리 및 사무실 관리 운영 업무
- 워내 보안 관리 업무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업무
- 원생 목회실습 및 신앙교육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수업업무

- 교과과정관리 업무
- 강좌 설치 및 운영 관리 업무
- 수강신청 및 변경에 따른 지도 사항
- 수업 진행 점검에 관한 사항
- 목회자연장 및 재교육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학적업무

- 학적 관리 업무
- 졸업사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업무
- 성적 관리 업무
- 학력 조회 관리 업무
- 제증명 관리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학생업무

- 학생 장학, 취업 관리 업무
- 대학원 원우회 관리
- 학생 상벌 및 학생 집회 등에 관한 생활지도 사항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입시업무

- 입학 전형 관리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3층
- * 02-2600-2441~2443 (FAX: 02-2600-2449)





부속기관 등

도서판 교양교육원
KCU교육혁신원
정보지원센터
KCU 학술연구소
생활관
언론센터
남북통합지원센터
KCU리더십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창업지원센터
총합인력개발센터

도서관장 송경애

주요업무

- * 수서 업무
 - 도서관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 구입자료의 선정 및 주문
 - 자료 등록 및 원부 관리
 - 자료의 수증 및 교환
 - 수집 자료 검수
 - 자료의 폐기
 - * 정리 업무
 - 자료 분류 및 정리규칙 결정
 - 자료 장비 업무
 - 자료의 서지 DB구축 및 관리
 - * 열람 업무
 - 도서 대출 및 반납 서비스
 - 미납도서 및 장기 연체도서 관리
 - 연체료 및 분실도서 정리비 정산
 - 도서관 이용자 교육 시행
 - 장서 점검 및 서가 정리
 - 자료배열 및 관리
 - 웹 상호대차(원문 복사 및 대출) 이용신청 및 제공, 이용요금 정산
 - * 전산 업무
 - 도서관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 도서관 전산시스템(S/W, H/W) 유지 및 관리

- 도서관 홈페이지 및 Web 서비스 관리
- 교내 간행물 및 학위논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dCollection)
- * 정기간행물 업무
- 정기간행물 구독 및 등록
- 정기간행물 정리 및 갱신
- 정기간행물 구독료 관리
- 학술지 제본
- 학술지 결호 및 미착호 클레임 관리
- 학술지 논문 기사색인 작성
- * 행정 업무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및 대학도서관 평가 업무
 - 각종 통계조사 작성 및 관리
 - 대내외 문서수발 및 관리
 - 한국도서관협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 * 최수열기념관(도서관) 1층
- * 02-2600-2491 (FAX: 02-2600-2494)

교양교육위

교양교육원장 백미현

주요업무

- * 교양교육과정 운영 전반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육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 총괄
- *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 역량개발 지향형 교양교육과정의 지속적 연구와 개발
- * 핵심역량 연구 및 그 구현을 위한 교육공학적 설계
 - 핵심역량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평가
- * 지역연합 교양교육 캠퍼스 연대시업 개발 및 운영
- 서울지역 교양교육 캠퍼스의 연합 컨텐츠 개발
- *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연구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교과 연계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 특화·교양토대/핵심/일반선택 교과 편성
- 인성함양을 위한 기초교양 교과의 연구 및 운영
- * 역량별 강화를 위한 교양핵심 교과의 개발 및 운영
- 지속적 역량연구에 기초한 교양핵심 교양교 과의 개발 및 운영

사무실

- * 본관 1층 교무처 내
- * 02-2600-2266 (FAX: 02-2600-2459)

KCU교육 혁신워

KCU교육혁신원장 강상희

주요업무

- * 교육 품질관리 및 환류
- * 교수·학습 지원
- * 교육과정 개선 지원
- * 교육혁신 관련 연구

- * SG혁신관 1층
- * 02-2600-2238

정보 지원 센터

정보지원센터장 신창섭

주요업무

- * 교내 행정업무 시스템 분석 및 설계와 프 로그램 작성에 관한 업무
- *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학술지원,정보과학개 발 및 교내 행정업무 등)
- * 타 대학 및 기업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 개발된 업무의 프로그램 문서화 및 유지,보수 와 자료처리에 관하 업무
- * 정보지원센터의 행정수행에 관한 업무
- * 전자계산기 조작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 * 전산관련 비품 및 일반 소모품 구입관리에 관한 업무
- * 학생실습 및 정보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 * 교직원의 정보통신 교육에 관한 업무
- * 정보, 통신망(Internet, LAN, Network)운영 에 관한 업무
- *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운영 에 관한 업무
- *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창의관 3층
- * 02-2600-2437(FAX: 02-2600-2438)

KCU학술 연구소

KCU학술연구소장 박영란

주요업무

- * 교내 학술연구 지원사업 업무
- * 교수논문집 간행사업 업무
- * 연구발표 및 세미나개최 업무
- *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 산학연 협동과제에 관한 연구협력 업무
- * 기타 본 연구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426 (FAX: 02-2600-2424)

생활관장 김해영

주요업무

- * 관생의 입, 퇴소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 생활관 건물 및 시설관리 업무
- * 생활관의 관생 선발 및 학기 중 입, 퇴소에 관 한 업무
- * 생활관 경리, 회계에 관한 업무
- *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2층(신학과 사무실)
- * 02-2600-2520

언론센터장 서재선

방송팀

주요업무

- * 방송국원의 임명 및 지도 감독 업무
- * 방송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내용 지도 업무
- * 방송제작 및 방송활동 업무
- * 학교 홈피 KCBS소식에 월 편성표 및 인터뷰, 이베트 업로드
- * 방송행사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행정실

- * 성서관 2층
- * 02-2600-2240

학보팀

주요업무

- * 학생기자의 임명 및 지도감독 업무
- * 소식지의 취재, 편집 및 기획
- * 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 * 학교 홈피 온라인 학교 소식에 업로드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성서관 2층
- * 02-2600-2241

출판팀

주요업무

- * 학교간행물의 출판 업무
- * 학술도서의 출판 업무
- * 기독교 교양교재의 출판 업무
- * 부속 및 부설기관 간행물의 출판대행 업무
- * 위의 각호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정리, 조사 및 연구 업무
-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성서관 2층
- * 02-2600-2596

남북통합 지원센터

남북통합지원센터장 박영희

주요업무

- * 교과목 개발 및 운영
- * 통일사회복지사 이수증 수여
- * 통일봉사단 활동
- * 월례회
- *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산학협력 프로그 램 시행
- * 남북통합 장학금
- * 개발도상국 방문

- * 본관 1층
- * 02-2600-2201 (FAX: 02-2600-2202)

KCU 리더십 센터

KCU리더십센터장 이지언

주요업무

- * 리더십 교과목 개발 및 운영
- * 리더십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리더십 관련 교재 개발 및 출판
- * 리더십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 * 산관학연 협력 사업 수행
- * 본 센터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266 (FAX: 02-2600-2459)

장애학생 지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현주

주요업무

- *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과 보조공학기 기 지원에 관한 업무
- *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 지원 신청 에 관한 업무
- *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 등의 상담에 관한 업무
- *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업무
- *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상담 및 지원 등에 관 한 업무
-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 교직원 및 보조인력의 장애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
- * 장애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 및 활동 진행에 관한 업무
- * 기타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 * 본관 1층(학생처 내)
- * 02-2600-2462(FAX: 02-2600-2464)

학생상담 센터

학생상담센터장 계은경

주요업무

- * 재학생 진로 ·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프로그 램 운영
- * 재학생 진로 · 심리지원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운영
- *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집단심리검사 운영
- * 재학생을 위한 교육 및 특강 운영
-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자살, 중독 등) 및 상담 홍보 활동
- * 재학생 진로 · 심리지원을 위한 관련 업무
- * 기타 상담 및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
- * 인권상담실 운영(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등 지원)
- * 재학생 및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운영
- * 법정의무교육 운영(자살예방 및 미디어중독 예방)

- * 진리관 1층
- * 02-2600-2297~8
- * kcucc2016@kcu.ac.kr

창업지원 센터

창업지원센터장 이득규

주요업무

- * 창업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 * 창업지도 및 상담에 관한 제반업무
- * 창업사업화 및 보육공간 지원
- * 창업특강 진행
- * 창업 유관기관 연계지원
- * 산학협력 제반업무
- * 지식재산 및 세무회계 교육
- * 기타 창업지원과 관련된 업무

- * 창의관 1층 105호
- * 02-2600-2243

종합인력 개발센터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마주리

주요업무

- * 진로 및 취업 상담에 관한 업무
- *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입사지원서 및 면접코칭 등 취업실전 지원
- * 졸업생 취업지원 및 취업률 관리 업무
- * 취업통계조사 및 대학정보공시 관리 업무
- * 취업 교과목 지원 업무
- * 취업관련 대외협력 업무
- *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 본관 1층
- * 02-2600-2204~206/2467
- * job@kcu.ac.kr





부설기관 등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국제교육교류원

평생교육원장 김태수

주요업무

* 교무

- 교육원장 직인 관수 업무
- 교육과정운영, 계획, 조정 및 결정 업무
- 교원 인사기록 관리 및 교원 임면 보고 업무
- 교육원 과정별 정원조정 업무
- 교육원 수강료 및 각종 납입금 책정 업무
- 교육원 예·결산 편성 및 예산 운용 조정 업무
- 교육워 기자재 및 물품 구입 관리 업무
- 학생지도계획 수립 업무
- 문서 및 우편물 수발, 분류, 통계, 보존, 폐 기 관리 업무
- 강사 위촉 관리 업무

* 학적

- 입학전형 및 학적변동 관리 업무
- 학적부 작성, 정리, 보관, 관리 업무
- 수료에 관한 사항 업무
- 학적에 관한 제증명 발급 업무

* 수업

- 동·하계 제 강좌 설폐 업무
- 교과과정의 설폐 및 강의의 개폐 업무
- 시험 및 성적 관리 업무
- 수강등록신청 및 수업의 진행 업무
- 강의 평가

* 홍보

- 교육원 홍보 기획 업무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리 업무

* 학생지원 및 복지

- 학생증 발급 업무
- 신입생 및 교육과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업무
- 학생행사 지워 및 관리 업무
- 수료생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 업무
- 장학생 선정 및 장학위원회의 운영 업무
- 학생복지 및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업무
- 각종 학생 추천서 발급 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창의관 1층
- * 02-2600-2501 / 2503 (FAX: 02-2600-2509)

산학 협력단

산학협력단장 김태수

주요업무

- 산학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업무
- 연구지원을 위한 기획 및 제도개발 업무
- 대외연구비 지원 및 관리(계약,입금,지급) 업무
- 간접연구경비 징수 및 관리 업무
-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운영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업무
- 협력단 산하 연구기관 운영 및 실적관리 업무
- 부설연구소 대외협력업무 추진사항 업무
-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제반 사항 업무
- 산학협력단 재무회계 업무
- 계약학과 유치 및 학사지원업무
-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 창의관 1층
- * 02-2600-2502 / 2504 (FAX: 02-2600-2509)

국제 교육 교류원

국제교육교류워장 박기천

주요업무

- 외국대학과의 외국인 유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
- 외국인 유학생 공동학위 및 교환학생 운영및 관리
- 외국인 유학생 인턴쉽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연구지원을 위한 기획 및 연 구소 설립 및 운영 업무
- 외국인 유학생 창업을 위한 학교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 글로벌 플렛폼 대학과 비즈니스 센터 설립 및운영에 관한 업무
- 한국어 교사와 외국어 교사연수 및 양성
- 국외 한국어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 운영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업무
- 비정규 교과과정의 외국어 특별강좌 개설 및 운영
- 국제교육교류원 경리 업무
-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

- * 본관 4층
- * 02-2600-2231





대 학 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일반대학위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신학의 기초학문 연구는 물론 신학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유능한 신학자의 배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은 신학과 글로벌 경영학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 과정은 신학의 기초학문 연구인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그리고 신학의 역사와 체계를 탐구하는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의 세부전공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전 파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화를 탐구하는 선교신학과 현대인의 영적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상담학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 과정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교육 패러다임에 맞추어 국제경영, 글로벌마케팅, 호텔·관광경영, 글로벌문화예술경영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신의 경영 지식과 능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수학점표

대학	원명	학 과	전 공	이수학 점	이수구분		비고
	박사과정	신학 (Ph.D)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45 학점	전공과목 선택과목 논 문 계	21학점 15학점 9학점 45학점	
		글로벌 경영학 (Ph.D)	국제경영 글로벌마케팅 호텔·관광 경영 글로벌문화예술경영	48 학점	전공과목 선택과목 논 문 계	24학점 15학점 9학점 48학점	
일반대학원		신학 (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30 학점	전공과목 선택과목 논문(2과목 선택) 계	12학점 12학점 6학점 30학점	
	석사과정	글로벌 경영학	국제경영	42 학점	전공과목 선택과목 논문(2과목 선택) 계	21학점 15학점 6학점 42학점	5학기
		(M.A.)	글로벌마케팅 호텔 • 관광경영 글로벌문화예술경영	33 학점	전공과목 선택과목 논문(2과목 선택) 계	15학점 12학점 6학점 33학점	

▶ 교과목이수안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Ph.D.)】

- 신청학점 : 한학기 3과목(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박사과정 공통과목 1과목, Ph.D/Th.M.과목 중 2과목 선택)
- 졸업학점 : 45학점 중 본인 전공과목을 21학점, 타 전공 중 2개 전공 이상에 서 1과목 이상 15학점, 논문 9학점을 선택하여 각각 취득하여야 한다.
- ※ Ph.D.과정에 입학한 자중에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의 신학부에서 다음과 같이 24학점(필수5과목, 선택3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 구약학총론, 신약학총론, 헬라어, 히브리어, 환원역사와신학 선택 - 실천신학, 조직신학 과목 중 각 1과목, 본인전공과목 중 1과목

【일반대학원 석사과정(Th.M.)】

- 신청학점: Th.M.과목 중에서 3과목(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졸업학점 : 30학점 중에서 본인의 전공과목을 12학점, 신학논문작성법 P(3)학점, 타 전공 중 2개 전공 이상에서 1과목 이상 12학점, 논문 6학점을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 Th.M.과정에 입학한 자중에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신학대학원 또는 대학의 신학부에서 다음과 같이 15학점(5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구약학총론, 신약학총론, 헬라어, 히브리어, 환원역사와신학

▶ 교육과정

일반대학원 박사/석사과정 구약신학전공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과 목 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구약신학세미나	3	Seminar on O.T. Theology
	구약원전강독	3	Reading on Hebrew Text
	시편연구세미나	3	Seminar on Psalms
	창세기연구	3	Study on Genesis
	오경 석의 묵시문학세미나 구약성경과 고대근동 구약신학 연구 시가서 연구		Exegesis on Pentateuch
			Seminar on Apocalyptic
전 공 과 목			O.T. & Ancient Near East
과 목			Study on Old Testament Theology
			Study on Poetry
	예언서 연구	3	Study on Old Testament Prophecy
	구약역사서연구	3	Study on History of Old Testament
	열왕기 상하 연구	3	The Book of Kings
	구약신학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지혜서연구	3	Study of the Literature Books

일반대학원 박사/석사과정 신약신학전공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_					
구분	과	목	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현대성서해석학세미나			3	Contemporary Biblical Hermeneutics
	공관복음서	레미나		3	Synoptic Gospels
	요한신학사	레미나		3	Seminar on The Gospel of John
	신약신학	레미나		3	Seminar on New Testament Theology
	바울신학	세미나		3	Seminar on Pauline Theology
	신약성서	해석학		3	New Testament Hermeneutics
	신약신학			3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예수의 비	유		3	The Parables of Jesus
	사도행전			3	The Acts of Apostles
전 공	누가복음시	레미나		3	Seminar on Gospel of Luck
과 목	히브리서역	연구		3	Study of The Hebrews
	로마서 세	미나		3	Seminar on Romans
	마태복음 세미나		3	Seminar on The Gospel of Matthew	
	요한계시	루세미나		3	Seminar on Revelation
	하나님 나	라와 종	말론	3	Kingdom of God and Eschatology
	옥중서신서	레미나		3	Seminar on Prison Epistles
	마가복음서	레미나		3	Seminar on Gospel of Mark
	고린도전서세미나		3	Seminar on Corinthians	
	바울의 성령론			3	Pauline Pneumatology
	바울의 기	독론		3	Pauline Christology
	신약학총	2		3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일반대학원 박사/석사 역사신학전공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과 목 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고대교부세미나	3	Seminar on Patristic Theology		
	환원문서연구	3	Seminar on Restoration Treatises		
	환원사상가연구	3	Seminar on Restoration Leadership		
	역사신학세미나	3	Seminar on Theology of the History		
	초기교회 역사와 사상	3	History and Thought of the Early Church		
	한국근대사와 기독교	3	Christianity and Modern History in Korea		
전	종교개혁사	3	History of the Reformation		
공 과	교회사세미나	3	Seminar on Church History		
목	환원신학세미나	3	Seminar in the Restoration Movement		
	중세교회사	3	Medieval Church History		
	환원운동사	3	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초대교회사	3	History of Early Church		
	한국교회사	3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와 사회	3	Korea Church and Social		
	아시아교회사	3	Asian Church History		

일반대학원 박사/석사과정 조직신학전공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과 목 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신학연구방법론	3	Methodology of Theological Study
	종말론 세미나	3	Seminar on Eschatology
	실존주의와 기독교	3	Existentialism & Christianity
	삼위일체론연구	3	Study on Trinity
	기독교변증학	3	Christian Apologetics
	조직신학 개론	3	Outline of Systematic Theology
전 공	신학연구방법론	3	Methodology of Theological Study
과 목	인간론 세미나	3	Seminar on Anthropology
	기독론 세미나	3	Seminar on Christology
	종교개혁과 신학	3	Theology of Reformation
	신학과 윤리 세미나	3	Seminar on Theology and Ethics
	기독교의 사회적 교훈	3	Christianity Society Moral
	성례전 연구	3	Study in Theology of Sacrement
	신학개론	3	Introduction to Theology

일반대학원 박사/석사과정 실천신학전공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선호커드는 인경될 구 있습.		
구분	과 목 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영적지도자론	3	Spiritual Leadership		
	교회성장연구세미나	3	Seminar on Church Growth Movement		
	목회상담의 이론과 실제	3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astoral Counseling		
	현대실천신학개론세미나	3	Seminar on Comtemporary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가정사역 세미나	3	Seminar on Family in Church		
	기독교교육학 세미나	3	Seminar on Christian Education		
	교회개척론	3	Church Planting		
	실천신학총론	3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목회신학 세미나	3	Seminar on Pastoral Theology		
	예배신학 세미나 강해설교 작성법		Seminar on Christian Worship		
			Expository Preaching Writing		
	목회와 영성	3	Spritural and Ministry		
	설교학세미나	3	Seminar on Preaching		
전	선교학 세미나	Seminar on Missiology			
공 과	디아코니아신학과 실천	3	Diakoniatheology and Praxis		
목	타 문화권 선교	3	Cross-Culturally Mission		
	세계전도	3	World Evangelism		
	사도행전과 선교	3	Acts and Mission		
	가정의 위기연구	3	Family in Crisis		
	개인상담	3	Personal Counseling		
	목회사례연구와 분석	3	Applied Research and Analysis in Ministry		
	선교역사	3	History of Missions		
	선교국제정책과 경영	3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선교조직개발론	3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ory		
	인간과 사회이해와 리더십	3	Understanding of Human & Society and Leadership		
	선교경영개발론	3	Introduction to Soci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교회조직문화론	3	Organizational Culture		
	선교전략경영론	3	Strategic Management		
	글로벌선교경영론	3	Global Management		

특수대학위



○ 신학대학원

▶ 교육목적

본 신학대학원은 신. 구약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 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성경 외에는 개인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며, 개 교회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 있는 어떠한 인위적인 문서(신조, 헌법, 장정 등) 도 갖지 않는다. 이 같은 신앙과 신학의 바탕 아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그 외에 기독교 기관에서 종사할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 이수학점표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이수학점	이수구	7분	비고
신학대학원	신학 (M.Div.)	신학	93학점	필수과목 선택과목 논문(선택과목중 계	51학점 36학점) 6학점 93학점	

▶ 교과목이수안내

【신학대학원 석사과정(M.Div.) 학점이수방법】

- 관련규정: 대학원학칙 제14조. 시행세칙 제12조 3항. 7항.
- 신청학점 : 매 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강의과목 4과목(12학점)과 신학강독 (2학점), 목회실습(1학점) 등 15학점을 신청하며, 1학기는 헬라어, 2학기 는 히브리어를 수강 할 시는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각 학년별 로 개설된 필수과목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졸업학점: 전공필수과목 63학점, 전공선택을 30학점(졸업논문 6학점을 포함) 도합 93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졸업논문은 학점이수로 대신할 수 있다.

▶ 교육과정 : 필수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OT417	구약학총론	3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T413	공관복음서 연구	3	Seminar on the Synoptic Gospel
4 =1.1=	ST411	조직신학개론	3	Introduction of Systemactic Theology
1차년도 1학기	HT416	환원역사와신학	3	History and Thought of the Restoration Movement
14/1	NT411	헬라어	3	Greek
	BT500	신학강독1	2	Reading in Theology 1
	PT610	목회실습1	1	Ministry Practicum 1
	NT415	신약학 총론	3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OT420	구약신학	3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HT411	서양기독교회사	3	History of Western-Christanity
1차년도	PT413	실천신학총론	3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2학기	OT411	히브리어	3	Hebrew
	BT501	신학강독 2	2	Reading in Theology 2
	PT611	목회실습2	1	Ministry Practicum 2
	PT416	예배학세미나	3	Seminar on Christian Worship
2차년도	ST415	신론세미나	3	Seminar a Doctrin of God
1학기	BT502	신학강독3	2	Reading in Theology 3
	PT612	목회실습3	1	Ministry Practicum 3
2차년도	BT503	신학강독4	2	Reading in Theology 4
2학기	PT613	목회실습4	1	Ministry Practicum 4
 3차년도	BT504	신학강독5	2	Reading in Theology 5
1학기	PT614	목회실습5	1	Ministry Practicum 5
 3차년도		학위논문		
3사선도 2학기	RP703	(전공 2과목 수강	6	Dissertation
		대체)		

▶ 교육과정 : 선택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이수구분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과 목 명
	OT313	이스라엘역사와종교	3	History and Religion of Israel
	OT314	시가서연구	3	Study of the Poetical Books
	OT316	지혜서 연구	3	Study of the Literature Books
	OT318	구약역사서연구	3	O.T.History and Religion
	OT414	예언서 연구	3	Study of the Prophets
	OT416	오경연구세미나	3	Seminar on the Pentateuch
	NT314	요한신학	3	Johannine Theology
	NT318	예수의비유	3	Parables of Jesus
	NT323	사도행전	3	Acts of the Apostles
	NT414	바울신학	3	The Pauline Theology
	NT417	성서해석과 독법	3	Biblical Hermeneutics
	NT420	마가복음세미나	3	Seminar of Mark's Gospel
	HT413	그리스도의교회사	3	History and Thought of the Church of Christ
	HT412	한국교회사	3	Korean Church History
	HT417	신약교회연구	3	Study on New Testament Church
	HT418	종교개혁사	3	History of the Reformation
ਗੈਹ ਮੋਈ	HT419	초기교회 역사와 사상	3	History and Thought of the Early Church
전공선택	HT421	교회사세미나	3	Seminar on Church History
	ST315	기독론세미나	3	Seminar on Chirstology
	ST425	칼빈신학연구	3	Seminar on Calvin's Theology
	ST316	종말론세미나	3	Seminar on Eschatology
	ST515	교회론세미나	3	Seminar on Ecclesiology
	ST318	인간론세미나	3	Seminar on Anthropology
	ST319	현대신학	3	Contemporary Theology
	ST413	기독교윤리	3	Christian Ethics
	ST426	성령론세미나	3	Seminar on Pueumatology
	PT418	목회신학	3	Postoral Theology
	PT310	다원시대의 목회개발	3	Pastoral Development in Pluralistic Age
	PT313	설교이론과 실제	3	Theories and Practics of Sermon
	PT318	디아코니아신학과 실천	3	Diakoniatheology and Praxis
	PT319	전도의 이론과 실제	3	Theories and Practics of Evangelism
	PT316	영적지도자론	3	Spiritual Leadership
	PT414	목회상담이론과실제	3	Principles and Practices Counseing
	PT514	교회성장학	36	Church Growth

사회복지대학원

▶ 교육목적

본 사회복지대학원은 케이씨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국가의 복지이념을 기반으 로 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하여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 교육목표

- 1. 일반주의사회복지사(generalist)로서의 전문성확립
- 2. 지역사회 연계실천과 적용을 통한 실용성강화
- 3. 실천적 교과목 개발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성 추구

▶ 이수학점표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이수학점	이수구분		비고
사회복지 대 학 원	사회복지학 (M.S.W.)	사회복지학	30학점	전공과목 논문(전공과목중) 계	24학점 6학점 30학점	

▶ 교과목이수안내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M.S.W.)】

- 신청학점: 매 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전공과목 3과목(9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비전공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 자격과목(총8과목)을 우선 수강하여야 한다.
- 졸업학점 : 전공과목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과목코드	과목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전공 자격 과목	SW12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W102	사회복지정책론	3	Social Welfare Policy		
	SW103	사회복지조사론	3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SW224	지역사회복지론	3	Social Work with Communities		
	SW50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	Social Welfare Law and Practice		
	SW522	아동복지론	3	Child Welfare		
	SW204	노인복지론	3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SW241	사회복지현장실습	3	Field Instruction		
	SW312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SW552	4차산업혁명과사회보장	3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cial Security		
	SW244	사례관리연구	3	Study on Case Management		
	SW554	거버넌스와사회복지	3	Governance and Social Welfare		
	SW532	가족상담및치료	3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SW530	인권과 사회복지	3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SW313	위기개입	3	Crisis Intervention		
	SW316	국제개발협력과 NGOS	3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GOS		
	SW537	질적연구방법론	3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W551	노년기설계	3	Design for the life of Elderly Adults		
	SW555	통일과사회복지	3	Unification and Social Welfare		
	SW553	심리운동	3	Psychomotorik		
	SW528	정신건강론	3	Mental Health		
	SW559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3	Social Work and Cultural Diversity		
전공	SW545	노인복지정책과서비스전달체계	3	Social Work Program and Service Delivery for Older Adults		
심화 과목	SW227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Statistics Methods and Analyses for Social Work		
, ,	SW558	호스피스와 사회복지실천	3	Hospice and Social Work Practices		
	SW560	논문작성법	3	Research Method		
	SW561	국제정책과 경영	3	International Polic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SW562	조직개발론	3	Theory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SW563	인간사회와 리더십	3	Human Society and Leadership		
	SW564	사회경영개발론	3	Business Management Society		
	SW565	NGO 조직문화론	3	Theory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NGO		
	SW566	전략경영론	3	Strategic Management		
	SW567	글로벌경영론	3	Global Management		
	SW568	NGO정책론	3	NGO Policy		
	SW569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세미나	3	Social Economy and Social Welfare Seminar		
	SW570	사회적기업과 마케팅	3	Social Enterprise and Marketing		
	SW571	지구적 빈곤과 NGO	3	Global Poverty and NGOs		

● 교육대학원

▶ 교육목표

본 과정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적응, 학습, 진로, 비행, 성격 등 여러 문제들을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하고 성숙된 상담 전문가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심리발달과 성격, 다양한 상담이론과 기법을 습득케 하여 실제 상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담자와의 상담과정 측정과 평가 를 위한 심리검사와 연구방법을 학습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이수학점표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이수학점	이수구분		비고
교육대학원	교육학 (M.Ed.)	상담심리	30학점	전공과목 논문(전공과목중) 계	24학점 6학점 30학점	

▶ 교과목이수안내

【교육대학원 석사과정(M.Ed.)】

- 신청학점: 매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전공과목 2과목(6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을 신청할 경우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졸업학점: 전공과목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 전공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과목명 영문표기	
선수	ED159	교육학개론	3	Introduction to Education	
선수	ED151	심리학개론	3	Introduction to Psychology	
전공	ED164	심리측정및평가	3	Psychological Test and Assessment	
전공	ED102	성격심리	3	Personality Psychology	
전공	ED104	집단상담	3	Group Counseling	
전공	ED105	가족상담	3	Family Counseling	
전공	ED106	진로상담	3	Career Counseling	
전공	ED107	상담이론과 실제	3	Theories and Practices of Counseling	
전공	ED108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3	Counseling Practicum and Case Study	
전공	ED109	발달심리	3	Developmental Psychology	
전공	ED121	이상심리	3	Abnormal Psychology	
전공	ED123	아동발달	3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전공	ED124	학습심리	3	Learning Psychology	
전공	ED126	청년발달	3	Adolescence Development Psychology	
전공	ED156	질적연구방법론	3	Research Methodology	
전공	ED165	중독심리와상담	3	Addiction Psychology and Counseling	
전공	RP705	논문작성법	P(3)	Essay Writing	

대학원 학사안내

휴 • 학 • 안 • 내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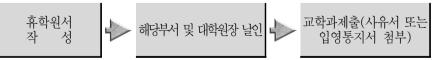
학생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1(5주) 이상을 수 강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학칙 제 24조)

2. 휴학기간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1회(2학기)에 한하여 휴학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 ① 일반휴학은 개강 후 5주 이내에 휴학원서에 사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 하여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고,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 출하고 원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 ② 군입대휴학은 휴학원서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고.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확인서 미제출 시 휴학기간만료로 제적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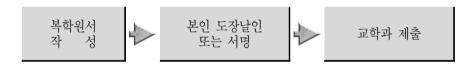
복 • 학 • 안 • 내

1. 개요

휴학기간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복학 예정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군입대휴학자의 전역일이 개강 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학칙 제25조)

2. 신청방법

매학기 등록기간 전 복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혹, 직장근무나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적담당자의 양해 하에 Fax로 복학신청서를 송부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재 • 입 • 학 • 아 • 내

1. 개요

휴학기간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는 당해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는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매학기 등록기간 전 재입학지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재입학이 허락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자의 재학 당시 취득학점은 심사 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외 • 국 • 어 • 시 • 현 • 안 • 내

• 시행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

• 관련규정 : 대학원학칙 제19조 2항, 시행세칙 제32조.

•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재학생

• 시험과목: 박사과정 - 2과목(영어는 필수, 독어와 불어 중 택일)

• 합격판정: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은 다음학기에 응시 ※ 외국어시험 불합격으로 수업년한이 경과된 학생은 등록금의 10%를 납 입하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졸·업·종·합·시·험·안·내

시행시기: 1학기 4월~5월, 2학기 10월~11월(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대학원학칙 제19조 2항, 시행세칙 제33조

• 신청자격 :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45학점 이상 취득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등록 12학점 이상 취득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5학기 이상 등록,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30학점 이상 취득 자
- 시험과목 : 박사과정은 본인의 전공과목이 포함된 필수2과목과 선택1과 목, 석사과정은 본인의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 중 1과목 선 택
- 합격판정 : 과목당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과목은 다음 학기에 응시
 - ※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으로 수업연한이 경과된 학생은 등록금의 10%를 납입하고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졸업종합시험 과목일람표

대학원명(과정)		학 과	전 공	졸업종합시험과목		บโ	-
				전공과목	선택과목	비	고
일반대학원	박 사 과 정	신학	구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신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구약신학 역사신학 신약신학 택:			
			역사신학	역사신학	신약신학 -택1 실천신학-		
			실천신학	실천신학1 실천신학2	구약신학 신약신학 -택1 조직신학 역사신학		
	석 사 과 정	신학	구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구약신학 - 신약신학 조직신학택1 역사신학 실천신학 -		
			역사신학	역사신학	│ 실천신학□		
			실천신학	실천신학			
신학대학원		신학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사회복지대학원		사회 복지학	사회복지학	지정과목(2과목)			
교육대학원		교육학	상담심리	지정과목(2과목)			

학•위•청•구•논•문•안•나

- 1.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배정
 - · 석사과정(Th.M./M.Div./M.S.W./M.Ed):
 - (1) 자격 :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 (신학대학원은 5학기 이상, 사회 복 지대학원은 2학기 이상)
 - (2) 방법: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을 한다.

· 박사과정(Ph.D.):

- (1) 자격: 5학기 이상 등록하여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승 인을 받은 자
- (2) 방법: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배정을 한다.

학위청구논문계획서 구비 요건 :

- ① 논문의 제목 ② 목차 ③ 연구방법 ④ 논문개요 ⑤ 전공주임교수승인서
- 2. 학위청구논문 초고제출
 - · 석사과정(Th.M./M.Div./M.S.W./M.Ed):
 - (1) 시기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 (2) 자격: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고, 1학 기 이상 지도받은 자
 - (3) 방법: 학위청구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논문 1부를 교학과에 제출

· 박사과정(Ph.D.):

- (1) 시기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 (2) 자격: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고, 2학 기 이상 지도받은 자
- (3) 방법: 학위청구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논문 1부를 교학 과에 제출

- 3.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 · 석사과정(Th.M./M.Div./M.S.W./M.Ed.):
 - (1) 시기: 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 (2) 자격
 - ① Th.M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자.
 - ② M.Div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81학점 이상 취득한자.
 - ③ M.S.W./M.Ed
 - 3/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자.
 - ④ 공통자격
 -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초고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 (3) 방법:
 -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
 - ② 학위청구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논문 5부를 교학과에 제출
 - · 박사과정(Ph.D.):
 - (1) 시기 : 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
 - (2) 자격:
 - ① 6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자.
 - ②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③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④ 논문초고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⑤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 (3) 방법:
 -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
 - ② 학위청구논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논문 5부를 교학과에 제출
- 4. 학위청구논문 심사
 - (1) 심사신청에 의하여 접수된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지정된 일자에 논문구술시험과 심사를 거쳐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2) 정규등록학기 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학기 경과 후 논 문재심사신청을 하여야하며, 학위논문제출을 위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 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세칙 14조 5항)

사 • 회 • 복 • 지 • 실 • 습 • 안 • 내

- 대 상 자 : 매 학년도 2학기에 3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사회복지실습과목 미수강자.
- 실습기간 : 매 학년도 여름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 신청방법: 환원마당 자료실에서 사회복지실습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 1) 실습할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신 청서에 실습기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2) 실습기관 섭외가 불가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실습기관 중에서 선택
 - 3) 실습신청자는 2학기에 사회복지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하여야 함
- 제출기간 : 1학기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정일까지 교학과에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 부장관 선정기관 실습세미나(30시간)
 - ※ 실습기관: ①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실 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 실습지도자: ①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 복지사업 실 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 년 이상의 사 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2010년부터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실습 기준을 준수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 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함.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등)
 -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별첨양식의'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실습지도자 자격인정 범위

·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 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즉,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3 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된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 학점 및 시간 :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 + 실습세미나 3시간)
-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생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 1) 학기 중 실습: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2) 방학 중 실습: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 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사 • 회 • 복 • 지 • 사 • 자 • 격 • 증 • 신 • 청

- 1. 자격취득 기준(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kasw.or.kr/참조)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고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 중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 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 전공이외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함.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2. 이수과목

○ 대학원 이수과목 필수과목 6과목 이상 18학점, 선택 2과목 이상 6학점 도합 8과목 이상 이 수하여야 함.

○ 이수과목 내용

필수과목	선택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3.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국가시험제도

○ 응시자격(대학원졸업자) 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석사학위취득자.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과목명	응시과목에 포함되는 교육내용	문항수	비고		
사회복지 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50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75개	• 모든 응시과목에서 사회 복지 각 분야론의 응용문 제를 반영하여 출제한다.		
사회복지정책 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75개	● 시험 시간은 총 200분으로 한다.		
	총 문항수	200개			

학•생•증•발•급•안•내

학생증을 발급 받아야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에 부착된 사진으로 학생증을 발급하되 사진교체를 원하는 학생은 교 학과에 사진(또는 파일)을 제출하면 학생증을 발급합니다.

주•차•증•구•입•안•내

- 이용요금
- 가. 정기권: 1개월(10,000원), 6개월(60,000원)
- 나. 1일 방문객은 최초 15분은 무료이고 10분 단위로 500원 부과
- 기타사항
- 가. 학생은 정기권을 구입하셔서 이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정기권은 정문차단기 박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부 록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정관 케이씨대학교학칙 케이씨대학교학칙시행세칙 케이씨대학교대학원학칙 케이씨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교수인명사전 대학캠퍼스뱀

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인류구원, 복리증진 및 문화 창달을 위하여유아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
-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 1. 케이씨(KC)대학교
 - 2. 등촌중학교
 - 3. 화곡유치원
-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4길 47 에 둔다.
-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 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 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 8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 2인
- 3. 삭제
- 제22조의2(상근임원) ①제22조1항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 장 및 이사 중 1인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1. 이사: 4년
 - 2. 감사 : 2년,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한다.
-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 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 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중침례를 받고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②삭제
 - ③삭제

- (4)삭제
- (5)삭제
-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제24조의5(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KC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단, 대학 입학정원이 500명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
-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한 자
- 2.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 과한 자
- 제26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법인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반기 및 후반기(전, 후반기 합하여 4년 이내)로 나누어 전·후반기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이사회에서 전반기 이사장 임기, 후반기 이사장 및 잔여 임기 등에 관하여 선출 및 의결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 시행한다.
-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 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이사에 대한 통지는 법인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에 우편으로 하되, 이메일, 팩시밀리로도 할 수 있다.
- 제34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의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

하다.

- 제35조의3(대학평의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대표 5인
 - 2. 직원대표 3인
 - 3. 조교대표 1인
 - 4. 학생대표 1인
 - 5. 동문대표 1인
 -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각 학부별 1명)
 - 2. 직원 및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추천한 자
- 제35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 제35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절 인재양성위원회

- 제35조의9(인재양성위원회 설치) 본 대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재 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5조의10(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대학설립목적의 이해관계자 5인(위원 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위촉과 위원장의 임면은 이사장이 행한다.
- 제35조의11(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제35조의1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1.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합한 인재 발굴
 - 2.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육성 방안 마련
 - 3. 해외선교사 육성 방안 마련
 - 4. 설립목적달성을 위한 정관제35조의13의 특별장학생 선발
 - 5. 위원회의 제반 업무는 교목실이 주관한다.
- 제35조의13(특별장학생) ①본 대학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선발된 특별장학생을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 둔다.
 - ②특별장학생의 수는 신학부 및 신학대학원 편재정원의 30%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과 선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농경업
- 2 축산업
- 3. 임대업
- 제36조의2(수탁사업의 운영)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연구·복지·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으로 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도서관 요양병원 등의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도서관, 요양 병원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1. 화곡빌딩 등
 - 2. 파주농장
-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 사업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 구 까치산로 24길 47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8번지에 둔다
- 제39조(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③삭제

제5장 해산

-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 고가 종료된 후 재단 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 재단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 귀속된다.
-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 제43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중학교 이하의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④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 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 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단, 계약조건은 정관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급 여
 정관 제49조로 정하는 연봉액
-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⑤제4항의 계약조건을 본인의 동의와 학교의 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⑥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 ⑦대학교의 교목실장, 평가감사실장, 대학원장, 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기타 교직원 보직은 이사장의 동의로 총장이 보한다.

- ⑧제4항 제1호 각목 이외에 대학 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임용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 ⑨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 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⑩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하며(중학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며, 유치원은 따로 정한다.)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임한다.
- ⑪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교원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가제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승진. 재임용 등에 반영한다. 이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⑬교직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하고 직무의 능력과 난이도를 연봉제에 반 영한다. 이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43조의2(중학교의 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1. 교원이 제4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 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중등학교 이하의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이 임용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의3(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43조의4(교원의 명예퇴직수당) ①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1년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중학교 이하의 경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 당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의5(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3조의6(중학교 이하의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임용) 삭제

제2관 신분보장

-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서 4호 및 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 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 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 6.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 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 7. 자녀(만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해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단,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
- 12. 사립학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중학교 이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1. 제44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로 한다.
 -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 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 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가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4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삭제)
-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

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임명권자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의 대기를 명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 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의 정도, 업적평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중학교 이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의사에 반하여 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②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을 "대학교육기관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을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③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④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0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50조의3(교수 연구년) ①연구년 중의 교원의 수는 전임교원의 15분의 1 이내로 하고 휴직 등 학교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임 교원 총수의 10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학과의 전임 교원이 5인 미만인 경우 한 학기의 연구년이 겹치는 경우에는 연구년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연구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며 재직기간 중 총2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연구년 신청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④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개월 이내에 임명권자에게 그 복귀를 신고한다.
- 제50조의4(교원 파견 및 교환) ①교원의 파견 및 교환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 ②파견 및 교환 교원은 그 직무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그 복귀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 2.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3. 중학교의 경우 교원의 보직과 연수 및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 이를 소집한다.
 -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 소속 직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임명한다.
-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장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장계위원회의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 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삭제)

-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3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3의2조(위원의 기피)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 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항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 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 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 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법인인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 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위원회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직원

- 제83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 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관련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84조(임용) ①직원의 신규임용,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승진, 전직,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의 경우 중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이사장은 본 법인산하 각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직원을 법인

- 산하 각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명할 수 있다.
- ⑤직원의 정년은 61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한 학기 말일에 퇴직한다(중학교 이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85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한다(중학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86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 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 칙으로 정한다(중학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제86조의2(직원의 명예퇴직수당) ①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1년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중 학교 이하의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을 준용한다).
 - ③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 제87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중학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처와 필요시 목적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법인의 사무처장은 부이사관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 ③사무처에 총무과와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으로 보한다.
- ④목적기구설치의 규정은 정관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5)(삭제)
- ⑥(삭제)

제2절 대학교

- 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삭제
 - ④총장이 사고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직무 대행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 (5)삭제
 - ⑥삭제
 - (7)삭제
- 제90조의2(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④일반대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승인 후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 원장은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 제90조의3(학술진흥연구원) 삭제
- 제91조(교목실) ①교목실에 교목팀, 선교팀, 대학교회를 둔다.
 - ②교목실에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신앙담당이 사 및 교목실장과 교목들을 둘 수 있다. 교목실장은 별정직이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교목은 교원이나 교역자 중 총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보한다.
- ③보수 및 교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1조2 삭제

- 제91조의3(평가감사실) ①대학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감사 실을 둔다. 실장은 별정직이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②평가감사실에 전문위원으로 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운영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를 두며 대학원에 교학과를 둔다.
 - ②교무처에 교무과, 입학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③학생처에 학생과, 사회봉사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과 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 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④기획처에 기획예산팀, 대외협력팀을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⑤사무처에 총무과, 시설관리과를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 각 처(실)의 팀 또는 과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실)장은 교원 또는 부이사관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보한다.
 - ①대학원에 교학과를 두며 교학과장은 교원 또는 사무관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⑧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92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 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산학협력단에는 단장 1인을 두며 부교수 이상 교원이나 또는 부이사 관으로 보한다.
- 제93조(부속기관) ①대학교에 도서관, 생활관, 교육혁신원, 교양교육원,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정보지원센터, 언론센터, 남북통합지원센터, 리더십센터, 학술연구소 등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②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으로 보한다.
 -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 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도서관의 직원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으로 보한다.
- ⑤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이나 교 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3조의2(부설기관) ①대학교에는 평생교육원, 국제교육교류원 등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②부설기관의 장은 설치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총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부설기관에 국장을 두며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직원이나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3조의3(목적부설기관) ①대학교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설기관을 둔수 있다.
 - ②목적부설기관의 장은 설치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이를 제외하고는 총 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④법인산하에 사회복지실을 둘 수 있다. 단 사회복지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중학교

- 제95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장이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장직무대리를 이사장이 임명할수 있다.
- 제96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 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9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 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촌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9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 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③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99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 등을 거쳐 2배수 추천한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1 00조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 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0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 각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

정으로 정한다.

- 제101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102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선출직 선거에 후보가 되는 즉시 사퇴한다.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03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경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04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 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5.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때
 -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 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 제10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 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6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 (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

여야 한다.

- 1. 학부모 전체회의
- 2. 학교 홈페이지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⑥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⑦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7조(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 ②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09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

- 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 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1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12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 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4조(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10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115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 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 ②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 다
- 제116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17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 제118조(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 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20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1(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6조 제4 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등촌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유치원

- 제122조(교원의 배치) ①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부담임을 배치하여 학급을 관리하게 한다.
 - ②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종일반에는 보조원을 두어 종일반 담임을 돕도록 한다.
 - ③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교사 1인을 둔다. 보직교사는 유치원1정 자격을 갖춘 교사로 임명한다.
 - ④그 외 세부사항은 교육청의 보직교사 배치계획에 따른다.
 - ⑤유아교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10급 상당의 기능직원(사무, 조무, 방호) 1인, 조리사1인, 운전기사 1인을 배치한다.
- 제12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을 적용한다.
 - ②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유아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유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③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 할 수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

제125조(위원의 선출 등) ①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⑤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 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유치원규정의 제·개정
 - 2.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제127조(위임규정) ①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②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검토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5절 정원

제128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2, 3과 같다.

제6절 보칙

- 제12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 제13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13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이사장	김 기 순	4년
이사	엘 헤스겔 체셔	4년
이사	이 채 화	4년
이사	윌리암 에이 리차드슨	4년
이사	다니엘 씨 하딘	4년
이사	이 지 호	2년
이사	김 득 환	2년
이사	신 상 만	2년
이사	조 연 배	2년
감 사	말콤 파수리	2년
감 사	윌리엄 램지	1년
감 사	시드니 알렌	1년

부 칙

본 정관은 196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6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 ④(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위원 중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1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①이 정관은 199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⑤(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

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 ①이 정관은 1994년 4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②다만, 이 정관 시행 당시에 재직중인 교원은 제43조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을 재임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대학원에 관한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본 정관은 199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로서 정년 보장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4항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그리스도신학대학 학장은 이 정관에 의한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규정은 당해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③(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1의 개정규정은 2002년1월1일 이후 임용되는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12월31일까지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교 수: 정년

나. 부 교 수 : 7년

다. 조 교 수 : 4년

라. 전임강사: 2년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감사는 제24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및 추천) 및 제25조제5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학교장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임 중인 학교장의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 기간 중일지라 하더라도 이사회의의결을 거친 경우 중도 해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 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각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 한다.
- ③(전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조교수로 계약 변경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3조(임면) 제4항, 제8항, 제14항,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2항,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5호는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능직으로 재직 중인 KC대학교 직원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직으로 KC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직원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일반직으로 계약변경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직원 직제표

일 반 직							
ᄎᅁ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원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9	1	1	1 1		2	1	2
기 능 직							
총원	6등급	글	7등급		8등급	9	등급
6	1		1		2		2

(별표2) 대학 직원 직제표

ſ	夫 이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원	(이사관)	(원시약)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Ī	45	1	2	6	8	8	9	10	1

(별표3) 중학교 직원 직제표

일 반 직						
ᄎ 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원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4			1			3

케이씨대학교학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와 인류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기독교 사업에 공헌할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편제 및 정원) ① 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둔다
 - ② 대학원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대학교의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④ 2이상의 전공이 설치된 학과로 입학한 자의 전공은 제2학년 진급 시에 결정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대학교의 학사과정에는 제3항의 학과외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운영하는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정한다.

제 2 장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 제 3 조 (수업 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 ② 조기졸업은 1년(2학기) 이내의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자의 수업년한은 제3학년 편입은 2년(4학기)이상, 제4학년 편입은 1년(2학기)이상으로 한다.

제 4 조 삭제

제 3 장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5 조 (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학년도는 2개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방학중에 계절학기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다
- 제 6 조 (수업일수 등)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34조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집중수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온라인에 의한 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 7 조 (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교 기념일(4월 19일)
 - 2. 여름 방학
 - 3. 겨울 방학
 - 4. 일요일
 - 5. 국정 공휴일
 - ② 비상사태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 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실습 과제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편입, 재입학 포함)

- 제 8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 9 조 (입학자격) 본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3.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
- 제 10 조 (지원서류)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별

도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형료의 처리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 의한다
- 제 11 조 (지원 방법)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제 12 조 (입학전형) ① 대학입학전형(편입학전형 포함)은 해당년도 모집 요강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및 입학사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3 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 5.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③ 위 ②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15 조 (보증인) 삭제
- 제 16 조 (편 입학) 당해 년도 또는 당해 학기 모집단위별로 제1, 2학년에 제적자가 있을 경우 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 제 17 조 (편입학 자격) ① 제3학년 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이어야 하고, 제4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3년제학과 졸업자에 한 한다.
 -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원외로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그리고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한다
 - ③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정원외로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의료인력(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위 소지자에 대하여는 정원외 편입생으로 선발하되, 당해 학년 입학정원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 제2)항 해당자중 전적대학에서 징계 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⑥ 본 대학교에서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제 18 조 (편입학 사정)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사정한다.
 - 1. 전적대학의 성적 2. 면접고사 3. 실기고사 (음악콘텐츠학과에 한함)
- 제 19 조 (재입학) 재입학은 총정원(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징계에 의해 퇴학처분이나 제적을 당한 자
 - 4. 타교에 재학 중인 자
 - 5. 삭제

제 5 장 전 과<부>

- 제 20 조 (전과〈부〉) 전과<부>는 전출학과<부> 입학정원 중 20%, 전 입학과<부> 입학정원의 40%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 학기 초 30일 이 내에 허가할 수 있다.
- 제 21 조 (전과〈부〉자격) ① 전과<부> 지원자는 제 1학년 이상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 ② (삭제)
 - ③ 주·야간학부 간의 전과<부>는 정원 내에서 허락할 수 있다.
 - ④ 예능계열로의 전부는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⑤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락하지 않는다.
- 제 21 조의 1 (전과〈부〉절차) ① 전과<부> 지원자는 지원서에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 ② 전과<부>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면접시험을 과할 수 있다.
 - ③ 전과<부> 지원자에 대하여는 교무처장의 승인 하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 ④ 전과<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1 조의 2 (학과〈부〉선택)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이수 후 소속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제 6 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 제 23 조 (휴학)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제 24 조 (휴학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학업 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에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 25 조 (휴학기간) ①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 회까지 허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할 시는 총장은 휴학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

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및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 니하다

- 제 26 조 (입대휴학) 삭제
- 제 27 조 (퇴학) 퇴학은 자원퇴학과 직권퇴학(미등록, 성적불량, 징계 등) 으로 나누고 소정의 제적 절차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다.
- 제 28 조 (자원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원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29 조 (제적) 학생으로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 1. 학력부실 또는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 정된 자
 - 2.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 3.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 4. 타교에 입학한 자
 - 5.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6. 기독교의 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7.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 8.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자
 - 9. (삭제)
 - 10.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제 30 조 (복학) 휴학기간만료 또는 종료된 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기간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로 복학할 수 있으며, 군 입대 휴학자의 전역일이 개강 일로부터 5주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7 장 학사경고와 유급

제 31 조 (학사경고) 매학기 성적불량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경고에 대한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교육과정

제 31 조의 2 (교육과정) 본 대학교의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 32 조 (교과목) ① 본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과목의 학점배점 기준은 전체 이수과목의 25% 이상으로 한다. 단, 국가 또는 교육부 단위 차원의 특별한 사안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교양과목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⑤ 경건 훈련과 목회실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경건 훈련에 관한 규정"과 "목회실습규정"으로 정한다.
- 제 33 조 (전공 이수) ① 학생은 다음 제1호의 기본전공을 이수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전공이나 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전공 이나 자격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2호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기본전공
 - 2. 심화전공
 - 3. 복수전공(2개 이상의 전공)
 - 4. 부전공
 - 5. 연계전공
 - 6. 융합전공
 - 7. 자격과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경우, 전공의 특성에 따라 기본전공 만 이수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4 조 (교과이수 단위)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습, 실기 등 대학교 가 특별히 정하는 학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제 35 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 36 조(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 ①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을 마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 수강 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

- ③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신청 할 경우 총장은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 제 37 조 (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이수결과 과락된 과목이 필수과목일 때에는 이를 재수강하여야 한다
 - ③ 재수강은 C급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허락하고,재수 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8 조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5학점이상 19학점(간호학과 21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으나 연간 36학점(간호학과 40학점)을 초과이수 할 수 없다. 수강학점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초과학점이수 등을 통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39 조 (출석의무) 학생이 한 학기 수업 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40 조의 1 (편입생 학점인정)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0 조의 2 삭제
- 제 40 조의 3 (타대학 이수학점의 인정) 학생이 본교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40 조의4 (시간제등록제) ①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다음 1호의 자격자를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시간제등록생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하며, 학습과정은 본과 학생과 통합 또는 별도의 학습반으로 선발할 수 있다.
 - 3.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40 조의 5 (학습경험 학점인정) ① 학생의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한 경험(군 복무경험 포함)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은 최대 4학점 까지로 한다.

② 학습경험 학점인정 심의를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시험, 성적, 졸업

- 제 41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출석사항,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등을 합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2 조 (성적 등급) 성적 평가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ᄪ	점 수	평 가
A +	95 - 100	4.5
A 0	90 - 94	4.0
B +	85 - 89	3.5
В 0	80 - 84	3.0
C +	75 - 79	2.5
C 0	70 - 74	2.0
D +	65 - 69	1.5
D	60 - 64	1.0
F		0

- 제 43 조 (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학기말로 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 44 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 제 45 조 (성적취소)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 46 조 (학년수료) 각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제 1 학년 33학점 이상
 - 2. 제 2 학년 66학점 이상
 - 3. 제 3 학년 99학점 이상
 - 4. 제 4 학년 130학점 이상
- 제 47 조(졸업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심사하여 (별표 2) 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1. 학칙 제3조 1항 내지 3항의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한 자.
 - 2. 교과과정에서 정한 13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3. 경건 훈련 6학기 이상 합격자(신학과 7학기 이상)
 - 4. 목회실습 6학기 이상 합격한 자(신학과에 한함).

- 5. 위 2호의 규정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또는 학술교류협정에서 정 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 6. 제48조의 졸업인증을 받은 자.
- 7. 졸업논문 또는 졸업연주에 합격한 자
- (2) 삭제
- ③ 삭제
- ④제 1항의 각호를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8조(졸업인증) ① 모든 학생은 졸업 시까지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49 조 (졸업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 ② 조기 졸업자도 전기 또는 후기 졸업할 수 있다.
- 제 50 조의 1 (학위) ①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심 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서식 1)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삭제
 - ③ 본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또 는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0 조의 2 (복수학위) 국내·외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복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51 조 (졸업취소) ① 졸업생이라도 학칙 제45조에 의한 성적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졸업 및 학위 수여를 취소한다.
 - ② 수료와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 제 52 조 (학생회) ① 학생의 자체적인 활동을 위한 케이씨대학교 학생회 (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 회칙은 따로 정한다.
 - ② 학생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 지도 위원회를 둔다.
 -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목실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제 53 조 (학생단체) 각 학생단체는 학생회에 소속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지도교수를 두어야 한다.
- 제 54 조(학업방해 행위 등의 금지) 학생은 학내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정당이 관여하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수업거부, 확성기 사용, 기타 방법 등으로 수업 방해행위나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55 조(학생집회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교내 10인 이상의 집회
 -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제 56 조(간행물의 승인) 학생단체 또는 모든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 장이 위촉한 약간명의 교수가 지도하고 인쇄, 간행물은 배포 전에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7 조(벌칙) 제10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 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하되 필요시 해당학생에게 진술 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1 장 포상과 징계

- 제 58 조 (포상)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선행에 있어 타의 모 범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 59 조 (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비 성경적 교리를 신봉하거나 선전하는 자
 - 2. 학생상호간의 폭행 및 구타,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피해가 현저하게 드러난 자
 - 3. 학교시설물 및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문서 또는 서류 등을 열람, 절취한 자
 - 4. 각종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 5.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는 자

- 6.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예배, 학교행사 및 수업에 빠지거나 방해하는 자
 - 7. 타 학생의 재산에 손해를 준 자
 - 8.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자
 - 9.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결석하는 자
 - 10. 이성간에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
 - 11.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
- 12. 음주, 흡연, 도박 및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소지, 사용하는 행위
 - 13. 교내에서 무단 취식 및 기숙하는 자
 - 14. 교직원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이나 표현을 한 자
- ② 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2 장 등록금

- 제 60 조 (입학금)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 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1 조 (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61 조의 1 (등록금분할납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가정형편상 부 득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61 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을 정할 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2 조 (등록금반환) ① 등록금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 액을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를 한 경우
 - 3. 재학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 4.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

학을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등록금 반환금액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1. 당해학기 개시(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 2.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 3.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 4.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 5.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6.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휴학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나, 한국장학재 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을 조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단,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 제 63 조 (감면) 입학금 및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 13 장 장학금

- 제 64 조 (장학금지급)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 등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65 조 (대상 선발)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4 장 직 제

제 66 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학교법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학원 정관에 따라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 제 67 조 (교수회)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 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 제 68 조 (소집) ①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교수회 소속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 69 조 (기능)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업에 관한 사항
 -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3. 입학 및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학과별 교수회의)
 - 4. 삭제
 - 5.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 제 70 조 (의결)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1 조 (교수회 내규) 교수회는 본 대학교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16 장 교무위원회

- 제 72 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에 교무위원회를 두며 총장, 교목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대학원장, 대외협력실장, 평가 감사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 73 조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74 조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 2. 학사에 관한 사항
 - 3. 학칙 및 제 규정의 제·폐·개정에 관한 사항
 - 4.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5. 기타 총장이 제시하는 중요 사항
- 제 75 조 (의결) 교무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장 외국인 유학생 및 위탁생

- 제 76 조 (외국인 유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전형을 거친 후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

하다.

- ③ (삭제)
- ④ 외국인 유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외국인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76조의 1 (위탁생)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위탁생은 수업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 18 장 부속기관, 부설기관, 산학협력단

- 제 77 조 (부속기관) 본 대학교는 다음 부속기관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1. 도서관
 - 2. 정보지원센터
 - 3. 학술연구소
 - 4. 생활관
 - 5. 언론센터
 - 6. 남북통합지원센터
 - 7. 리더십센터
 - 8 삭제
 - 9. 학생상담센터
 - 10. 삭제
 - 11. 교양교육원
 - 12. 교육혁신원
 - 13. 교수학습지원센터
 - 14. 교육성과관리센터
 - 15. 비교과통합관리센터
 - 16. 종합인력개발센터
 - 17. 워격수업지원센터
- 제 78 조 (부설기관) 본 대학교의 선교적 교육목표 달성과 보다 효율적인 교회교육 및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설기 관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1. 평생교육원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국제교육교류원
- 제 79 조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는 정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 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센터를 둔다.
 - ③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 장 계약학과

- 제 80 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80 조의 1 (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 학위종별 설치·운영등) ① 계약학 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 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 다.
-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 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 2.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 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다만, 교육부장관 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 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② 계약학과의 모집학과별 명칭 및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고, 계약학과 의 명칭은 융합산업학부로 한다.
 - ③ 학과별 수여학위는 별표4와 같다.
 - ④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케이씨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 80 조의 2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 ① 계약학과에 입학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9조 또는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중인자로 한다.
 - ② 계약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소 지자로 한다
 - ③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절차는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 80 조의 3 (수업 연한) ① 본 대학교의 계약학과 수업년한은 4년(8학기) 으로 한다
 - ② 조기졸업은 1년(2학기) 이내의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자의 수업년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단, 4학년 편입자의 경우 1년(2학기)으로 한다.
- 제 80 조의 4 (편입학)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 할 수 있다.
- 제 80 조의 5 (편입학 자격) ①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 한다.(학점은행제의 경우 80학점이상 수료한 자)
 - ②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 한다.(학점은행제의 경우 120학점이상 수료한 자)
 - ③ 제1)항, 제2)항 해당자중 전적대학에서 징계 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제 80 조의 6 (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은 각호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
- 1. 4년(8학기,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의하여 단축(조기졸업)할수 있다.
- 2. 신입학자는 130학점 이상 이수한자, 2학년 편입학자는 전공 65학점 이상, 4학년 편입학자는 전공 3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3. 전학년 평균평점이 2.0 이상인자.(협약에 의하여 조기졸업 교과과정을 이수한자 포함)
 - 4. 졸업종합시험(전공과목 2과목) 80점 이상인자.
- 제 80 조의 7 (수업료 등 납부금) ①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 삭제

- 제 80 조의 8 (운영경비) 제80조 각호에 의하여 계약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제 80 조의 9 (설치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 80 조의 10 (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에 설치된 특정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 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과 또는 본과 동일전공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학업이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납입금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0 조의 11 (계약학과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운영원회를 설치하여 각 호를 심의한다.
 -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입학에 관한 사항
 - 3. 계약학과 협약 및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4. 계약학과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5.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계약학과장, 교무과장, 대학원과장, 학생대표, 산업체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을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 제 80 조의 12 (학사관리 등) 계약학과의 운영에 있어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0 장 자체평가

- 제 81 조 (자체평가) ① 본 대학교는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조직· 운영·시설·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자체평 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장 구조개혁위원회

- 제 82 조 (구조개혁위원회) ①본 대학의 학과(전공)의 정원조정이나 개폐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조개혁위원회를 둔다.
 - ② 구조개혁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평가감 사실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83 조 (운영규칙) 구조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2 장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

제 84 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장 학점은행제

- 제 85 조의 1 (학위수여요건) ①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4.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전공분야에서 전공 48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자.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5 조의 2 (학위수여) ① 제81조의 1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 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서식2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전공심의를 받은 전공에 한해 표준교육과정 또는 학칙 제 80조의 1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학위명을 기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85 조의 3 (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자가 학위증 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서식 3호, 서식 4 호에 의거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 85 조의 4 (학습과정) ①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 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9조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 을 준수한다.
 - ② 학점은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4 장 직원회

- 제 86 조 (직원회) 본 대학교에 직원회를 두고, 대학에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 87 조 (소집) ①직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직원회 소속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 88 조 (기능) 직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대학행정발전에 관한 사항
 - 2.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주요사항
- 제 89 조 (의결) 직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0 조 (직원회 내규) 직원회는 본 대학교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

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운영은 구 학칙에 의한 졸업정원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9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 허 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는 19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 48조는 1995학년 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재학생은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5월 6일부터 시행하되, 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 종교음악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교회음악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 다
- 3. (어학고사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학고사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 조치) 이 변경 학칙의 제2조 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동전) 1996년 3월1일 이전 입학자로서 이 학칙 변경 당시 재학중 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종전의 학과(신학과, 종교철학과, 교회행정 학과, 선교언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교회음악과)로 학적을 유지한다.
- 4. (동전) 1997년 3월1일 이후에 입학하는 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에게는 이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개정학칙의 (별표 1) 학부별 입학정원과 (별표 2) 학부별 수여학위는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 (학부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현재 기독교복지학부와 교회음악학 부에 소속된 학생은 각각 사회복지학부와 음악학부에 소속된 것으로 한다.
- 4) (복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1일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 복학자는 이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의 제2조 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 3. (동전) 2003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로서 이 학칙 변경 당시 재학중 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종전의 전공(선교학전공)으로 학적을 유지한다.
- 4. (동전)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입학하는 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에게는 이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2조(등록금 반환)는 2004학년도 2학기 등록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동전) 2009년 3월 1일 이전 입학자로서 이 학칙 변경 당시 재학중 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종전의 전공(경영정보학야간전공)으로 학 적을 유지한다.
- 3. (동전)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입학하는 자와 동일 학년에 복학하는 자에게는 이 변경 학칙을 적용한다.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제80조(계약학과(부) 등 설치운 영) 제2)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별표1의 입학정원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부는 전공에 따라 별표1의 학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1) 제 37조 1항, 38조 1항, 46조 1호 내지 4호, 47조 1항 2호, 6호, 48조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2)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등 또는 하급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경과조치3) 위 경과조치2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등 또는 하급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의 37조 및 47조 1항 2호의 졸업이수학점은 2012년 이전에 본교에서 이수한 년수에 따라 제46조의 학년수료학점을 1학년 이수는 35학점, 2학년 이수는 70학점, 3학년 이수는 105학점으로 적용하며, 제37조 1항 및 47조 1항 2호의졸업이수학점은 이수학년 1개 학년에 2학점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부 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1) 별표1의 입학정원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2)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3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이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1) 이 변경학칙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4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201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변경학칙의 제9조,제10조 5호는 2017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변경학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47조 1)항의 3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7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이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본 규정 32조 2항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6 학년도 교육과정부
- 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47조 1)항의 3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7년 3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2) (식품과학부 명칭 변경) 2016학년도 식품과학부 식품과학전공(주간)을 식품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7년 9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1) 이 변경학칙은 2018년 2월 28일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9학년도 이후의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는 이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1월 30일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9년 2월 11일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19년 5월 15일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20년 2월 6일 시행한다.

부 칙

- 1) 이 변경학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1) 이 변경 학칙 제 33조 및 제 47조 3호는 2020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2) 이 변경 학칙 제 40조의5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2020학년 도 1학기 복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학칙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 1) 입학정원 (2016년 입학자)

학 부	전 공	입학정원
신 학 부	신학전공(주간)	25명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주간)	40명
시외국사학구	국제사회복지학전공(주간)	408
	경영정보학전공(주간)	20명
경 영 학 부	경영학전공(주간)	20명
	세무회계학전공(주간)	20명
	피아노전공(주간)	17명
음 악 학 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주간)	11명
	뉴미디어음악전공(주간)	7명
외국어학부	영어전공(주간)	20명
<u> </u>	중국어전공(주간)	20명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아동복지학전공(주간)	22명
시호크시아마리니키丁	상담심리학전공(주간)	23명
간호학부	간호학전공(주간)	40명
식품영양학부	식품영양학전공(주간)	25명
교양실용학부		

(2017년,2018 입학자)

계열	모집단위	2017	2018
게될	(개설학부,학과)	2017	2010
	신학과	25명	20명
인문사회계열	자율전공학부		
	(경영학과,빅데이터경영학과,사회복지학과,	180명	157명
	상담심리학과,G2국제어학과)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0명	40명
사건파력제를	식품영양학과	30명	30명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35명	30명
합계		310명	277명

(2019~2021년 입학자)

계열	모집단위(개설학부,학과)	입학정원
	신학과	20명
인문사회계열	G2빅데이터경영학과	62명
	사회복지학과	65명
	상담심리학과	30명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0명
사인파력제를	식품영양학과	30명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30명
합계		277명

(2022년 이후 입학자)

계열	모집단위(개설학부,학과)	입학정원
	신학과	20명
인문사회계열	G2빅데이터경영학과	60명
	사회복지학과	63명
	상담심리학과	30명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44명
사연파악제월	식품영양학과	30명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30명
합계		277명

(별표 2) 수여학위

(2016년 입학자)

학 부	전 공	수여학위	
신 학 부	신학전공(주간)	신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주간)	ㅁ하니	
시외국시의구	국제사회복지학전공(주간)	문학사	
	경영정보학전공(주간)		
경 영 학 부	경영학전공(주간)	경영학사	
	세무회계학전공(주간)		
	피아노전공(주간)		
음 악 학 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주간)	음악학사	
	뉴미디어음악전공(주간)		
외국어학부	영어전공(주간)	문학사	
<u> </u>	중국어전공(주간)	[문학자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아동복지학전공(주간)	문학사	
VIO크시O급급니릭T	상담심리학전공(주간)	[포릭자	
간호학부	간호학전공(주간)	간호학사	
식품과학부	식품과학전공(주간)	이학사	

(2017-2018년 입학자)

계열	학과	수여학위
	신학과	신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이무지하게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영학사
	빅데이터경영학과	경영정보학사
	G2국제어학과	문학사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간호학사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음악학사

(2019년 이후 입학자)

계열	학과	수여학위
	신학과	신학사
이무사하게여	G2빅데이터경영학과	G2경영학사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간호학사
사연파악제될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예체능계열	음악콘텐츠학과	음악학사

별표 3) 융합산업학부 입학정원 (2018년 이전 입학자)

과정	학 과 명	입학정원
승니	시청보지하고	편입 20명
학사	사회복지학과	신입 20명
학사	웨딩파티산업경영학과	편입 20명
의사	제공파니인급경공목자	신입 20명
승니	미용예술경영학과	편입 20명
학사	미중에 출상 중위되	신입 20명
학사	산업경영학과	편입 20명
의사	인명성하기자	신입 20명
학사	복지상담학과	편입 20명
의사	국사영급력과	신입 20명
학사	스 도하고	편입 40명
= 1/1	아동학과	신입 40명

(2019년 입학자)

과정	학 과 명	입학정원
학사	사회복지학과	신입 15명
학사	산업경영학과	신입 15명
학사	아동학과	신입 25명

(2020년 입학자)

과정	학 과 명	입학정원
학사	사회복지학과	신입 15명
학사	산업경영학과	신입 6명
학사	아동학과	신입 18명

(2021년 입학자)

과정	학 과 명	입학정원
학사	사회복지학과	신입 15명
학사	산업경영학과	신입 6명
학사	아동학과	신입 15명

(2022년 이후 입학자)

과정	학 과 명	입학정원	비고
학사	산업경영학과	신입 6명	
학사	아동가족복지학과	신입 22명	

별표 4) 융합산업학부 수여학위

과정	학 과 명	수여학위
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학사	웨딩플래너경영학과	웨딩경영학사
목사[웨딩파티산업경영학과	제경경하
학사	미용예술경영학과	미용경영학사
학사	산업경영학과	경영학사
학사	복지상담학과	문학사
학사	아동학과	문학사

별표 5) 학점은행제 수여학위

학 위	전공	수여학위
학사	신학 전공	신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행정학사
	실용음악학 전공	음악학사
	아동학 전공	문학사

서식1)

제 0000-000 호

학 위 증

성 명: 0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00전 공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00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복수전공; 복수학위명;

부전공;

0000년 00월 00일

케이씨대학교 총장 OO박사 O O O

학위등록번호 KC대OOO(학)OOO

제 0000-000호

학 위 증

성 명: 0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위의 학생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학칙 제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OO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OO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케이씨대학교 총장 00박사 O O O

학위등록번호 KC대-학점-0000-000

서식3)

제 0000 - 000호

학위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

세부전공:

학 위:

졸업 년월일 :

학위등록번호: KC대-학점-20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학칙 제85조에 따라 위의 학위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0000년 00월 00일

케이씨대학교 총 장

排	1000- ±	성 적 증 명 서									
įŽ.			25			8.6	報報				
10		421	위면			학위	목번호				
E.	28 # 22	412 23	원수년활	구분	23 年 日	학교 설명	지수년회	구함	2 4 2	학교 보적	제수년활
	(B)(E)	(古根((中)			特殊空景研集性景	を会済者 ()	=1				
				-							
					HOW I	€ 0(¢)					
					体性	(4)					
					年年秋日度	MWM 33					
				-	목학학대회 사람은	2 24221	101				
				-							
				-							
-	건성통수	_			主机料料 型	-		7,000	FO 0 010 U.D.		TES STATE OF THE
100	전공선학				66268		/45	학점인정 통해 찬한 법률 제922만 및 학에 제 91조에 때 위의 사실을 운영합니다. 1000 : 00 : 00 : 00 : 기계이뭐대학교 총장			E M SP 基础 DF D
1	2 9				製品の自		/ 100.				
	일반선택	445									

케이씨대학교학칙시행세칙

제1장 목 적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케이씨대학교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기등록

- 제 2 조 (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하다
 - ② 학기는 1학기, 2학기와 여름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계절학기로 구분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 조 (계절학기) ① 계절학기는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3주간씩으로 하다
 - ② 계절학기는 6학점(6시간)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
 - ③ 계절학기의 과목개설은 각 학부 또는 과목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수강신청인원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 ④ 계절학기에는 어학현지실습 등의 특별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⑤ 계절학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4 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한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학생의 자격을 얻는다
 - ②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수강학점이 17학점 미만인 자)의 등록금 은 학점당 당해학기 등록금의 17분의 1로 계산하고, 계절학기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으로 나눈다.
- 제 4 조의 2 (학업연장자의 등록) ①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하는 학생의 등록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1.수강학점이 1학점이상 3학점이하: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 2.수강학점이 4학점이상 6학점이하: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 3.수강학점이 7학점이상 9학점이하: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4.수강학점 10학점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5.Pass과목만 등록 : 당해학기 수업료의 1/17 해당액

- ②조기졸업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PASS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의 등록은 제 1항의 5호에 따른다.
- 제 4 조의 3 (등록금분할납부) 학칙 제61조의 2에 의거 분할납부를 시행하며 다음에 따른다.
 - ① 삭제
 - ②분할납부 신청한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
 - ③ 분할납부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 휴학처리하며, 직권 휴학 시 당해 학기 성적은 당연 취소된다.

제 3 장 수강신청

- 제 5 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 중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수할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과목선택은 해당학부 학년의 개설과목 중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양 선택, 전공선택 순으로 선택하되, 하급학년의 미취득 과목을 우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4) 수강신청과목의 정정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 ⑤ 수강신청한 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과목낙제가 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⑥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지된 과목을 수강 또는 재수강하고 자 하는 자는 학과(부)장 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대치(면제)과목을 신청하 여 수강을 대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⑦ 어학 또는 실기실습 과목의 특성상 기 취득한 자격 또는 어학성적이 월등하여 해당과목의 수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와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대치(면제)과목을 신청하여 수강을 대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⑧ 수강신청은 해당학년도 학생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은 잔여석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 제 5 조의 2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① 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교수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수강사실을 반드시 개강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전 신고된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 교무처에 보고한다
- ④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을 F 처리하고, 해당 교수에게 주의 및 경고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시험 및 성적관리와 관련된 성적평가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6 조 (수강학점 제한) ① 수강학점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19학점(간호학과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6학점(간호학과는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과 4학년은 최저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계절학기는 6학점(6시간)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단. 대학생활과 자기이해 과목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추가하여 수강신청 할수 있다.
 - ⑤ 간호학과 소속 직전학기 전공 2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⑥ 이러닝강좌는 매 학기당 6학점(6시간)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졸업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이러닝강좌로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 제 7 조 (수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 ① 수강신청한 과목의 변경은 정해진 수 강신청과목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확인, 변경하여 야 한다
 - ② 수강신청과목의 폐강 또는 수강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에 수 강신청과목 변경을 할 수 없을 시는 즉시 교무과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③수강신청은 전공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기 간에 학사 인터라넷을 통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④ ①, ② ③항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수강학점 미취득 또는 과목낙제는 학생의 책임으로 한다.
- 제 8 조 (수강신청과목 포기) 수강신청과목의 포기는 매학기 개강 후 5주 이내에 담당교수의 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시험, 성적, 추가시험, 재수강

- 제 9 조 (시험) 교과목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① 삭제
 - ② 삭제
- 제 10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평가는 이를 달 리할 수 있다.)

등급	평점	수강학생 비율(상대평가)			
ОH	7 E	교양과목	전공과목		
A +, A 0 B +, B 0 C +, C 0 D +, D 0	4 . 5, 4 . 0 3 . 5, 3 . 0 2 . 5, 2 . 0 1 . 5, 1 . 0 0 . 0	0 - 30 % 0 - 70 % 0 - 100% 0 - 100% 0 - 100 %	0 - 35 % 0 - 80 % 0 - 100% 0 - 100% 0 - 100 %		

(단. PASS과목, 실습·실기과목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성적평가는 출석, 중간시험, 학기말시험, 과제물, 실기시험 등의 성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③ ②항의 성적합산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급제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F)로 한다.
- ④ 사무적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으로 판명되었을 시는 이를 취소한다
- ⑤ 출석으로 인정된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 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험, 과제, 대체학습을 근거로 정상수업 참여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하며, 조기취업자의 성적은 AO를 초과할 수 없다.
- 제 11 조 (시험기간중 유고시 신고) ①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중 하나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시 과목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교무과에 신고서 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이 되면 기 응시한 시험 성적의 80%를 인 정받는다.
 - ② 시험유고신고는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추가시험) 추가시험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증빙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했을 시는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 2. 입대, 병무소집으로 응시하지 못할 시는 소집영장이나 입대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불응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4. 그 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치 못했을 때 또는 과락을 당해 학교 의 특별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5.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응시자격을 허락 받은 후 과목당 소정의 고사료를 기획사무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 6. 추가시험으로는 B+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 제 13조 (성적확인 및 열람) ① 매학기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학사인트라넷을 통하여 당해학기 학점취득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성적열람은 학사인트라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제 14조 (이의 신청) ① 성적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③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적확인, 이의신청 및 성적 정정을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학점정정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학점정정사유서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경의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각서를 첨부하여 성적확인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4주이내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 ⑤ 교과목 담당교수의 학점정정사유서와 그 결과는 성적보고서에 반드시이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 ⑥ 이의신청 기간 후 성적 정정으로 인하여 장학금 수혜기준학점에 도달하여도 모든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등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제 15조 (학적부 등재) ① 성적의 학적부 등재는 등급으로 하며, 평균평점의 계산은 각 과목의 평점에 학점수를 곱하여 이를 합산한 후 신청학점의 합계로 나눈 값으로 한다.
 - ② 수강신청과목 중 낙제과목도 평점평균 계산 시 포함하며, 학적부에 기 재한다.
- 제 16조 (학사경고) ①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표의 이수학기별 성적(평균평점)에 미달자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미만)

이수학기	1학기 - 4학기	5학기 이상
평균평점	1.50	2.00

- ② 직전학기 3개 교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간호학과는 2개 교과목 이상 낙제(F)점수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
- ③ 학사경고가 연속 3회 이상인 자는 제적한다. 단, 학업증진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적을 면할 수 있다.
- ④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단. 대학생활과 자기이해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 ⑤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학생상담센터 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 ⑥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학사경고를 면한다.

제16-1조 (유급) ① 삭제

제 17조 (재수강) ① 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급 이하일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1회에 한하나,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 ② 낙제(F)과목이 필수과목이면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하고, 선택과목 인 경우는 해당과목을 재수강하거나 타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③ 재수강은 수강신청한도 학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는 학기당 6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 ④ 재수강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재수강시 성적은 A까지 취득할수 있다.
- ⑤ 재수강 희망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학사인트라넷으로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장 결석처리

- 제 18조 (출석미달에 의한 학점취소) 1학기 중 1/3이상 결석한 과목은 출석미 달로 과목낙제가 된다. 이때 비록 급제성적을 얻었을지라도 학기말 제출 된 해당과목 출석부에 의하여 교무처에서 직권으로 성적을 취소한다.
- 제 19조 (결석) ① 결석이라 함은 수업시간 (학교행사도 포함)에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퇴실하거나 불참하는 것을 결석이라 한다.
 - ② 지각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 20조 (유고결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자가 유고결 석계와 증빙서류를 교무과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락을 얻으면 출석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조기취업 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수업일수의 1/3 이내로 한다.
 -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5일 이내
 - 2.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하여 병무청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있을 때의 소요되는 일 수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학생으로서 교무처장이 인정한 때
 - 4. 본인의 질병사고난 상해로 인한 입원했을 때의 소요일 수
 - 5.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하여 교무처장의 사전 심사 및 허가된 기간 동안
- 6.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및 의심자로 자가 격리 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평상시-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제출, 국가위기 상황-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대체가능), 감염병 밀접 접촉자로서 공공 지자체의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학생이 이를 증빙하는 경우
 - 7. 기타 총장이 허락할 때
- 제 21 조 (유고결석계 제출) ① 본규정 제 2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유교결석계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제 6 장 재입학, 편입학

제 22 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학칙 제19조에 의하여 허락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와 사유서, 성적증명서, 학적부사본, 병적 확인서 및 서약서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 제출해야 한다.
- ⑤ 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부)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⑥ 재입학은 계열별 입학정원을 포함한 입학정원(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정원은 정원 내·외로 구분한다.) 단, 간호학과 재입학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 ①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 또는 학과의 재입학은 총장이 동일 또는 유사학부(과)에 허가한다.
 - ⑧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학은 취소될 수 있다.
 - (5) 재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 ⑥ 재입학 인원은 주·야간 및 정원 내·외로 구분한다.
 - ①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 또는 학과의 재입학은 총장이 동일 또는 유 사 학부(과)에 허가한다.
- 제 23조 (재 입학자 학점인정) ① 재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 ② ①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적기간이 오래되어 추가학점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취득학점의 1/3이내에서 추가학점취득을 요구할수 있다.
- 제 24조 (편 입학) ① 편입학은 학칙 제16, 17조에 의하여 모집인원을 정하여 선발한다.
 - ② 편입학자의 학점취득은 <별표 3> 편입학 이수학점표에 요구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 총장은 학과(부)장의 요청에 따라 이수학점을 경감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자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동일 또는 유사과목은 학과(부)장의 허락을 받아 타 과목으로 대치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 7 장 전과(부),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제 25조 (전과(부)) ① 본 대학에 입학하여 1년 이상 수료한 학생이 전출학과 (부) 입학정원 중 20%, 전입학과(부) 입학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전과

- (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전과(부)를 허락할 수 있다.
- ② 주, 야간 학부의 전과(부)는 해당학과(부)에 제적자가 있을 경우 허락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전과(부)는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2주전부터 1주일간 전과(부)신청서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신청한다.
- ⑤ 전과(부)는 이를 심사하여 총장이 허락한다. 단, 필요시 학력 및 면접 시험을 실시 할 수도 있다.
- ⑥ 전과(부)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학과(부)에서 이수한 과목중 동일과목이 있을 때는 그 과목의 성적을 인정한다.
- 제 26조 (부전공) ① 본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을 원할 시는 매학기 수강신 청기간 2주전부터 1주일간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 (부)의 부전공은 허락하지 않는다.
 - ② 삭제
 - ③ 부전공이수는 이를 심사하여 총장이 허락한다.
 - ④ 부전공이수는 신청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 삭제
- ⑥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 시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 사실을 기재한다.
- 제 27조 (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① 복수전공 또는 연계·융합전공 신청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2주전부터 1주일간 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부) 의 복수전공은 허락하지 않는다.
 - ② 삭제
 - ③ 복수전공 또는 연계·융합전공 이수는 이를 심사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 ④ 복수전공 또는 연계·융합전공은 본인소속과 다른 학과 또는 전공에서 교과과정상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별표 2>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복수전공 또는 연계·융합전공 이수자는 졸업 시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제2전공으로 기재한다.
- 제 28 조 (교직과정) 삭제

제 8 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 제 29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중 통산 3회까지 이를 허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할 시는 총장은 허가할 수 있다.
 - ③ 휴학은 개강후 5주 이전까지 허가하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휴학

- 사유가 발생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1/2이내에서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입대휴학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일 경우와 군 복무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휴학 사유가 질병일 경우 진단서를 휴학 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총장이 인정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
- 제 30 조 (일반휴학) 삭제
- 제 31 조 (군 입대 휴학) ① 군 입대 휴학은 휴학원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일반 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 ①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 제 32 조 (휴학계 제출) ① 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보호자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원서를 제출치 않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미등록 휴학자로 간주하며, 휴학기간만료 전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 33조 (휴학과 등록금) ①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복학할 경우는 복학학기 등록금의 증액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 ② ①항의 경우 휴학당시 등록된 학기의 수강과목 중 1과목이라도 학점 이 취득된 경우에는 복학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4조 (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할 시는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휴학자가 개강일로부터 5주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복학을 원할 시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9 장 졸 업

- 제 35조 (졸업의 요건) ① 4년(8학기, 제3학년 편입학자는 4학기, 제4학년 편입학자는 2학기) 이상 등록 또는 제6조 4항에 따라 초과학점이수를 하고 6학기 이상 등록하여 130학점(편입학 인정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한 자
 - ② 전학년 평균평점이 2.0(조기졸업은 4.20) 이상인자
 - ③ 학칙 제48조에 의한 졸업인증을 받은 자
 - ④ 경건훈련학점 6회 P를 취득한 자(신학과 7회)
 - ⑤ 신학과는 목회실습 6회 P를 취득한 자
 - ⑥ 위 4항, 5항의 경우 조기졸업자는 각각 1회씩 감한다.

- (7) 졸업논문 또는 졸업연주에 합격한 자
- 제35조의 2(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전공분야를 대상으로 연구 발표케 하고 P학점을 부여한다. 단, 음악학과 학생은 졸업연주에 합격하여야 하며 P학점을 부여한다.
 - ②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수료로 인정하고, 재학연한 내에 재심을 받을 수 있다.
 - ③ 각 학과는 교육의 여건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자격증 취득 등으로 졸업 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 ④ 졸업종합시험은 각 학과 교수회의에서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하며 합격 기준은 학과별로 정한다.
 - ⑤ 자격증은 입학 이후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인정 자격증의 종류 및 기준은 학과별로 별도로 정한다.
- 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취득사실을 해당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3(졸업논문 지도교수) ① 졸업논문제출을 원하는 학생은 최종 졸업 학기 초에 졸업논문 제목을 정하여 졸업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배정한다.
 - ③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한 명 이상의 교수가 심사하여 판정한다. 단, 전공의 특성상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배정된 논문지도교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지도교수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제 36조 (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교과별 기준학점은 <별표1>과 같다.
 - ② 계약학과의 학과별 졸업학점 학점은 <별표4>과 같다.
 - ③ 학칙 제40조의3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 복수전공을 위한 학점이수표의 복수전공학점을 포함하여 7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37 조 삭제

제 10 장 제증명,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 제 38조 (증명서 발급) ① 제 증명의 발급부서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교무처: 재학·휴학·성적·졸업·졸업예정·재적·수료·교직이수예정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
 - 2. 학생처: 취업추천서, 장학관련 추천서, 장학금 수혜(비수혜)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

- 3. 사무처: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기타 관련증명서
- ② 제 증명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9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기재사항이 서로 달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초본) 혹은 기본증명 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0 조 (기재변경 내용) ① 개명
 - ② 생년월일 변경 ③ 본적지 변경

제 11 장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제 41 조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부터 9조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부 칙

- ① (경과조치) 본 내규 제 15조는 1989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부터 해당된다
 - ② (시 행 일) 본 내규는 1986년 4월 2일부터 실시한다.
 - ③ 본 개정 내규는 198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시행세칙은 199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시행세칙은 199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 제13조 2항, 제25조 3항은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한다
- ③ 본 규정 제29조의 1 ②항 및 제29조의 2 ②항은 1997학년도 입학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35조는 1999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 용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2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8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까지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3 조 2항 및 제3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학점으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1) 제4조 2항, 4조의2 1항 5호, 35조 1항, 3항, 36조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2) 위 2항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4조 2항, 4조의2 1항 5호는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자에게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3) 별표4의 편입학이수학점표는 2014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1) 별표3의 편입학 이수학점표는 2014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1) 별표1. 별표2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2) 별표3의 편입학 이수학점표는 2014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1) 제4조의 3 1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2) 제17조 1항, 3항.4항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한다.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본 규정 17조(재수강)은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부터 적용하다.
- ③ (경과조체 2) 본 규정 제35조 ④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 하다
- ④ (경과조치 3) 본 규정 별표1,별표2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하다
- (5) (경과조치 4) 본 규정 별표3은 2016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별표1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1) 본 규정 제35조 ④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2) 본 규정 별표1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3) 본 규정 별표3은 2016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 ⑤ (경과조치4) 별표 4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본 규정 제20조 ⑤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2) 본 규정 제35조 ⑤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본 규정 제16조 ①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8년 1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 별표1. 2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본 규정 별표3은 2018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24조(편 입학) 제2항은 2019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 시행세칙 제27조(복수전공) 제4항, 제35조 4호는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표

				교	양			전	공		
학부	경건 훈련		필	필수 교양		합계	기본	기본전공		합계	졸업 이수
	[판단	21	특화	토대	선택 (핵심)	합계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합계	학점
신학과	7회	6회	3	8	27	38	18	21	21	60	130
G2빅데이터경영학과	6회		5	8	25	38	12	27	21	60	130
사회복지학과	6회		5	8	25	38	0	39	21	60	130
상담심리학과	6회		5	8	25	38	0	45	25	70	130
음악콘텐츠학과	6회		5	8	25	38	16	23	21	60	130
간호학과	6회		5	8	12	25	98	7	_	105	130
식품영양학과	6회		5	8	25	38	9	43	20	72	130

<별표 2> 복수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표

학부	전공				
러구	필수	선택	계		
신학과	18	21	39		
G2빅데이터경영학과	12	27	39		
사회복지학과	0	39	39		
상담심리학과	0	45	45		
음악콘텐츠학과	8	31	39		
식품영양학과	9	43	52		

^{*} 음악콘텐츠학과 복수전공자는 전공필수 최소 4학기(8학점)이상 이수

<별표 3> 편입학 이수학점표

	경건	목회		전 공		졸업이	
학부	훈련	실습	필수	선택	계	수학점	지정과목
신학과	3회	2회	18	21	39	65	
경영학과	2회		6	33	39	65	
빅데이터경영학과	2회		9	30	39	65	교양토대
사회복지학과	2회		0	39	39	65	[기독교의이해]
상담심리학과	2회		0	39	39	65	또는 [성서의
G2국제어학과	2회		16	23	39	65	이해] 필수 이수
음악콘텐츠학과	2회		8	31	39	65	
간호학과	2회		90	3	93	95	
식품영양학과	2회		6	33	39	65	

[※] 간호학과 4학년 편입생은 31학점이상 이수해야 함(예배1학기, 기독교의 이해 또는 성서의 이해 중 택1, 간호학과 4학년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을 제외한 전공필수와 선택 포함)

<별표 4> 융합산업학부 학과별 졸업학점 (2022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과(전공)	과정	교양	전공	일반선택	합계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	22	38	70	130
복지상담학과	학사과정	22	38	70	130
산업경영학과	학사과정	22	38	70	130
아동가족복지학과	학사과정	22	38	70	130
아동학과	학사과정	22	38	70	130

케이씨대학교대학원학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학계, 사회 및 교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심오한 학문을 연구 개발하고 창조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대학원) 본 대학원에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둔다.
- 제3조(과정) 각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일반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의2(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 학위종별 설치·운영 등) ① 대학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6과 같다.
 -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케이씨대학교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조(정원) 각 대학원의 학과 및 정원은 별표(1)와 같다.

제2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편입학, 전과 및 전공변경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 1.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2. 법령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 3. 삭제
- ② 박사과정
 - 1.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2. 법령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학생
- 제7조(교직원 학생) 본 대학교직원 중 각 대학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및 직원은 입학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재학기간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전형방법) ① 각 대학원의 과정별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과정 : 서류전형, 면접
 - 2. 박사과정 : 서류전형, 면접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1. 외국인 학생
 - 2. 박사과정 지원자 중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특별전형대 상자로 추천한 자
 - 3. 외국인 지원자의 특별전형은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실시한다.
 - ③ 선발고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입학) ① 제적 또는 자퇴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자에게 제적 또는 자퇴하기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 및 수료

제11조(전과 및 전공변경)

- ① 전과는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간 상호 동일 학위(석사, 박사)과 정 내에서 가능하며,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한하 여 소속 변경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전과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의 3차 학기 이내에

-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전과, 전공변경신청서
 - 2. 학업성적표
- 제1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별표 (2)와 같다.
 - ② 교육대학원은 학점인정, 초과학점취득 등에 의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기간은 1학기로 한다.
- 제13조(수업일수)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14조(수업형태) 일반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이수학점)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다.
- 제1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O	4.0	90-94
B+	3.5	85-89
В0	3.0	80-84
C+	2.5	75-79
CO	2.0	70-74
F	0.0	69이하

- ② P(합격): 실기, 실습, 논문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하나 성적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8조(학점인정)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목의 학점
 - ② 본 대학원과 학점교환제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③ 삭제
 - ④ 편입생의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의 학점

제19조(선수과목) 각 대학원 과정에서 사전에 하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 게 할 필요시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학위수여) ① 삭제

- ② 각 과정별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14조의 이수학점과 각 대학원 별로 규정한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과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총장은 별표(4)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③ 2항의 학위수여자에게는 별지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 ④ 총장은 국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과 국가교계·지역사회 발전 등 이에 준하는 특별한 공적 이 큰 각 1호의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로 <별표5>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구현한 자.
 - 2. 인류평화와 복리증진에 공헌한 자.
 - 3. 학술진흥과 인류문화창달에 기여한 자.
 - 4.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학발전에 공헌한 자.
 - 5.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 ⑤ 4항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자에게는 <별지4>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⑥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1조(논문제출자격) ① 각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각 대학원 별로 규정한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각 대학원 석사과정은 소정의 추가학점취득으로 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격시험) 각 대학원의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별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수료) ① 각 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수료의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③ 수료 후 재학연한 내에 학위수여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2와 같은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 제24조(등록) ① 본 대학원의 재학생과 신입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을 납입하고, 수강신청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취득학점 미달에 의한 수업연한 초과 시에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5조(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 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 1회(2학기)에 한하여 휴학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 ③ 군복무 및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26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30일 이내로 한다.
- 제27조(제적) ① 다음의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한다.
 - 1.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학력부실 및 학력 위조자.
 - 4. 신체 및 정신질환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제2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연구생, 공개강좌, 위탁교육

- 제29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특정교과목 또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수강을 원하는 자는 연구생으로 둘 수 있다.
 - ② 연구생은 석사과정은 학사 또는 동등학력 이상, 박사과정은 석사학 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학능력이 있는 자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생에게는 별지3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0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연구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서 또는 자격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31조(위탁교육) 본교의 소속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 한국교역자회에서 추 천하는 학생을 다음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신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 1. 대상: 그리스도의교회 한국교역자회에서 신학교육을 추천 받은 자.
 - 2. 전형 :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3. 등록금 : 소정의 기본 등록금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한다.
 - 4. 과정이수: 과정이수자에게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상벌

- 제32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학금내규로 정한다.
- 제33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 위원회

- 제34조(직제)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 괄한다. 일반대학원장은 각 대학원의 업무를 조정한다.
- 제35조(교학과) 각 대학원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학과를 두며 필 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 제36조(대학원위원회)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이 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 제3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8조(위원회의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폐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장학, 연구비의 지급 및 보조에 관한 사항
 - 5.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9조(의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장 삭제

제9장 기타

- 제47조(준용)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8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49조(학칙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종전학칙의 폐지) 종전 그리스도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학칙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학칙 별표3의 박사과정 이수학점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자가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또는 하급학년으로 복학할 시에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의 제8장 제40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의 제3조의2와 별표6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3조 2항 별표6 개정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들의 소속대학원은 본 개정학칙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3조 2항 별표6 개정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 학생들의 소속 대학원 수여학위는 본 개정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0조 2항 개정 이전에 입학자도 본 개정 학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11조의 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별표6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자)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대학원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명	과 정	학 과	전 공	입학 정원	비고
			구약신학		
			신약신학		
		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박사학위과정		실천신학	5명	
			국제경영		
		그그비과신희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학	호텔 • 관광경영		
OLHERIŞLOL			글로벌문화예술경영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구약신학		
			신약신학		
		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22명	
			국제경영		
		¬	글로벌마케팅		
		글로벌경영학	호텔 • 관광경영		
			글로벌문화예술경영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학	신학	15명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학	상담심리	15명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15명	
계				72명	

별표 2] 각대학원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대학원명	과 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비고
	박사학위과정	3년	7년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4년/	
	격사력치관경	2년6개월(국제경영)	5년(국제경영)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3년	5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6개월	5년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4년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	3년	7년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2년	4년	

별표 3] 각 대학원별 이수학점

대학원명	과 정	이수학점	논문	비고
	박사학위과정(신학)	36학점이상	9학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글로벌경영)	39학점이상	9억점	
글린네작편	석사학위과정(신학)	24학점이상	6학점	
	석사학위과정(글로벌경영)	27/36(국제경영)학점이상	[6월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87학점이상	6학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	6학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	6학점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	36학점이상	9학점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	6학점	

별표 4] 대학원별 수여학위 종별

대학원명	과 정	학 과	학 위 명	비고
	비디를	신학	신학박사(Ph.D.)	
이비네티	박사학위과정	글로벌경영학	경영학박사(Ph.D.)	
일반대학원		신학	신학석사(Th.M.)	
	석사학위과정	글로벌경영학	경영학석사(M.A.)	
신학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학	신학석사(M.Div.)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학	교육학석사(M.Ed.)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M.S.W.)	

별표 5〕 명예박사 수여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위명	비고
	신학박사	
	목회학박사	
일반대학원	철학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별표 6] 계약학과 학과별 모집인원 및 수여학위

대학원명	학 과	전 공	입학정원	수여학위	비고
		사회복지학			
일반대학원	상담복지신학과	상담심리학	10명	철학박사	
		기독교학			
[의하]]고부[하] 1	사항보기하고	사회복지학	15명	사회목지한석사	
사회목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	138		
파오대하이	ストニトストコーラトコー	상담심리학	15명	교으하셔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이동기족상담학	108	교육학석사	

케이씨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최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케이씨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규정한 학사업 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 제 2 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1.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세례 받은 자
 - 3. 삭제
 -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1.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2. 세례 받은 자
 - ③ 신학대학원
 - 1.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2. 세례 받은 자
 - ④ 사회복지대학원
 - 1.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⑤ 교육대학원
 - 1.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2. 삭제
 - 3. 삭제
- 제 3 조 (입학지원서류)
 - ① 박사과정
 - 1. 입학지원서 1부
 -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3. 삭제
 - 4. 삭제
 - 5. 신앙진술서 1부
 - 6. 연구계획서 1부
 - 7. 이력서 1부
 - 8.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석사과정

- 1. 입학지원서 1부
-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3. 삭제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삭제
- 6. 신앙진술서(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1부
- 제 4 조 (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① 각 과정별 일반전형은 다음과 같다.
 - 1. 박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
 - 2. 석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
 - ② 본 대학원의 특별전형은 다음과 같다.
 - 1. 외국인 지원자
 - 2. 박사과정에 지원한 현직 대학전임교원, 학술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기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 위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5 조 (입학허가 및 취소) ① 본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등록 금을 납입한 자는 입학을 허가한다.
 - ② 위1항에 의하여 입학한 후에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 6 조 (편입학) ① 본 대학원과 동등이상의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게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서 본 대학원의 교육 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의 학점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수학기와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편입학자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수업연한과 졸업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제 7 조 (재입학) ① 본 대학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의하여 퇴학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수업료, 기타 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재학연한만료로 수료된 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며 재학연한은 재입학한 학기부터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 이내로 한다.
- 제 8 조 (재입학구비서류) ① 재입학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입학청원서 1부

- 2. 성적증명서 1부
- 3. 본인 각서 1부
- 제 9 조 (재입학자 학점인정) ① 재입학자가 재학당시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재입학 학기는 인정받은 학점 수에 따라 학기를 인정한다.

제 3 장 등 록

- 제 10 조 (등록) ① 본 대학원의 재학생과 신입생은 소정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등록은 등록금의 납입과 수강과목신청을 필함으로서 이루어진다.
 - ③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할 수 있다.
 - ④ 등록금의 납부와 환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 제 11 조 (수강신청)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① 매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기간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신청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지정된 수강과목 확인 및 정정기간에 필히 수강신청한 과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 12 조 (수강학점제한) 각 대학원 과정별 한 학기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9학점
 -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9학점
 - ③ 신학대학원 15학점
 - 4 사회복지대학원 6학점
 - ⑤ 교육대학원 6학점
 - ⑥ 특수대학원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수료를 원하는 학생은 한학기에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신청한 학점에 대한 수업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 ① 신학대학원 전공필수 기초성서원어과목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 복지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수과목은 수강학점제한에 적용되지 않는 다.
- 제 13 조(재수강) ① 성적이 'C'급 이하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② 재수강과목은 수강신청시 반드시 재수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수강 표시를 하지 않은 과목은 인정할 수 없다.
 - ③ 재수강과목의 학점취득과 동시에 종전의 학점은 삭제한다.
 - ④ 재수강과목은 본 세칙 제12조의 수강학점제한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학점등록) ① 수학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고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학점등록이 본 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수강학점제한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점등록은 1학점 당 해당학기 등록금을 각 대학원 과정별 수강학점 제한 한도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③ 사회복지대학원과 교육대학원 학생 중에서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의 초과취득학점 등록은 위 2항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수과목 취득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수학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종합시험 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 1. 졸업종합시험 : 해당학기 등록금의 1/10을 납입하여야 한다.
 - 2. 연구등록 : 해당학기 등록금의 1/10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육과정

- 제 15 조 (이수학점) 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한 각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 은 별표1과 같다
- 제 16 조 (교육과정) 각 대학원의 전공별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 제 17 조 (과목개설) ① 각 전공주임교수는 종강 1개월 전까지 다음 학기 개설예정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별 교수회의에서 심의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과목을 확정한다.
 - ② 과목당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과목, 신학강독, 논문, 실습 등의 과목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18 조 (선수과목) ① 각 대학원에서 전공의 변경,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학생에게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취득한 선수과목 학점과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 19 조 (성적)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0	4.0	90-94
B+	3.5	85-89
В0	3.0	80-84
C+	2.5	75-79
C0	2.0	70-74
F	0.0	69이하

- ② P(합격) : 실기, 실습, 논문 등의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하나 성적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확 정된다
- ④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과오처리의 경우 담당 교수가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 한 경우에 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⑤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학생의 성적을 보류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개강 2주전까지 성적을 확정하되 'B'급 이하의 성적만을 줄수 있다. 이때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F'로 처리한다.
- (6) 'F'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균 계산에 포함한다.
- (7) 'F' 성적은 재수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없다.
- ⑧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된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제 20 조 (성적의 취소) 다음의 경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성적 전부
 - ②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③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과목의 성적
 - ④ 제12조에 규정한 수강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의 성적
 - ⑤ 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부과된 성적
- 제 21 조 (학점인정) 본 대학원의 학점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 ①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목의 'B+' 이상 성적을 취득한 학점
 - ②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대학원간의 학점교환 실시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 ③ 편입생의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의 학점
 - ④ 신학대학원의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은 학부에서 'B+'이상 취득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 22 조 (시험) 시험은 성적평가를 위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와 학위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 제 23 조 (출석) 학생은 학점취득을 위하여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1/3 이상 결석한 과목은 출석미달로 'F' 처리한다.

제 5 장 학 적

제 24 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1

-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경우 1회(2학기)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휴학은 매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미 등록자는 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군 입대 후 3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교학과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⑤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여 휴학사유와 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⑥ 군복무 및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2항의 휴 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휴학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을 하고 개강 후 5주가 지난 이후에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단, 휴학사유가 군입대, 출산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일수의 1/3 이상을 수강할 수 없다는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⑧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25 조 (복학) ① 휴학하였던 자가 휴학기간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학기초 등록기간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을 하여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제 26 조 (제적)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 ①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아니한 자
 - ② 휴학기간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③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 ④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
- 제 27 조 (자퇴) 본 대학원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28 조 (징계) ①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며, 경징계는 경고, 주의, 훈계로 하며, 중징계는 정학 또는 퇴학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시험 부정행위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 1.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 2.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 3.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훼손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자
 - 4.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고 결의한 자

제 6 장 학사지도

- 제 29 조 (전공주임교수) ① 전공주임교수는 해당전공의 석사과정과 박사과 정의 교육과정 설정과 변경, 교과목 개설, 해당 전공학생의 학사지도 등을 관장한다.
 - ②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신학대학원과 전공주임교수가 위촉되지 아니한 전공의 학생지도는 해당 대학원장이 이를 대신한다.
- 제 30 조 (지도교수) ① 박사과정 학생의 학사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 ② 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 31 조 (논문지도교수배정)
 - ① 박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논문지도교수를 겸한다. 단, 지도교수가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임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 ③ 배정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④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외되며, 예외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논문연구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비는 매학기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졸업시험

- 제 32 조 (외국어시험)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① 박사과정 영어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외국어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⑤ 외국어시험은 입학한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회수에 제한 을 두지 않는다.
- 제 33 조 (졸업종합시험) ① 각 대학원 괴정별 졸업종합시험 괴목은 별표2와 같다.
 - ② 박사과정 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2. 과정이수학점 30/3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③ 석사과정 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신학대학원은 4학기 이상)
 - 2. 과정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자.
 - 3. 삭제
- ④ 졸업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다

제 8 장 학위청구논문

- 제 34 조 (논문연구계획서) 본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① 박사과정
 - 1.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2. 과정이수학점 30/3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4. 삭제
 - 5.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석사과정
 - 1.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신학대학원은 5학기 이상)
 - 2. 과정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자.(신학대학원은 60학점 이상)
 - 3.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 ③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논문의 제목(부제포함)
 - 2. 목차
 - 3. 연구방법
 - 4. 논문개요
 - 5.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
- 제 35 조 (논문제출자격) 본 대학원의 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과 같다.
 - ① 박사과정
 - 1.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2. 과정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4.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 학위청구논문 제목 및 개요의 허가를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 를 받은 자
 - ② 석사과정
 - 1.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

- 2. 과정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3. 외국어시험에 합격(면제)한 자
- 4.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 학위청구논문 제목 및 개요의 허가를 받은 자
- ③ 각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원하는 자는 본인전공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 중에서 2과목(6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학위청구논문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제 36 조 (논문초고제출)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논문초고 1부를 대학원교학 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원하는 자는 1학기는 3월 말, 2학기는 9월말까지 논문초고 1부는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 다
- 제 37 조 (논문심사신청) 본 세칙 제35조의 요건을 갖춘 자는 논문지도교수 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석사과정은 논문 3부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1학기는 5월말, 2학 기는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박사과정은 학위청구논문예비심사를 위하여 1학기는 5월말, 2학기는 11월말까지 논문3부를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정일까지 논문 5부를 소정의 심사료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시 반드시 논문 표절 예방 프로그램(카피킬러) 검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8 조 (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 정은 '예비논문심사'는 3인, '논문심사'는 5인으로 구성하되, 박사과정 '논문심사'의 경우 심사위원 중에서 2인은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 한다.
 - ③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하며, 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위원 장이 될 수 없다.
- 제 39 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박사학위논문심사는 '예비논문심사'와 '논문심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되 '예비논문심사'에 합격한 논문에 대하여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문의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적절성, 창의성 등을 심사하며,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가를 판정한다.
 - ④ 논문심사에 필요할 시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 등을 제출케 할 수 있다.
 - ⑤ 학위논문의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제 40 조 (논문심사판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

성하여야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장이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 후 논문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41 조 (논문 내용 표절)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불법 적으로 인용하여 본인의 연구내용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위 눈문 작성 시에 표절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으며, 논문심사가 불합격 처리되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다.('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소 정양식'작성)
- 제 42 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①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표방법은 학회지, 국내외학술지, 정기간행물 게재, 학술세미나 발표. 단행본 발간. 기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한다.
- 제 43 조 (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각 심사위원이 인준한 인준서를 삽입하여 규정에 의하여 출판하고, 완성된 논문 5부를 하드바운드 (검정색)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4 조 (학위청구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① 판종: 가로 19cm.세로26.2cm
 - ② 제본형식: 페이퍼 바운드. 하드바운드(검정색)
 - ③ 표제인쇄방식 : 별지 양식 1.2.3.
 - ④ 논문인쇄방식(한글97)
 - 1. 여백 : 위 20. 아래 15. 왼쪽 25. 오른쪽 25
 - 2. 머리말 꼬리말 : 각 15
 - 3. 들여쓰기 3. 글자크기 11. 자간 3. 줄 간격 200%
 - ⑤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 1. 표제지(별지양식1)
 - 2. 속표지(별지양식2)
 - 3. 인준서(별지양식3)
 - 4. 목차
 - 5. 본문
 - 6. 참고도서 목록
 - 7. 부록 : 색인. 기타(있을 경우)
 - 8. 감사의 글(있을 경우)

제 9 장 학위수여

- 제 45 조 (학위수여자격)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업연한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② 과정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0 이상인 자

- ③ 외국어시험에 합격(면제)한 자
- 단 외국인 유학생(석,박사)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어학 능력 조건을 충족한 경우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한국어과정)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한국 능력시험'또는 대학원이 지정한 한국어 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고 단 박사과정의 경우 영어시험은 필수임, (영어과정)TOEFL iBT 80 (PBT 550, CBT 210)이나 TEPS 600이나 IELTS 5.5 이상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 또는 대학원이 지정한 영어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능력시험 면제)
- ④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⑤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 제 46 조 (졸업심사) 제45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졸업을 허락한다
- 제 47 조 (학위수여) ① 졸업심사에서 합격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은 별표3의 학위를 수여한다.
 - ②'학칙'제19조 ④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 1.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자를 승인 하고, 규정에 의한 학 위 증서를 수여한다. (단. 학위수여자를 이사장 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케이씨대학교 각 대학원장, 학부(과)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추천 할 수 있다.
- 3.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후보자의 이력서 및 공적조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대학원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후보자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5.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거처 총장에게 학위수여를 제청한다.
- 제 48 조 (학위수여 시기) ①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시행한다.
 -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 49 조 (학위수여취소)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학위과정 이수 중에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와 학위수여 후에라도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총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장 연구생, 외국인, 위탁생

- 제 50 조 (연구생) 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은 매 학기 개강 전까지 등록을 받으며, 제14조에 따라 등록

- 을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생은 지원대학원 과정별 수강제한학점의 1/2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제 51 조 (지원서류) 연구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구생지원서
 - 2. 출신대학 또는 대학원의 졸업. 성적증명서
 - 3. 담임목회자 추천서(신학대학원)
- 제 52 조 (외국인학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경우 정원 내·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2.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정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② 전항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외국인학생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입학지원서
 - 2. 학력 및 성적증명서(1항 2호 해당자는 관련증명서 전체)
 - 3. 외국인증빙서류 또는 해외거주증명서
- 제 53 조 (외국어강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에는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 제 54 조 (위탁생) 다음 각 항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② 그리스도의교회 한국교역자회에서 추천하는 위탁학생을 아래의 기준으로 선발하여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한다.
 - 1. 대상: 그리스도의교회 한국교역자회에서 신학교육을 위탁한 자.
 - 2. 전형 : 소정의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3. 등록금 : 소정의 기본 등록금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한다.
 - 4. 학점이수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기중에 각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대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11 장 기 타

- 제 55 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① 본 대학원 입학후 학적부의 기재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호적과 상이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삭제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의 폐지) 본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신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 석사학위청구논문 관계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본 세칙에 의하여 입학한 것으로 보고,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학칙 별표3의 박사과정 이수학점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자가 2006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또는 하급학년으로 복학할 시에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9 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21조 ④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자가 2012학년도 입학자와 동일 또는 하급학년으로 복학할 시에는 본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4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7조(학위수여) 별표3 개정 이전에 입학한 계약학과학생들의 소속대학원 학위명은 본 개정 세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35조 3항 개정이전 입학자도 본 개정 세칙 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9년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1년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표

대학	대학원명		전 공	이수학점	이수구분	비고
	박사과정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45학점	전공과목 21학전 선택과목 15학전 논 문 9학전 계 45학전	1
		글로벌 경영학	국제경영 글로벌마케팅 호텔 • 관광경영 글로벌문화(울경영	48학점	전공괴목 24학점 선택괴목 15학점 논 문 9학점 계 48학점	1
일반대학원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30학점	전공괴목 12학점 선택괴목 12학점 논문(2과목 선택)6학점 계 30학점	
	석사과정	석사과정	국제경영	42학점	전공과목 21학전 선택과목 15학점 논문(2과목 선택)6학점 계 42학점	5학기
			경영학	글로벌마케팅 호텔 • 관광경영 글로벌문화예술경영	33학점	전공괴목 15학점 선택과목 12학점 논문(2과목 선택)6학점 계 33학점
신학대학원	원	신학	신학	93학점	필수괴목 51학점 선택괴목 36학점 논문(2과목 선택) 6학점 계 98학점	1
교육대학	원	교육학	상담심리	30학점	전공괴목 24학점 논문(2과목 선택) 6학점 계 30학점	1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30학점	전공괴목 24학점 논문(2과목 선택) 6학점 계 30학점	
계약학과	박사과정	계약학과 싱담복자신학과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기독교학	45학점	전공과목 21학점 선택과목 15학점 논 문 9학점 계 4호학점	
계약학과		계약학과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아동가족상담학	30학점	전공괴목 24호점 논문(2과목 선택) 6호점 계 30호점	1
계약학과		계약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30학점	전공괴목 24학점 논문(2괴목 선택) 6 학점 계 30학점	1

[※] 박사과정 Tutorial과목은 3과목(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선택과목은 본인의 전공 외에 2개전공 이상에서 1과목 이상씩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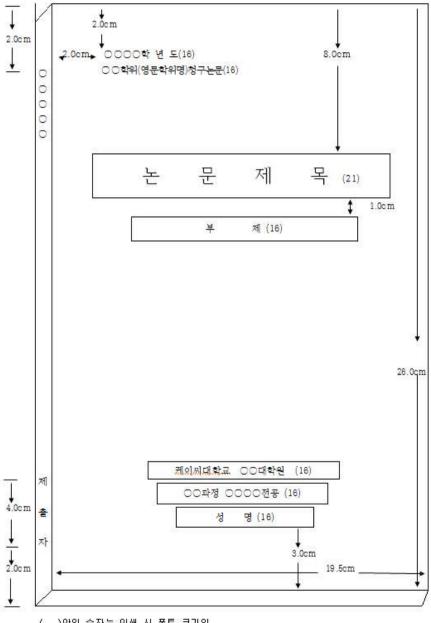
[별표 2] 졸업종합시험 과목일람표

디호디터/ 기	대학원명(과정)		저고	졸업종합시험과목		
네 극권당(4성)		학 과	전 공	전공과목	선택과목	비고
			구약신학	구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택1	
			신약신학	신약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학	역사신학	역사신학	신약신학 ├─택1 실천신학┴	
	박사과정		실천신학	실천신학1 실천신학2	구약신학→ 신약신학 ├택1 조직신학 │ 역사신학→	
			국제경영	국제경영	국제경영 ¬	
		글로벌	글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일반대학원		글도글 경영학	호텔 • 관광경영	호텔 • 관광경영		
		224 224	글로벌문화 예술경영	글로벌문화 예술경영	│ 글로벌문화 │ │ 예술경영 │	
	석사과정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택1 역사신학 실천신학-	
		글로벌 경영학	국제경영	국제경영	국제경영 ㄱ	
			글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호텔 • 관광경영	호텔 • 관광경영		
			글로벌문화 예술경영	글로벌문화 예술경영	글로벌문화 예술경영	
신학대학원	ļ	신학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과목 중 2과	 목 지정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중 2과		
		레이하다	사회복지학			1
계약학과	박사과정	계약학과 싱담복자신학과	상담심리학	전공과목 중 2과	전공과목 중 2과목 지정	
		0미국시다구남	기독교학	1		
계약학과		계약학과 상담심리학	상담심리 아동가족상담학	전공과목 중 2과	목 지정	
계약학과		계약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전공과목 중 2과	목 지정	

[별표 3] 대학원 전공별 수여학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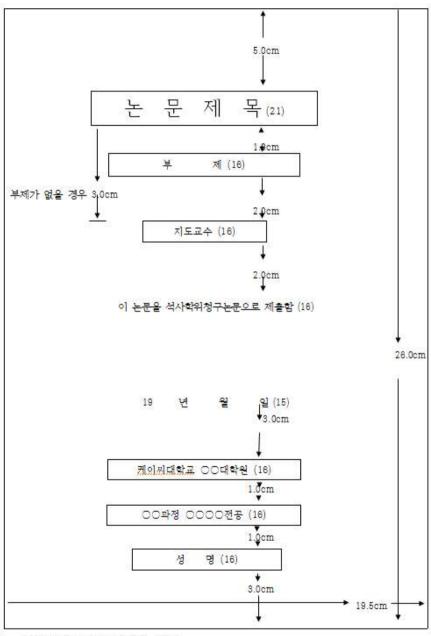
대학원명	과 정	학 과	학 위 명(영문학위명)	약자
		신학	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Ph.D.
일반	박사과정	글로벌경영학	경영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Ph.D.
대학원		신학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Th.M.
	석사과정	글로벌경영학	경영학석사(Master of Arts)	M.A.
신학	대학원	신학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	M.Div.
교육	대학원	교육학	교육학석사(Master of Education)	M.Ed.
1	복지 학원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Master of Social Welfare)	M.S.W.
계약 학과	박사과정	계약학과 상담복자신학과 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Ph.D.
I 계약약과 I		계약학과 상담심리학	교육학석사(Master of Education)	M.Ed.
계으	 후	계약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Master of Social Welfare)	M.S.W.

[별지 양식 1] 논문표지 및 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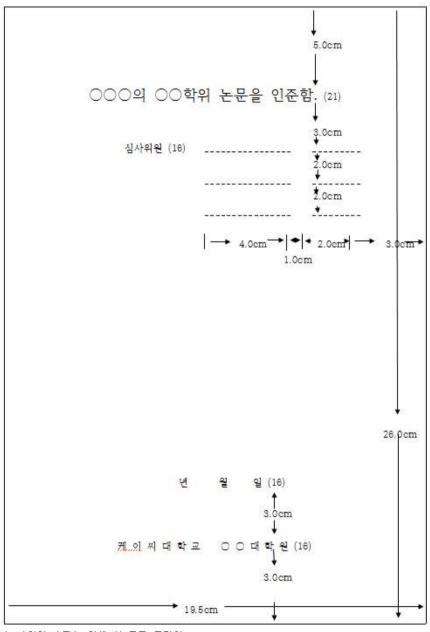


()안의 숫자는 인쇄 시 폰트 크기임.

[별지 양식 2] 속표지



()안의 숫자는 인쇄 시 폰트 크기임.



()안의 숫자는 인쇄 시 폰트 크기임.

교수인명사전

신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이오갑	교수	Dr. en Theol	프랑스 몽펠리에-피리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김문현	부교수	Ph.D.	미국 시카고신학대학원	신약신학
박신배	부교수	Ph.D.	연세대학교	구약신학
심상길	부교수	Ph.D.	백석대학교	신약신학
김해영	조교수	Ph.D.	토론토대학교	실천신학
전인수	조교수	Ph.D.	연세대학교	역사신학
문병하	초빙교수	D.Min.	미국 하딩대학교	실천신학

G2빅데이터경영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강우준	교수	Ph.D.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
김 강	교수	Ph.D.	서강대학교	회계학
박영란	교수	Ph.D.	이화여자대학교	영어학(의미론)
이상철	교수	Ph.D.	경희대학교	경영정보학
서재선	부교수	Ph.D.	臺灣東吳大學	중국어학 (중국문자학)
송경애	부교수	Ph.D.	중국 北京大學	중국문화
안영란	조교수	Ph.D.	미국State University of NewYork at StonyBrook	언어학 (음성,음운론)
액슨	조교수	M.A.	루마니아 Stefancel Mare University	영어번역
이득규	조교수	Ph.D.	숭실대학교	경영학(마케팅)
조재욱	조교수	Ph.D.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마케팅)
황유진	조교수	M.A.	미국TheNewSchool	Creative Writing

사회복지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노혜진	조교수	Ph.D.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마주리	교수	Ph.D.	단국대학교	특수교육
전석균	교수	Ph.D.	숭실대학교	사회사업방법론
박봉길	부교수	Ph.D.	부산대학교	사회복지
박영희	부교수	Ph.D.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
은선경	조교수	Ph.D.	숭실대학교	다문화사회복지
한성심	부교수	Ph.D.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
황선영	부교수	Ph.D.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Public Health

상담심리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계은경	조교수	Ed.D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성윤희	조교수	Ph.D.	미국UniversityofMinnesota	상담심리
최정헌	조교수	Ph.D.	연세대학교	상담학
홍이화	조교수	Ph.D.	미국DrewUniversity	심리학과 종교

음악콘텐츠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Diplom	Roma Art's Academy	보컬
이연숙	교수	Magister Diplom	오스트리아Mozarteum 국립음악대학교	성악
이현주	교수	D.M.A.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작곡
최연희	부교수	Konzertexamen	독일한스아이슬러 국립음악대학교	피아노
신창섭	조교수	Ph.D. in Musicology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
최성락	조교수	Ph.D. in Musicology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

간호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김옥선	부교수	Ph.D.	연세대학교	간호학
이창관	부교수	Ph.D.	연세대학교	간호학
김경숙	조교수	Ph.D.	이화여자대학교	보건학
박경란	조교수	Ph.D.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이지언	조교수	Ph.D.	경희대학교	간호학
주은경	조교수	Ph.D.	한양대학교	간호학
유선영	조교수	Ph.D.	한양대학교	간호학
박정숙	초빙교수	Ph.D.	연세대학교	간호학

식품영양학과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박은영	부교수	Ph.D.	일본 교토대학교	식품화학 / 기능성식품학
안정희	부교수	Ph.D.	고려대학교	영양유전체 / 영양생화학
윤진아	조교수	Ph.D.	고려대학교	영양학 / 임상영양학
김경림	초빙교수	M.A.	명지대학교	한국전통음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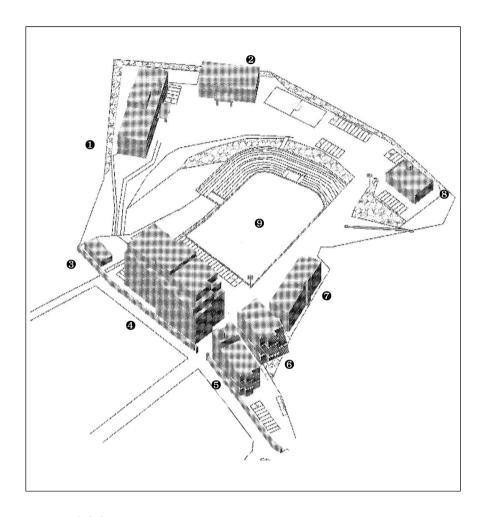
교양교육원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김희봉	부교수	Ph.D.	독일UniversitätWuppertal	철학
김태수	부교수	Ph.D.	서울대학교	행정학
백미현	조교수	Ph.D.	중앙대학교	교육학
강상희	조교수	Ph.D.	연세대학교	교육학
이정관	초빙교수	Ph.D.	동국대학교	사회복지

국제교육교류원

이름	직급	학위명	최종학위학교명	전공
박기천	조교수	Ph.D.	칼빈대학교	구약신학

대학캠퍼스맵



- ❶ 성서관
- 최수열기념관(도서관)
- 會학생복지관
- 4 본 관
- **6** 창의관
- **6** 과학관
- 7 진리관(생활관)
- ❸ SG혁신관
- ② 운동장

케이씨대학교 요람

2022년 2월 18일 인 쇄 2022년 2월 22일 발 행

> 발행인 김용재 발행처 케이씨대학교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24길 47 전화 (02) 2600-2400 팩스 (02) 2698-8876

인쇄처 케이엔 02.2268.7890